국가보훈처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0. 1.

국 가 보 훈 처

목 차

Ⅰ. 일반회계 ····· 1

1. 세입 ····· 1

토지대여료 ····· 1

건물대여료 ····· 2

기타재산수입 ····· 3

과태료 ····· 4

위약금 ····· 5

기타경상이전수입 ····· 6

면허료 및 수수료 ····· 7

기타잡수입 ····· 8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9

3. 세출 ····· 10

보훈심사 및 보상 ····· 10

(1) 보상금 (1132-300) ····· 11

(2) 간호수당 (1133-301) ····· 14

(3) 생활조정수당 (1133-302) ····· 16

(4) 6·25자녀수당 (1133-303) ····· 18

(5) 고엽제수당 (1133-304) ····· 20

(6) 무공영예수당 (1133-306) ····· 22

(7) 참전명예수당 (1133-307) ····· 24

(8) 4·19혁명공로수당 (1133-308) ····· 26

(9) 사망일시금 (1137-308) ····· 29

(10) 재해보상금 (1137-309) ····· 30

(11) 보상금 지급관리 (1137-311) ····· 32

(12)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1142-327) ····· 34
(13) 등록관리 (1143-328) ····· 37

보훈단체지원 ····· 42

(14) 보훈단체 운영(1238-315) ····· 43
(15) 보훈단체선양활동등(1238-317) ····· 46
(16) 지방보훈회관 건립(1238-321) ····· 49

보훈의료복지 ····· 51

(17)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 52
(18) 보훈병원진료 (2150-365) ····· 55
(19) 위탁병원진료 (2150-366) ····· 58
(20) 보철구지급 (2150-371) ····· 60
(21) 제대군인의료지원 (2150-450) ····· 62
(22) 고엽제환자검진 (2155-368) ····· 66
(23) 고엽제 역학조사 (2155-369) ····· 69
(24)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2156-380) ····· 71
(25) 보훈병원재활센터확충 (2156-382) ····· 73
(26)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2156-383) ····· 76
(27)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2156-385) ····· 78
(28)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2156-386) ····· 80
(29) 대구보훈병원 시설 확충 (2156-387) ····· 82

생활안정지원 ····· 84

(30)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수업료면제)(2241-330) ····· 85
(31)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등)(2241-453) ····· 88
(32) 취업지원(2257-385) ····· 90

보훈선양 ····· 93

(33)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3144-333) ····· 94

(34) 보훈정신계승발전 (3145-401) ····· 96
(35) 국내외사적지탐방 (3145-403) ····· 99
(36) 현충시설 건립 (3146-405) ····· 102
(37) 현충시설관리 (3146-406) ····· 104
(38) 기념관관리운영 (3146-407) ····· 106
(39)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지원 (3147-340) ····· 109
(40) 보훈기념행사 (3147-411) ····· 111
(41) 호국보훈의달행사 (3147-412) ····· 115
(42)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3147-413) ····· 117
(43) 청산리·봉오동 전승 기념사업 (3147-418) ····· 119

보훈예우및국립묘지 ····· 121

(44) 영주귀국정착금(3248-310) ····· 122
(45) 독립유공자발굴포상및홍보 (3248-345) ····· 126
(46) 독립운동 등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 (3248-346) ····· 133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3248-415) ····· 135
(48)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3250 - 352) ····· 139
(49) 국립대전현충원 (3250-353) ····· 141
(50) 국립4·19묘지 (3250-354) ····· 143
(51) 국립3·15묘지 (3250-355) ····· 145
(52) 국립5·18묘지 (3250 - 356) ····· 147
(53) 국립영천호국원 (3250-358) ····· 149
(54) 국립임실호국원 (3250-359) ····· 151
(55) 국립이천호국원 (3250-360) ····· 153
(56)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 155
(57) 국립신암선열공원 (3250-362) ····· 158
(58) 국립괴산호국원(3250-363) ····· 160
(59) 국립묘지조성(3250-364) ····· 162

(60) 특별주기 국립묘지 정비사업(3250-366) ····· 165

제대군인지원 ····· 167

(61)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4160-390) ····· 168

(62)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4161-395) ····· 172

(63) 6·25전쟁 70주년 사업 (4161-416) ····· 175

(64) 참전기념행사 (4161-420) ····· 177

보훈행정 ····· 181

(65) 청사유지보수 (7166-426) ····· 182

(66) 사무및민원환경개선 (7166-427) ····· 184

(67) 관사임차 (7166-428) ····· 186

(68) 공공복합청사임차 (7166-429) ····· 189

(69) 청사임차(7166-430) ····· 191

(70) 송무지원 (7167-329) ····· 193

(71)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7167-421) ····· 196

(72) 보훈정책개발 (7167-425) ····· 198

(73)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7167-431) ····· 200

(74) 보훈정책홍보 (7167-433) ····· 202

(75) 이동보훈팀 운영 (7168-422) ····· 204

(76) 보훈상담센터운영 (7168-423) ····· 206

(77) 나라사랑신문발간 (7168-424) ····· 209

(78) 정보화사업 (7169-501) ····· 211

회계기금간거래 ····· 216

(7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전출 (8410-880) ····· 217

Ⅱ.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19

1. 세입 ····· 220

기타재산수입 ····· 220
기타경상이전수입 ····· 221
2. 세출 ····· 222
(1)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2158-380) ····· 222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24
1. 세출 ····· 225
(1) 제주보훈업무지원(7190-430) ····· 225
Ⅵ. 보훈기금 ····· 227
1. 수입 ····· 228
건물대여료 ····· 228
기타민간이자수입 ····· 229
기타재산수입 ····· 230
민간출연금 ····· 231
입장료수입 ····· 232
기타잡수입 ····· 233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234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23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36
기금전입금 ····· 237
기금예탁원금회수 ····· 239
기금예탁이자수입 ····· 240
3. 지 출 ····· 242
(1) 국가유공자등 위로격려(2160-430) ····· 242
(2) 중상이자편의시설 공급(2160-439) ····· 245
(3)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2160-441) ····· 247
(4)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2160-472) ····· 250

(5) 보훈요양원 건립(2161-443) ····· 252
(6)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2161-444) ····· 255
(7) 장학금 (2242-326) ····· 259
(8) 국가유공자등 대부(2259-387~389) ····· 262
(9) 골프장 위탁운영(2362 - 434) ····· 265
(10) 골프장 시설투자(2632-435) ····· 268
(11) 재향군인회 지원 (4163-436) ····· 270
(12) 참전유공자지원 (4163 - 439) ····· 272
(13) 제대군인대부(4164-438) ····· 276

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279

1. 수입 ····· 280
토지대여료 ····· 280
건물대여료 ····· 281
기타재산수입 ····· 282
토지매각대 ····· 283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28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85
일반회계 전입금 ····· 286

3. 지출 ····· 287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3141-401) ····· 287
(2)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3141-402) ····· 290
(3)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3141-403) ····· 292
(4) 광복회관 관리 (3141-407) ····· 295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I 일반회계

1. 세 입

토지대여료
51 - 51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토지대여료	41	15	15	41	41	26	173.3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국립묘지 등 구내식당과 매점 등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토지 대여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6	1	1	1	14	14	1,400.0	100.0	-	-
'17	13	13	13	15	15	115.4	100.0	-	-
'18	14	14	14	57	41	292.9	71.9	16	-
'19.6	15	15	15	41	41	273.3	100.0	-	-
'20(안)	41	41	41	-	-	-	-	-	-

건물대여료
51 - 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건물대여료	58	86	86	86	86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청사 내 구내식당, 현충원·호국원의 구내식당과 매점 등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건물 대여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16	77	77	77	75	75	97.4	100.0	-	-
'17	79	79	79	86	86	108.9	100.0	-	-
'18	75	75	75	59	59	78.7	100.0	-	-
'19.6	86	86	86	49	49	57.0	100.0	-	-
'20(안)	86	86	86	-	-	-	-	-	-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재산수입	190	398	398	398	398	-	-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예탁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③ 수익계정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운용수익과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의 수입이자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원리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 및 이 영 제51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금의 지급이자를 지출로 한다.

2. 세입 개요

○ 국고금 및 국고보조금 예탁 시 발생한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16	364	364	364	107	72	19.8	67.3	35	-
'17	375	375	375	140	105	28.0	75.0	35	-
'18	287	287	287	190	190	66.2	100.0	-	-
'19.6	398	398	398	265	265	66.6	100.0	-	-
'20(안)	398	398	398	-	-	-	-	-	-

과태료
56 - 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과태료	30	67	67	67	67	-	-

1. 법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 특수임무유공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

2. 세입 개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16	24	24	24	118	113	470.8	95.8	5	-
'17	25	25	25	74	59	236.0	79.7	15	-
'18	49	49	49	40	30	61.2	75.0	10	-
'19.6	67	67	67	95	95	141.8	100.0	-	-
'20(안)	67	67	67	-	-	-	-	-	-

위약금
57 - 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위약금	5	13	13	13	13	-	-

1.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계약이행 지연과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및 지체상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16	13	13	13	-	-	-	-	-	-
'17	13	13	13	28	28	215.4	100.0	-	-
'18	4	4	4	5	5	125.0	100.0	-	-
'19.6	13	13	13	-	-	-	-	-	-
'20(안)	13	13	13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6,455	7,319	7,319	7,622	7,622	303	4.1

1. 법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및 제55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2. 세입 개요

○ 국가유공자 보상금, 학자금 및 국고보조금 등 과오급금 환수 및 반환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16	2,578	2,578	2,578	6,369	1,798	69.7	28.2	4,544	27
'17	6,955	6,955	6,955	6,317	2,076	29.8	32.9	4,143	98
'18	7,076	7,076	7,076	10,605	6,459	91.3	60.9	3,846	300
'19.6	7,319	7,319	7,319	5,157	1,303	17.8	25.3	3,854	-
'20(안)	7,622	7,622	7,622	-	-	-	-	-	-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2	2	2	2	2	-	-

1.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2. 세입 개요

○ 정보공개에 따른 우송료 등 수수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16	1	1	1	2	2	200.0	100.0	-	-
'17	1	1	1	2	2	200.0	100.0	-	-
'18	2	2	2	2	2	100.0	100.0	-	-
'19.6	2	2	2	1	1	50.0	100.0	-	-
'20(안)	2	2	2	-	-	-	-	-	-

기타잡수입
69 - 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잡수입	3	13	13	13	13	-	-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2. 세입 개요

○ 불용물품 및 폐휴지 매각 대금, 나라사랑신문 광고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수납율(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16	11	11	11	140	139	1,263.6	99.3	1	-
'17	11	11	11	13	13	118.2	100.0	-	-
'18	22	22	22	3	3	25.0	100.0	-	-
'19.6	13	13	13	6	6	46.2	100.0	-	-
'20(안)	13	13	13	-	-	-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 - 7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15	35	35	35	35	-	-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2. 세입 개요

○ 내용연수 경과 차량 등 불용자산 매각대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6	24	24	24	66	66	275.0	100.0	-	-
'17	25	25	25	20	20	80.0	100.0	-	-
'18	51	51	51	15	15	29.4	100.0	-	-
'19.6	35	35	35	7	7	20.0	100.0	-	-
'20(안)	35	35	35	-	-	-	-	-	-

보훈심사 및 보상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1. 세 출

사 업 명
(1) 보상금 (11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0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보훈보상금	보상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보상금	2,695,588	2,813,124	2,813,124	3,079,945	2,944,364	131,240	4.7

4. 사업목적

- 국가를 위해 신체적·사회적 희생과 공헌이 있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상·훈격·급수별로 차등하여 보훈보상금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훈급여금), 제12조(보상금), 제15조의2

(부양가족수당),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금), 제18조(부양가족수당),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② 추진경위

- ’52년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 제정으로 전몰·상이군경에게 연 1회 연금 지급
- ’62. 4월 애국지사,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등에 대하여 연금 지급
- ’85. 1월 보상체계를 개편(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 순직·공상경찰에게 연금지급)
- ’86. 1월 독자사망 부모 부가연금 지급
- ’88. 7~’94. 1월 노령(고령)부가연금 지급 및 대상범위 확대, 지급연령 인하
- ’92. 1월 전상 및 미망인 부가연금 지급
- ’96. 1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소방공무원에게 연금지급
- ’00. 1월 7급상이자에게 연금 지급
- ’02. 1월 부모 부가연금 지급
- ’02. 10월 6급 전·공상 군경 중 비상이 사망자 유족에게 연금 지급
- ’06. 1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 자녀(제매) 양육 시 수당 지급
- ’07. 1월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을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조정
- ’11. 1월 상이1급 특별수당 신설
- ‘12. 4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4개)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보상금 지급
- ‘12. 7월 보상체계 개편으로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 지급, 본인 및 유족이 배우자·미성년자녀·제매 부양시 부양가족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직계비속 1명(손자녀까지 사망하고 없는 경우) 보상금 지급
- ’13. 1월 4·19혁명공로자 보상금 지급(‘12. 7월부터 소급 지급)
- ’15. 1월 ‘45.8.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가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고 없는 경우 손자녀 1인에 대해 보상금 지급
- ‘18. 1월 4·19공로자보상금을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19년 191,888명, 2,813,12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상이군경, 전사·순직한 군경의 유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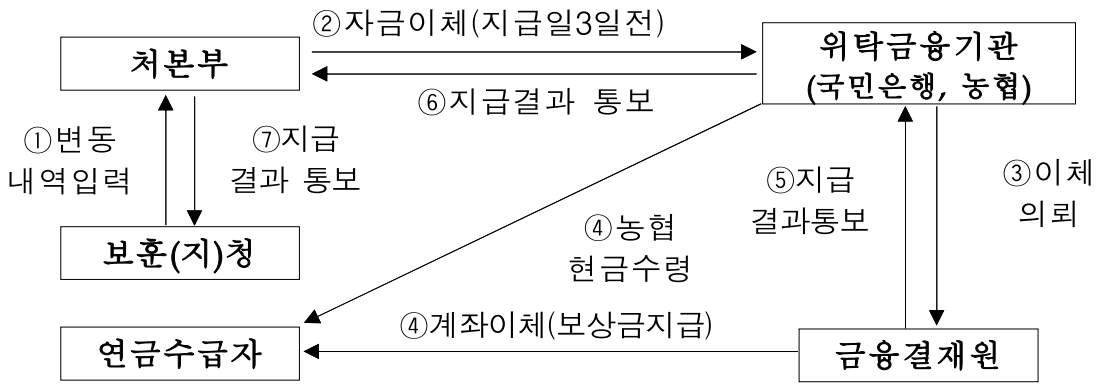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사 업 명
(2) 간호수당 (11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1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당	간호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간호수당	55,512	54,728	54,728	55,157	55,157	429	0.8

4. 사업목적

-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급 및 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 간병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간호수당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간호수당)및 동법시행령 제2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간호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② 추진경위

- 1962년 중상이등으로 보조원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상이군경에게 간호수당 지급
- 1984년 독립유공자 간호수당을 부가연금으로 전환
- 1987년 수시 간병인이 필요한 2급 상이자에게도 간호수당 지급
- 2001년부터 1급을 세항별로 지급액 차등 지급
- 2012년 7월부터 개호 필요성 정도에 따라 상시와 수시로 구분·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19년 2,879명, 54,72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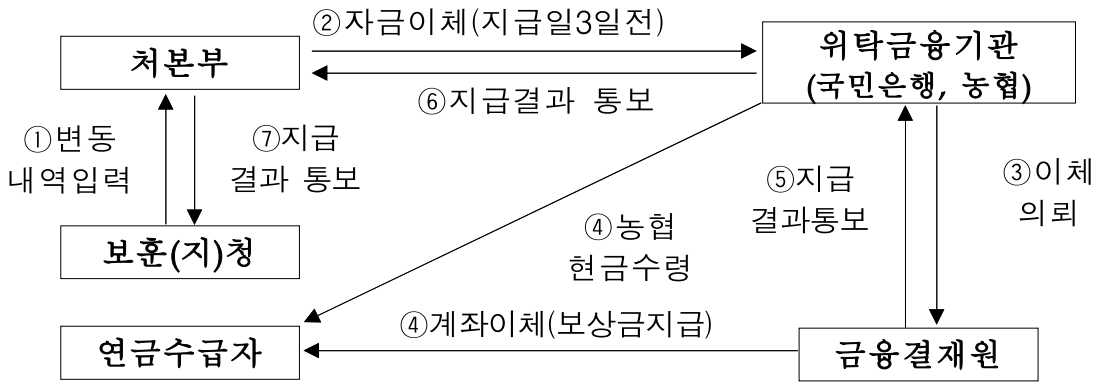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사 업 명
(3) 생활조정수당 (11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2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당	생활조정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생활조정수당	21,676	26,041	26,041	94,978	27,178	1,137	4.4

4. 사업목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실질적 생활 안정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생활조정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생활조정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② 추진경위

- 1974년 전수 실태조사결과 전대상자의 33%가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자로 판정, ‘75년부터 구호수당 지급
- ‘74년도 “자립지원지침” 제정 지원(대통령훈령 제37호)
- ‘85년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생활조정수당”으로 명칭 변경
- 2011년도 기본단가 인상(150~200천원)
- ‘12년 7월 생활조정수당의 신청주의 도입 및 생황수준 조사 방식 변경
  * 생활조정수당 수준 조사방식 변경 : 방문조사→금융정보 등 공적 자료 조사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징구)
- ‘13년 가산금 10천원 인상(20~50천원 → 30~60천원)
- ‘14년 기본금과 가산금을 통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75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19년 8,267명, 26,041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생활실태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일선기관)
□ 생활수준 실태조사 실시
  ○ 공적자료 조회 등을 통해 생활수준 조사
□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 예산 재배정(본부 → 일선기관)
  ○ 확정(전산자료 확인 및 지급명단 작성)
  ○ 지급의뢰(본부 → 위탁지급기관(농협, 국민은행))
  ○ 지급 결과 통보(위탁지급기관 → 본부)
  ○ 지급내역 통보(본부 → 일선기관)
  ○ 실적보고(일선기관 → 본부)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사 업 명
(4) 6・25자녀수당 (113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3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당	6・25자녀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6・25자녀수당	234,433	260,577	260,577	296,325	273,043	12,466	4.8

4. 사업목적

- 6·25 직후 보훈제도 미비와 수급권 승계유족 없이 성년제적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일부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성년자녀에 대하여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 차원에서 자녀 1인에 한해 수당지급
- 과거 보훈수혜정도에 따라 제적자녀와 승계자녀, 신규승계대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

② 추진경위

- '92년부터 6.25성년유자녀들이 단체를 결성, 국회 등 각계에 여러차례 진정
- '98년 생계곤란가구(생활등급 8등급 이하자)에게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250천원 지급
- '00년 생활등급 7등급 이하자까지 생활조정수당 확대 지급
- '01.7월부터 '98년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모든 6.25성년유자녀에게 자녀수당 지급
- '05. 1월 제적·승계 유자녀 차등 지급
- '15. 1월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지급(월 50천원)
- '16. 7월 '98년 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에게도 수당 지급(월 114천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1년 7월부터 계속
- 사업규모 : '19년 27,218명, 260,57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1953.7.27.이전 및 참전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로서 현재 보상금 수급권이 종결된 유자녀 1인에게 지급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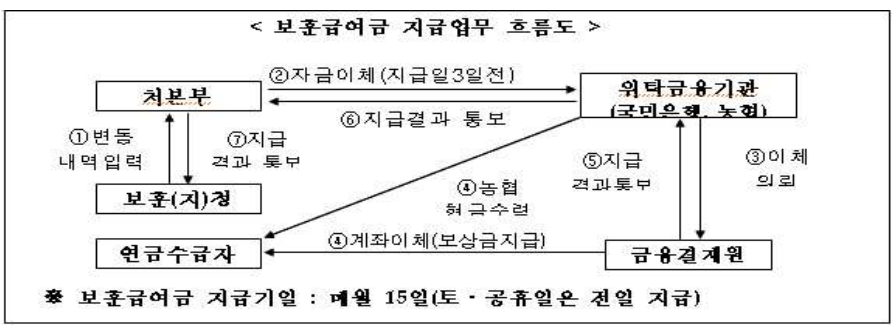

사 업 명
(5) 고엽제수당 (113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4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당	고엽제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고엽제수당	271,243	290,117	290,117	303,368	300,801	10,684	3.7

4. 사업목적

- 월남참전 및 국내 DMZ 근무자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해 수당 지급
- 월남전 참전자 및 국내 고엽제 피해자의 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 중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수당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고엽제수당)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② 추진경위

- ‘96.4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월남전 참전자에게 수당 지급
- ‘98.1월 동법 개정으로 후유증 2세환자 수당 지급(후유의증수당 수준)
- ‘00.12월 동법 개정으로 국내 DMZ근무자(67.10.9～70.7.31) 포함
- 2001년부터 후유의증수당과 2세환자수당 지급액 차등화
- ‘15.2월 국내 DMZ근무자 고엽제 인정기간 18개월 연장(67.10.9～72.1.1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6년 4월부터 계속(고엽제후유의증수당)
  - 1998년 1월부터 계속(고엽제2세환자수당)
- 사업규모 : ‘19년 38,191명, 290,11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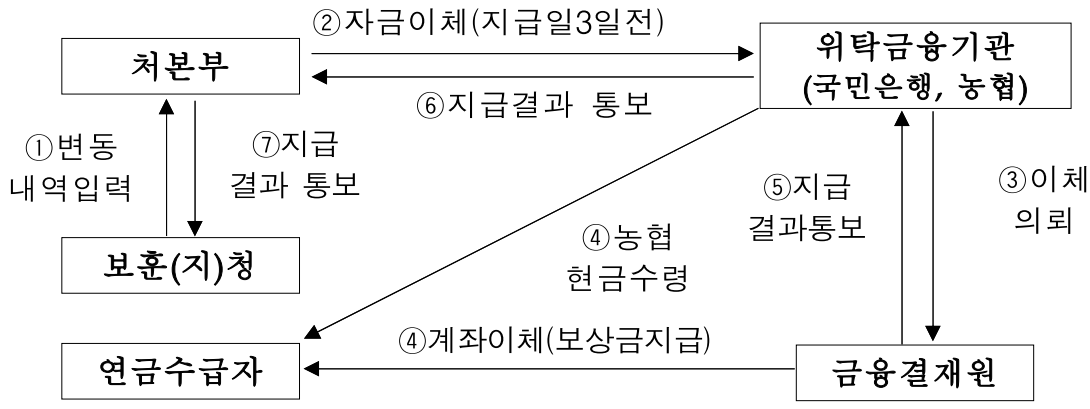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사 업 명
(6) 무공영예수당 (113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6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당	무공영예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무공영예수당	70,714	66,606	66,606	65,346	62,731	△3,875	△5.8

4. 사업목적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매월 무공영예수당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② 추진경위

- ‘99년 참전군인에 대한 생계보조비 지급안이 추진됨에 따라 참전군인보다 공헌도가 높은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대두
- ‘01.7월부터 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 ‘04.1월부터 60세 이상자로 지급연령 인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1년 7월부터 계속
- 사업규모 : ‘19년 15,246명, 66,60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중 보상금 비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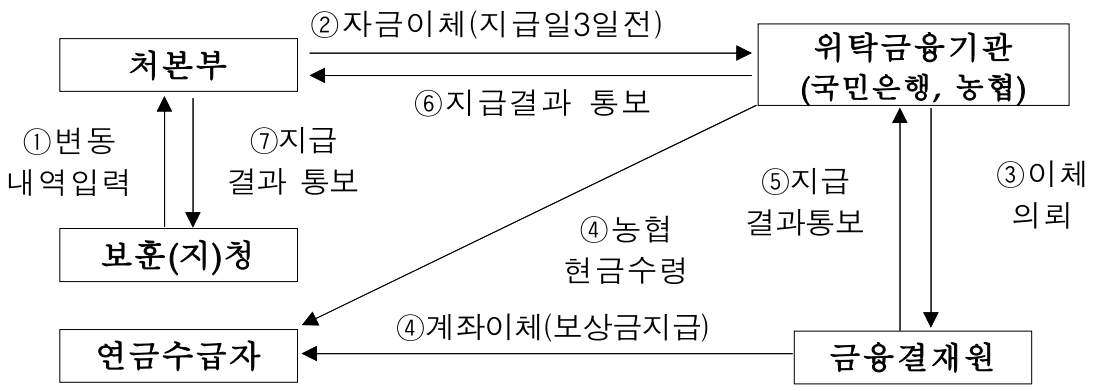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사 업 명
(7) 참전명예수당 (1133-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7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당	참전명예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참전명예수당	740,843	687,684	687,684	705,224	683,852	△3,832	△0.6

4. 사업목적

-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명예수당 및 장제보조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9조제4항(장제보조비)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

② 추진경위

- ‘00. 10월부터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중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생계보조비 지급
- ‘02.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04. 1월부터 지급연령 인하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2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19년 190,633명, 687,68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보상금, 고엽제수당, 무공수당 비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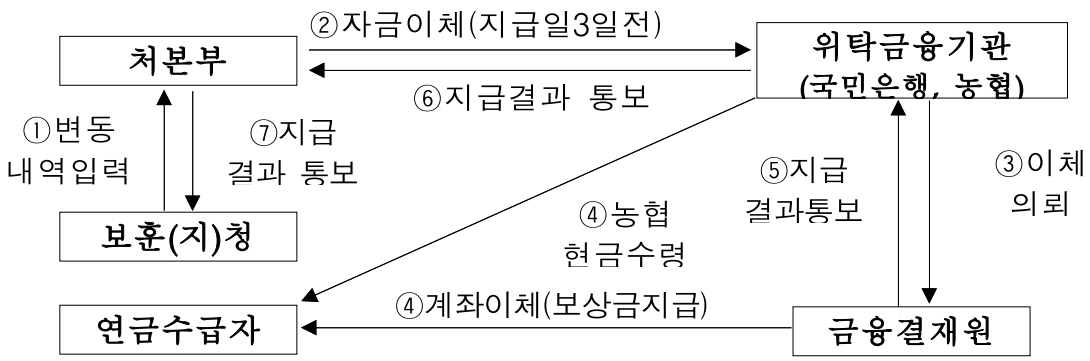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사 업 명
(8) 4·19혁명공로수당 (1133-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8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당	4·19혁명공로수당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4.19혁명공로수당	-	1,131	1,131	1,198	1,144	13	1.1

4. 사업목적

- 4·19혁명에 참여하여 그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4·19혁명공로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수당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4·19혁명공로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4

② 추진경위

- ‘12. 7월 4·19혁명공로자에게 보상금 지급
- ‘18. 1월 4·19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7월부터 ~
- 사업규모 : ‘19년 303명, 1,131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4·19혁명공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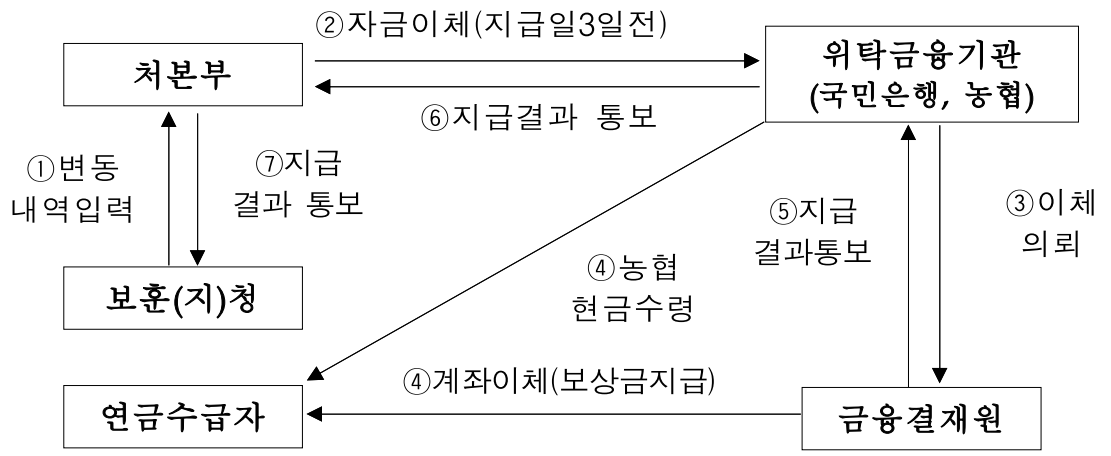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사 업 명
(9) 사망일시금 (1137-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7	308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시보상금	사망일시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사망일시금	9,015	8,407	8,407	8,407	8,407	-	-

4. 사업목적

- 보상금을 수령하던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 종결에 대한 위로 및 장제 지원을 위해 사망일시금 지급

* 애국지사 및 유족과 상이군경 및 유족 중 보상금 지급대상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사망일시금)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망일시금)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망일시금)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② 추진경위

- '62년 군사원호보상금여금법 및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정 시 도입
- '84년 이전, 연금의 12~36배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지급
- '85년 이후, 정액제로 변경하여 대상별 일정액을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19년 6,854명, 8,40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보상금을 수령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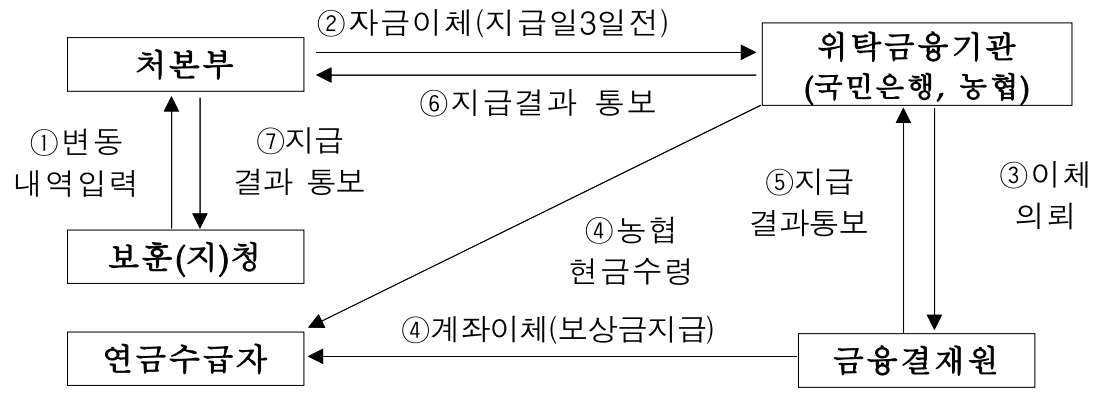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사 업 명
(10) 재해보상금 (1137-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7	309
명칭	보훈보상	수시보상금	재해보상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재해보상금	21,751	13,866	13,866	22,288	14,802	936	6.8

4. 사업목적

-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의무경찰 등이 전투 또는 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급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군인연금법 제11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② 추진경위

- 1951년부터 국방부에서 지급
- 1966년 군인연금법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위탁(임)받아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6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19년 169명, 13,86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소방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
- 사업 수혜자 :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과 전투 또는 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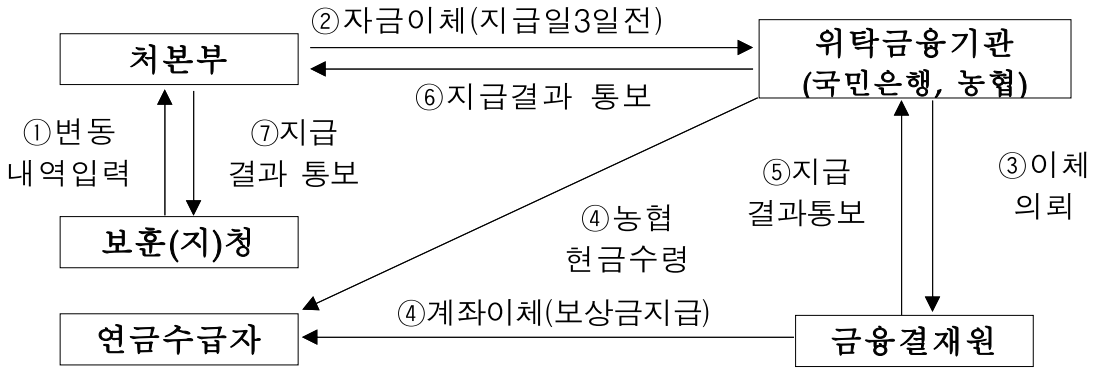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사 업 명
(11) 보상금 지급관리 (1137-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7	311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시보상금	보상금지급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보상금지급관리	139	158	158	161	145	△13	△8.2

4. 사업목적

- 보상금 지급관리를 위한 사례연구 및 보상금 지급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상금지급업무처리지침 제40조

② 추진경위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지급제도 및 수준과 국가재정형평 등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와 예산편성시 보훈단체 임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 향후 이분들의 요구수준에 맞는 시책 강구 및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국가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상금지급업무에 활용하고
- 국외거주 신상신고 안내, 과오급 회수를 위한 조사여비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3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19년 15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상신고 안내문 인쇄 및 안내문 발송(11월)
□ 해외 자료수집 및 분석(연중)
□ 보훈단체 및 관련 전문가 간담회(연중)
□ 보상금 과오급금 수납 독려(연중)

사 업 명
(12)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1142-32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2	327
명칭	보훈심사 및 보상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보훈심사위원회운영	1,423	1,484	1,484	1,938	1,480	△4	△0.3

4. 사업목적

- 전문적인 의학 및 법률 지식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등록요건 충족 및 상이의 정도 등을 판단
- 의학적 연구자료의 수집·분석 및 심사지원을 통해 보훈심사의 신뢰성, 전문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 동법률 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 2011.9.15.개정 주요내용 : 위원 60인→120인 증원
  (상임위원 5인, 비상임위원 115인)
- 동법률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 동법률시행령 제94조의5 내지 12

② 추진경위

- ('81. 2. 26) 원호대상자가 관계법령 위반 시 원호정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원호정지위원회'가 '원호위원회'로 개칭되면서 상이사망자 인정 심의 등의 업무가 추가되고 별도기관으로 독립
- ('84. 12. 3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원호처가 국가보훈처로 변경됨에 따라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변경
- ('88. 12. 31)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심사하던 전몰·전상군경 및 순직·공상군경, 공무원 요건해당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일괄심사함으로써 통일적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결정
- ('07. 9. 14) 보훈심사 대상 안건의 증가, 전문성 확충 필요 등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확대 개편
  · 3개 분과위원회 설치, 심사위원 증원(11인→30인)
  · 의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0명 비상임위원으로 위촉
  · 1행정실 → 1사무국 3개과 설치
- ('09. 8. 13) 감사원 감사 결과 공상공무원 심사부실 지적,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보훈심사 제도 쇄신
  · 위원수 : 30인 → 60인 이하, 분과위원회 : 3개 →6개
  · 회의구성 : 본회의(9→11인), 분과회의(5→7인)
- ('11. 9. 15)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위원회 기능 보강
  · 위원수 : 60인 → 120인 이하
  · 분과위원회 의결 기능 신설
  · 상이등급판정업무 기능 신설('12.7.1. 시행)
  · 1사무국 3개과 → 1사무국 4개과(심사4과 설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간 약 2만5천건~3만건 정도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사 및 보상심사, 상이등급 심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훈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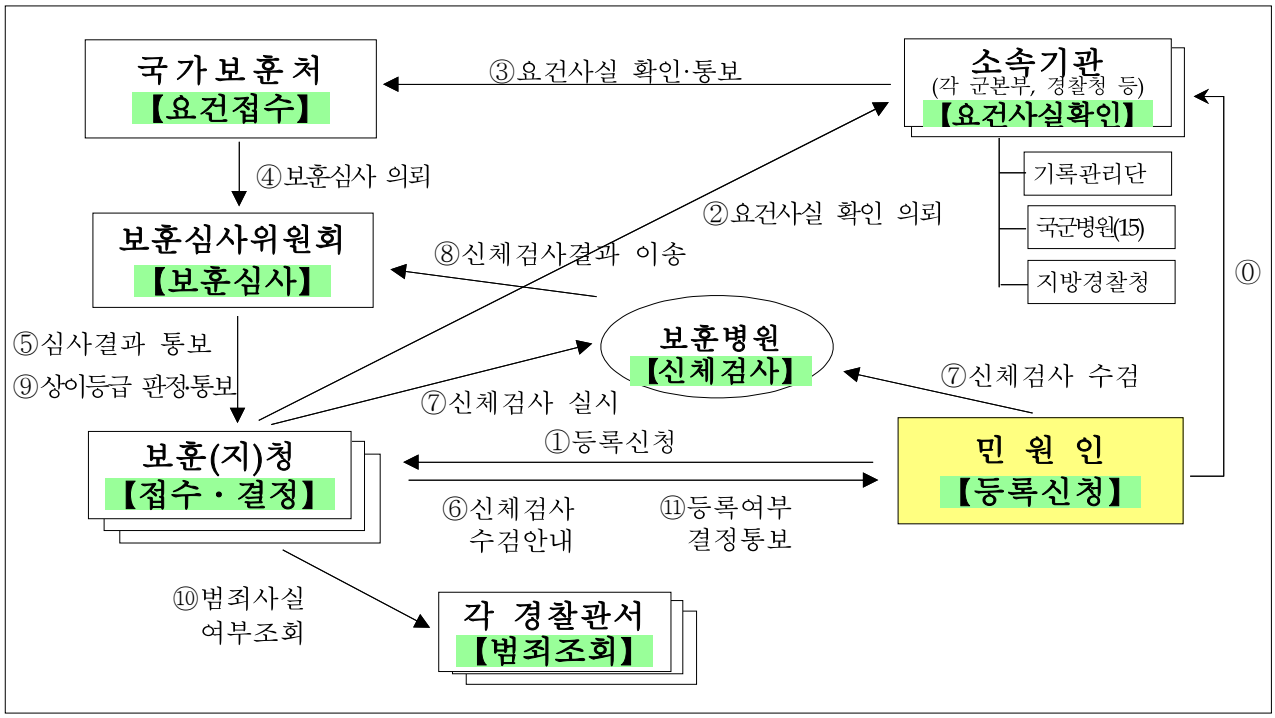

사 업 명
(13) 등록관리 (1143-32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일반회계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3	328
명칭	보훈심사 및 보상	등록심사	등록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등록관리	2,957	2,329	2,329	5,448	2,393	64	2.7

4. 사업 목적

○ 전·공상군경 등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지원함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정부주도로 미등록자를 발굴·등록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함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하며,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발급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제83조(위임 및 위탁)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2조(권한의 위임·위탁) ⑥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신체검사) 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응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의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 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와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은 제외)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발굴>

○ 국가보훈기본법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신청대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증서 관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정부의 시책) 3호.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국가 등의 시책) 2호. 5·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특수임무유공자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추진경위

<신체검사>

○ 1961년 상이군경등급기준표에 의거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상이등급구분판정을 시작하여 그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2000년에 상이 7급 신설과 2012년도에 6급3항 신설로 현재 1급1항부터 7급까지 총 11개 단계로 구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

○ 월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와 ‘60년대 말 국내 DMZ지역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의한 후유증 질환에 대해 ’93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상이등급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3개의 장애등급(경도, 중등도, 고도)으로 구분하여 신체검사 실시

○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12.7.1.)으로 상이등급 판정의 경우 신체검사는 종전과 같이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상이등급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로 변경(종전에는 지방보훈청)하게 됨에 따라 상이판정 전산시스템 개발 운영

<국가유공자 발굴>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법 개정('13.5.22.)으로 정부주도의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 제도가 도입('13.7.1.)되어 '14년부터 발굴사업을 착수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발굴업무지원 계약직 인건비 및 관련 여비 등 지급

<증서 관리>

○ 신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명의 증서와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발급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 발급기계 교체·수리 및 추가구입

<신고포상금>

○ '12.7.1. 개정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의7에 근거,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급여금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제도 도입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계속
- 사업규모 : 국가유공자 발굴 및 미등록자 신상확인 42만여명, 국가보훈대상자 80만여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 사업 수혜자 : 국가보훈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신체검사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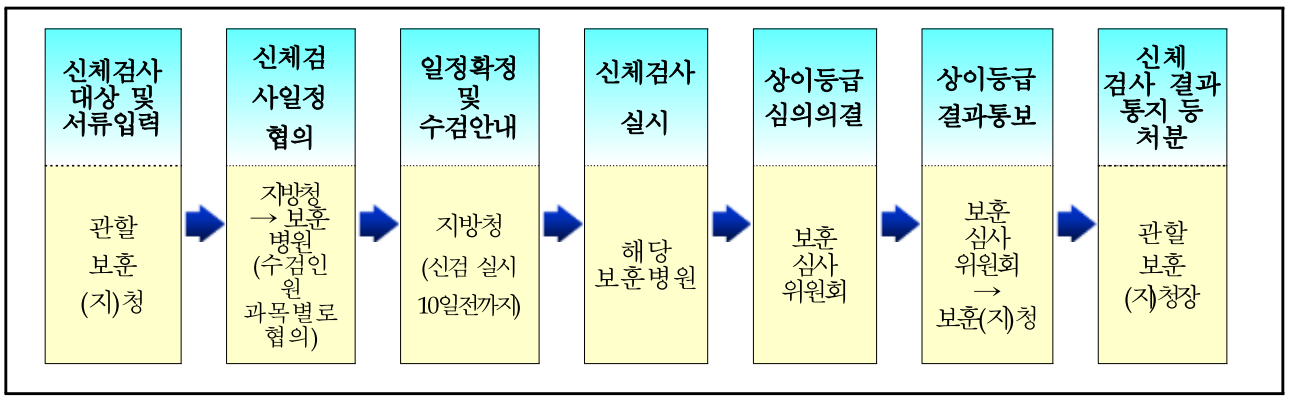

보훈단체지원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사 업 명
(14) 보훈단체 운영(1238-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8	315
명칭	보훈단체지원	보훈단체지원	보훈단체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보훈단체운영	25,220	25,131	25,131	64,000	44,423	19,292	76.8

4. 사업목적

- 순국선열과 호국장병의 유지를 계승하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호국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광복회 등 13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 국가유공 상이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재활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토록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지원
- 자체 회관이 없는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자 단체의 공동 입주를 위한 중앙회관 매입지원
-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노후 지원을 위한 독립유공자 복지회관 운영 및 4.19혁명정신 고취 및 계승을 위한 4.19도서관 운영비 지원
-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립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② 추진경위

- 1964년 :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지원
- 1967년 : 광복회, 4·19부상자회, 4·19유족회, 재의동지회 지원
- 1992년 : 무공수훈자회 지원
- 2001년 : 4·19공로자회 지원
- 2009년 : 특수임무유공자회 지원
- 2009년 : 고엽제전우회 지원
- 2009년 : 6·25참전유공자회 지원
- 2009년 : 월남전참전자회 지원
- 1986년~2001년 기간에 연차적으로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상이군경복지회관을 1개소씩 건립지원하고 '95년부터 운영비 지원
- 2004년부터 복지회관 이용 편의를 위해 리프트버스 운영비 지원
-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복지회관 이용객 수요 증가와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독립유공자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 1998년 4·19혁명기념도서관 준공에 따른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2006년 학술자료 디지털화 및 멀티미디어 정보화 시스템 구축
- 2011년 복지회관 방문 고령, 독거, 무의탁 등 불우회원을 대상으로 나눔·봉사문화 실천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시범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4 ~ 계속
- 사업규모 : 13개 단체 인건비, 4대보험료, 퇴직충당금, 사무비 등의 경상경비, 지부·

지회운영비 및 단체 행사비 지원, 15개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비 및 리프트버스운영비 지원(서울복지회관 제외), 16개 상이군경복지회관 사회복지사운영비지원, 독립유공자복지회관 및 4.19도서관 운영비 지원, 무공·특임·6.25·월참 중앙회관 매입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광복회 등 13개 보훈단체
- 사업 수혜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광복회	정액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회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7. 사업 집행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검토·교부·통지	→	보조금 사업수행 및 정산보고	→	보조금 금액 확정
보훈단체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국가보훈처

사 업 명
(15) 보훈단체선양활동등(1238-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8	317
명칭	보훈단체지원	보훈단체지원	보훈단선양활동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보훈단체선양활동 등	3,987	4,451	4,451	5,657	4,677	226	5.1

4. 사업목적

- 중상이군경의 신체기능 회복, 건전한 재활의식 고취를 위한 국내·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국가유공자 긍지 함양과 국위선양
- 전몰군경유족회의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등 보훈단체별 특성에 맞는 애국선양활동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1조)

② 추진경위

<보훈단체선양활동 등>

- '65년 제14회 국제대회부터 참가
- '67년 국제대회 파견선수 양성 및 재활체육 진흥을 위한 국내 대회 개최
- '03년 5·18 관련 3개 단체 행사비 등 지원
- '05년 상이군경 보훈체육회 활동비 지원, 재의동지회 국내거주회원 일본 방문
- '07년 특수임무희생자 추모 및 명예선양을 위한 단체 분야 행사비 지원
- '08년 북경장애인 올림픽 대비 합숙훈련비 및 운동장비 구입비 지원
- '09년 상이군경회 재활체육저변확대 사업비 지원
- '09년 특수임무희생자 추모사업등 사업비 지원
- '09년 전몰군경유족회 UN군 전사자유족돕기 행사비 지원
- '09년 전몰군경유족회 대전현충원지킴이 활동비 지원
- '09년 무공수훈자회 6.25전승지 탐방행사비 지원
- '13년 전몰군경미망인회 격전지 탐방사업 지원
- '14년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장례단 사업 지원
- '16년 무공수훈자회 베트남 전적지 순방사업 지원
- '17년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순애기금에서 사업이관)
- '18년 상이군경회 베트남민간교류협력, 유엔군 전상자교류협력사업(내역사업 이관)
- '18년 국외전적지 탐방사업을 보훈처 직접사업으로 전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4 ~ 계속
- 사업규모 : 중상이국가유공자의 국내·외 대회 참가 등 재활체육 지원, 휴전선 155마일 종주 등 단체별로 특화된 선양사업 등 23개 사업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광복회 등 17개 보훈단체
- 사업 수혜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광복회	정액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6·18자유상이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5·18 3개단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1조

7. 사업 집행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검토·교부·통지	→	보조금 사업수행 및 정산보고	→	보조금 금액 확정
보훈단체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국가보훈처

사 업 명
(16) 지방보훈회관 건립(1238-3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8	321
명칭	보훈단체지원	보훈단체지원	지방보훈회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지방보훈회관 건립	3,625	3,250	3,250	3,780	2,250	△1,000	△30.8

4. 사업목적

- 보훈단체의 사무실 제공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친목도모와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인 지방 보훈회관 건립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및 건립 촉진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리증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23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② 추진경위

- 2006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회관 건립비 전액 부담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방보훈회관 건립비 일부를 세출예산으로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 광역시·도 : 50%(최대 15억 이내) - 시·군·구 : 30%(최대 5억원 이내)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7. 사업 집행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검토·교부·통지	→	보조금 사업수행 및 정산보고	→	보조금 금액 확정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사 업 명
(17)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9	318
명칭	보훈의료복지	교통시설이용지원	교통시설이용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교통시설 이용지원	10,582	12,090	12,090	14,801	12,090	-	-

4. 사업목적

- 초고령 및 신체장애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애국지사와 전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통시설(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임 또는 감면 운임 결손금 보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② 추진경위

<버스·내항여객선>

- 1950년대 후반 : '대한상이군경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간 합의(민간자율)로 상이군경의 시내·시외버스 등 감면 이용
- 1960년대 : '교통부' 고시로 상이군경 버스 감면 이용 제도화
- 1975년 : 공상공무원 이용 지원 추가(7월)
- 1989년 : 버스업계의 경영난 가중 등으로 경제장관 회의에서 학생 이외 감면 일괄 폐지 국가유공자 감면요금에 대해서 국가재정부담 결정

  * 민영교통사업자의 자율적 협조를 얻어 1991년까지 국고보조 없이 종전 감면 수준 유지

- 1992년 :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버스, 내항여객선 국고보조 시작
- 2000년 : 7급 상이 국가유공자 이용지원 추가
- 2007년 : '국가보훈처'에서 국고보조 직접 수행
- 2008년 : 시내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를 서울시에서 도입(11월)
- 2009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경기도(4월), 인천시(6월) 도입
- 2010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부산시(9월) 도입
- 2011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충청남도(10월) 도입 (서울-대전간 지하철, 수도권지하철 및 버스 이용)
- 2012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강원도(10월) 도입 (서울-춘천간 지하철, 수도권지하철 및 버스 이용)
- 2013년 : 우등고속버스 확대시행(2013.3.4.), 내항여객선 이용지원 확대(애국지사·1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2014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대구시·경산시(10월) 도입
- 2015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대전시(4월), 울산시(10월) 도입
- 2016년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광주시(12월) 도입

<KTX 등 열차>

- 1962년 : 철도청과 협의에 의해 애국지사와 1~2급 상이군경 무임 및 감면 이용지원(3월)
- 2001년 : 연 6회 무임권 발급, 7회 이후 상시 50% 감면 이용(4월)
- 2007년 : 2003년「철도산업발전기본법」발효와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로 이용 열차

를 KTX로 확대하고, 2007년 3월 협약체결 후 KTX 보조금 지급 시작

- 2008년 이후 :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 2016년 : 수서발 고속열차 SRT 개통, (주)SR과 협약체결 후 국가유공상이자 할인 이용

  * 열차종류에 상관없이 이용 혜택은 동일(연간 6회 무임, 이후 50% 할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2년~(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KTX, SRT) 무임 또는 감면운임 결손금 보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내항여객선 사업자, 한국철도공사, (주)SR
- 사업 수혜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액	근거법령 없음
내항여객선 사업자	정액	〃
한국철도공사, (주)SR	정액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율을 정하고 있지 않음
(내항여객선은 실제 이용운임, 버스 및 KTX·SRT는 매년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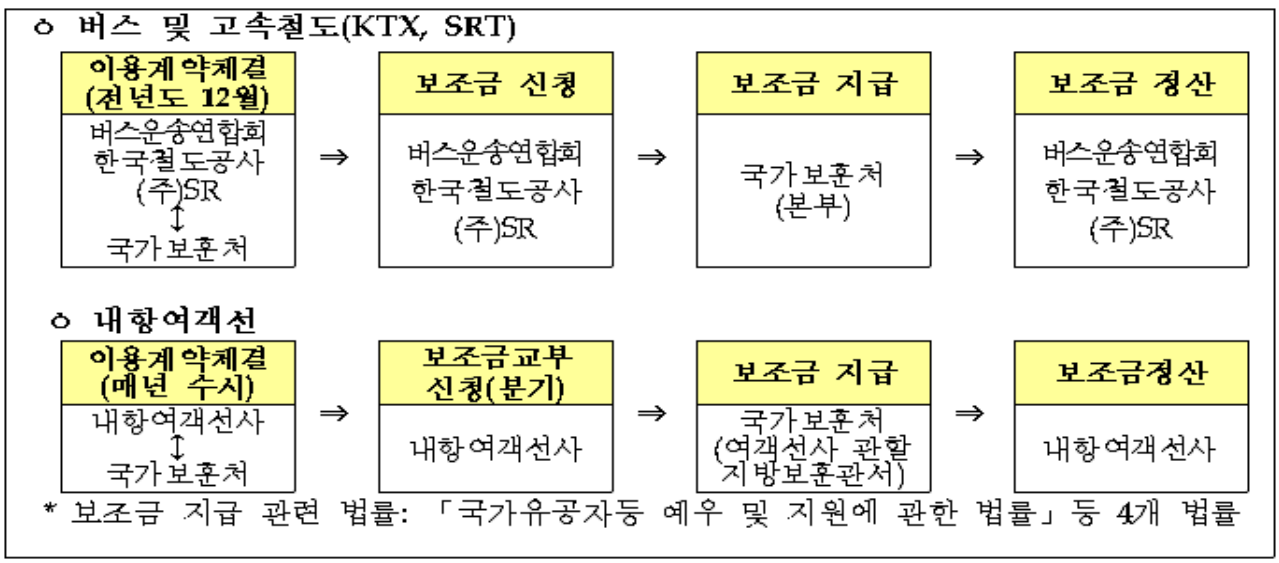

사 업 명
(18) 보훈병원진료 (2150-36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0	365
명칭	보훈의료복지	의료지원	보훈병원진료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보훈병원진료	398,900	409,597	409,597	398,393	381,735	△27,862	△6.8

4. 사업목적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직접적인 신체에 희생이 있는 분이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여 이분들의 건강관리 도모

○ 신체에 상이를 입지 않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에 대해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30~90%를 국가 감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료지원), 제42조(진료), 제73조(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제74조(전투종사공무원에 등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의료지원), 제51조(진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제63조(진료비용의 감면),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의료지원), 제34조(진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진료비용의 감면)·제35조(약제비용의 부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료지원), 제33조(진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진료비용의 감면)·제37조(약제비용의 부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료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 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료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료지원)

② 추진경위

- 1961년 보사부 구호병원 인수, 원호병원 개원으로 상이유공자 국비진료
- 1974년 국가유공자유족 50%, 가족 40% 감면진료
- 1983년 서울보훈병원 신축 이전
- 1985년 상이유공자 상이처 외 일반질환 국비진료 확대
- 1984~97년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에 보훈병원 개원으로 전국적인 보훈의료 체계망 구축

- 1990년 국가유공자 유·가족 60% 감면진료
- 1992년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진료
- 2002년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30~60% 감면진료
- 2005년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60% 감면진료
- 2012년 7급상이자 상이처외 질환 20%본인부담 및 감면진료대상자 배우자, 선순위유족으로 제한
- 2018년 인천보훈병원 개원,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60→90%), 7급 상이자 본인부담율 10%로 완화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국비진료 1961~, 감면진료 1974~)
- 사업규모 : 연 진료인원 4,243천명(국비 2,870, 감면 1,373)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 사업 수혜자 : 신체에 희생을 입은 상이자,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본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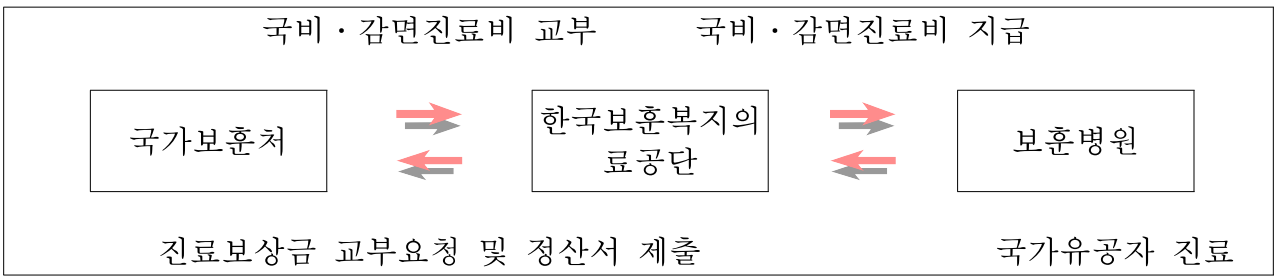

사 업 명
(19) 위탁병원진료 (2150-36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0	366
명칭	보훈의료복지	의료지원	위탁병원진료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위탁병원진료	274,733	247,893	247,893	245,562	226,806	△21,087	△8.5

4. 사업목적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또는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해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의료지원
- 응급상황의 진료 및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에 대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4조의3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86년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 거주자의 근접진료를 위해 제주지역에 위탁병원 지정·운영
- 1991년 위탁병원 전국 확대(30개)
- 2000년 위탁병원 확대(80개), 상이 7급 국비진료 실시
- 2003년 위탁병원 확대(172개), 고엽제환자 전질환 진료 실시
- 2008년 위탁병원 확대(258개)
- 2009. 7월, 참전유공자 등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시(건강보험 급여부분의 60%감면)
- 2009년 위탁병원 확대(307개)
- 2012. 7월, 75세 이상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1인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시(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60% 감면)
- 2018. 1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진료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90% 감면 확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추정) : '19년 진료실적 4,491천명(국비 3,185천명/감면 1,306천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업 수혜자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의증환자 및 등급미달판정자 등
・감면진료대상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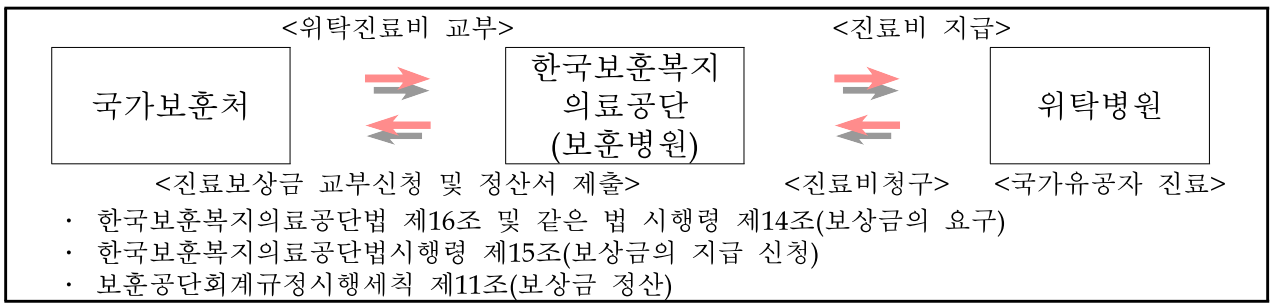

사 업 명
(20) 보철구지급 (2150-3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일반회계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0	371
명칭	보훈의료복지	의료지원	보철구 지급(국가유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보철구 지급	6,003	6,003	6,003	6,389	6,003	-	-

4. 사업목적

-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상이처로 인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보철구) 및 제67조(보철구의 지급)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보철구 지급)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157호) 전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64년부터 국가유공상이자의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기 위해 보철구 지급 (원호처 국립직업재활원 보철구공장 창설)
- 1970년 국립원호병원 의지창으로 이관
- 1995년 독일 오토복사와 기술협정 골격식 의지 및 미용수 자체제작
- 1999년 미국 스타키사와 기술제휴 보청기 생산
- 2001년 중상이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철구 확대공급(29종→31종)
- 2001년 보장구센터로 명칭변경
- 2002년 시각장애자 소통을 위한 맹인용 컴퓨터 지급
- 2005년 중상이자를 위한 보철구 확대공급(32종→37종)
- 2008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철구 확대공급(37종→39종)
- 2008년 보장구수가용역(합리적 보장구수가 산정/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
- 2010년 기존재료 고급화(의족착용자) : 다기능기구(C-Walk), 경량화커버
- 2011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철구 확대공급(39종→41종, 리프트, 소형녹음기)
- 2012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철구 확대공급(41종→44종)
- 2013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철구 확대공급(44종→51종)
- 2016년 TV자막수신기, 소형녹음기 등 3종 지급품목에서 제외(51종→48종)

  * 48종 : 보철구 44종, 중상이자편의시설(휠체어 등) 4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4~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상이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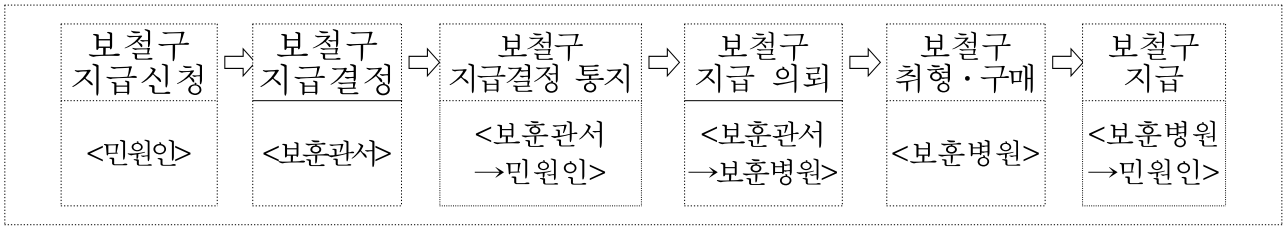

사 업 명
(21) 제대군인의료지원 (2150-4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0	450
명칭	보훈의료복지	의료지원	제대군인의료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예산		2020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제대군인의료지원	5,316	2,365	2,365	2,365	2,365	-	-

4. 사업목적

○ 보훈병원진료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서는 국비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이분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

○ 위탁병원진료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제대군인에게 위탁병원진료 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 국비진료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유지 도모

○ 보철구지급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제대군인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게 손상된 상이처 보완과 생활편의 제공위해 보철구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료지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 등)

○ 보철구지급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보철구의 지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보철구의 지급)

② 추진경위

○ 보훈병원진료

- 1992년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 국비진료 실시

○ 위탁병원진료

- 1998년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 국비진료 실시

○ 보철구지급

- 2012년부터 상이처 보완과 생활편의 제공위해 보철구 지급

6. 주요내용

○ 보훈병원진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국비진료 1992~)
- 사업규모 : 연 진료인원 9,498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 사업 수혜자 :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위탁병원진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국비진료 1998~)
- 사업규모 : 연 진료인원 19,328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업 수혜자 :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보철구지급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국비진료 2013~)
- 사업규모 : 69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 사업 수혜자 :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병원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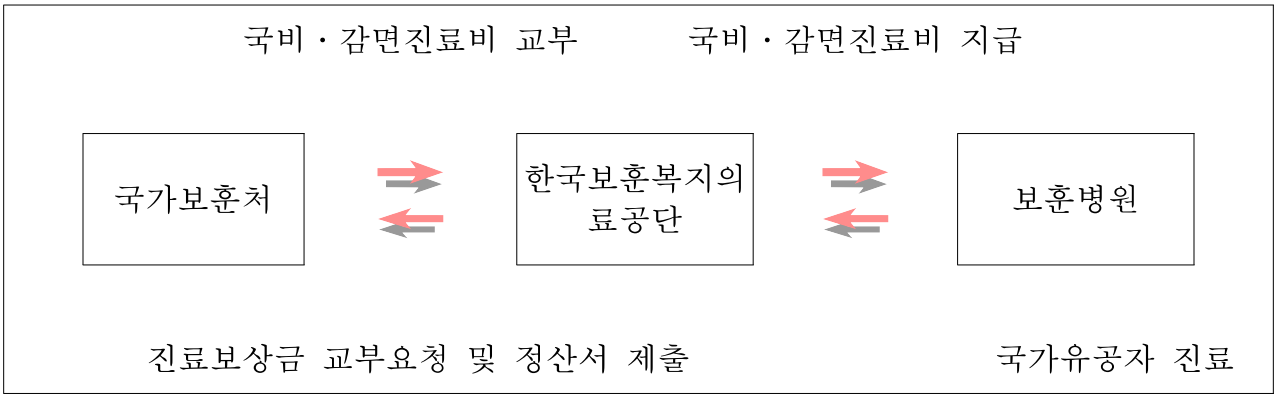

○ 위탁병원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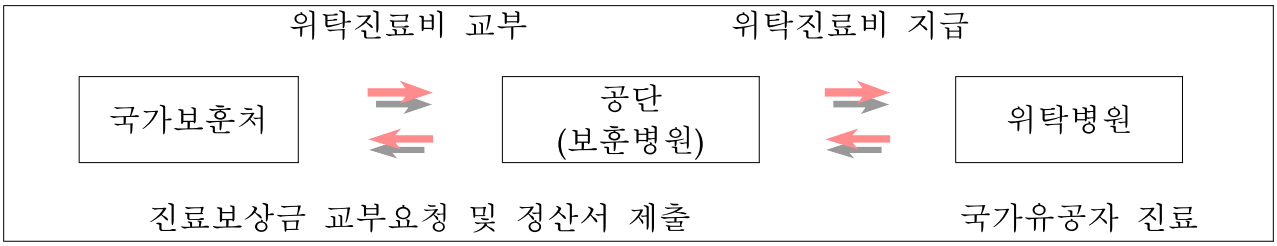
위탁진료비 교부
위탁진료비 지급
국가보훈처
공단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보상금 교부요청 및 정산서 제출
국가유공자 진료

○ 보철구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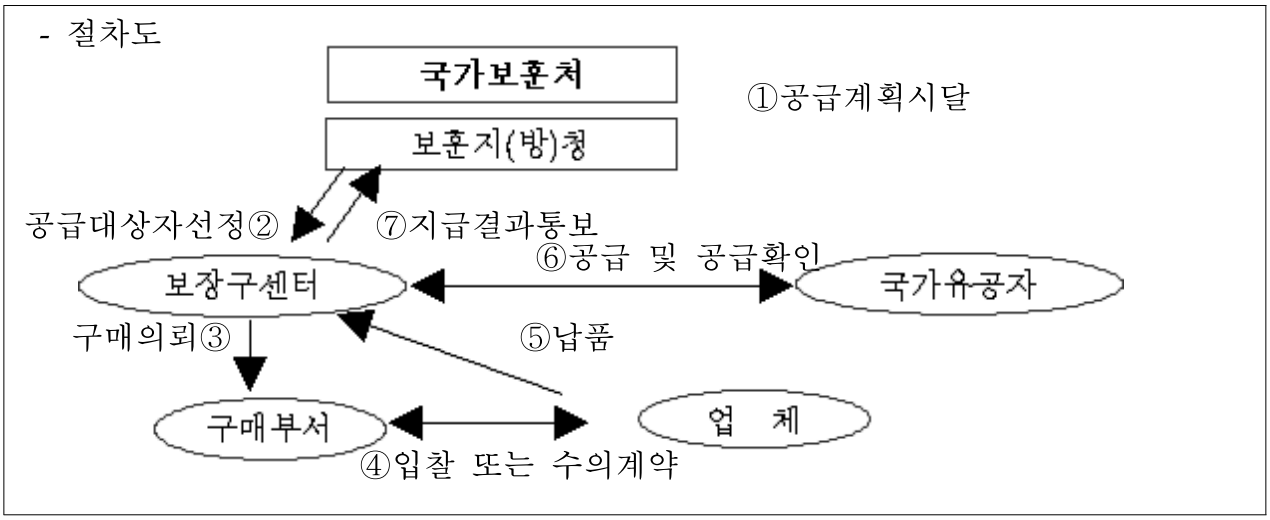
- 절차도
국가보훈처
①공급계획시달
보훈지(방)청
공급대상자선정②
⑦지급결과통보
⑥공급 및 공급확인
보장구센터
국가유공자
구매의뢰③
⑤납품
구매부서
업 체
④입찰 또는 수의계약

사 업 명
(22) 고엽제환자검진 (2155-36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일반회계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5	368
명칭	보훈의료복지	고엽제지원	고엽제환자검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고엽제환자검진	3,133	3,308	3,308	3,056	2,993	△315	△9.5

4. 사업목적

- 월남전 참전군인 및 국내 고엽제 등록 신청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 결정
- 검진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5개 보훈병원의 검진 전문의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0조

② 추진경위

○ 미국에서는 '77년 고엽제 피해사실이 처음 알려진 후,

- 미 보훈부, 환경부 등에서 고엽제 관련 연구 실시('79)
- 비호지킨임파선암 등을 고엽제 피해 질병으로 인정, 보상실시('91)

○ 우리나라에서는 '92년 초부터 고엽제 피해 문제 대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제정 후 보상 실시('93)
-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최초 실시('95.4)
- 고엽제후유증 2세질병 지원시작('98.1)
- 국내 DMZ 복무자에 대한 고엽제 피해 지원 시작('00.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3년~계속
- 사업규모 : 연간 11,000여명의 월남참전유공자 등이 검진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전액지원
- 사업 수혜자 :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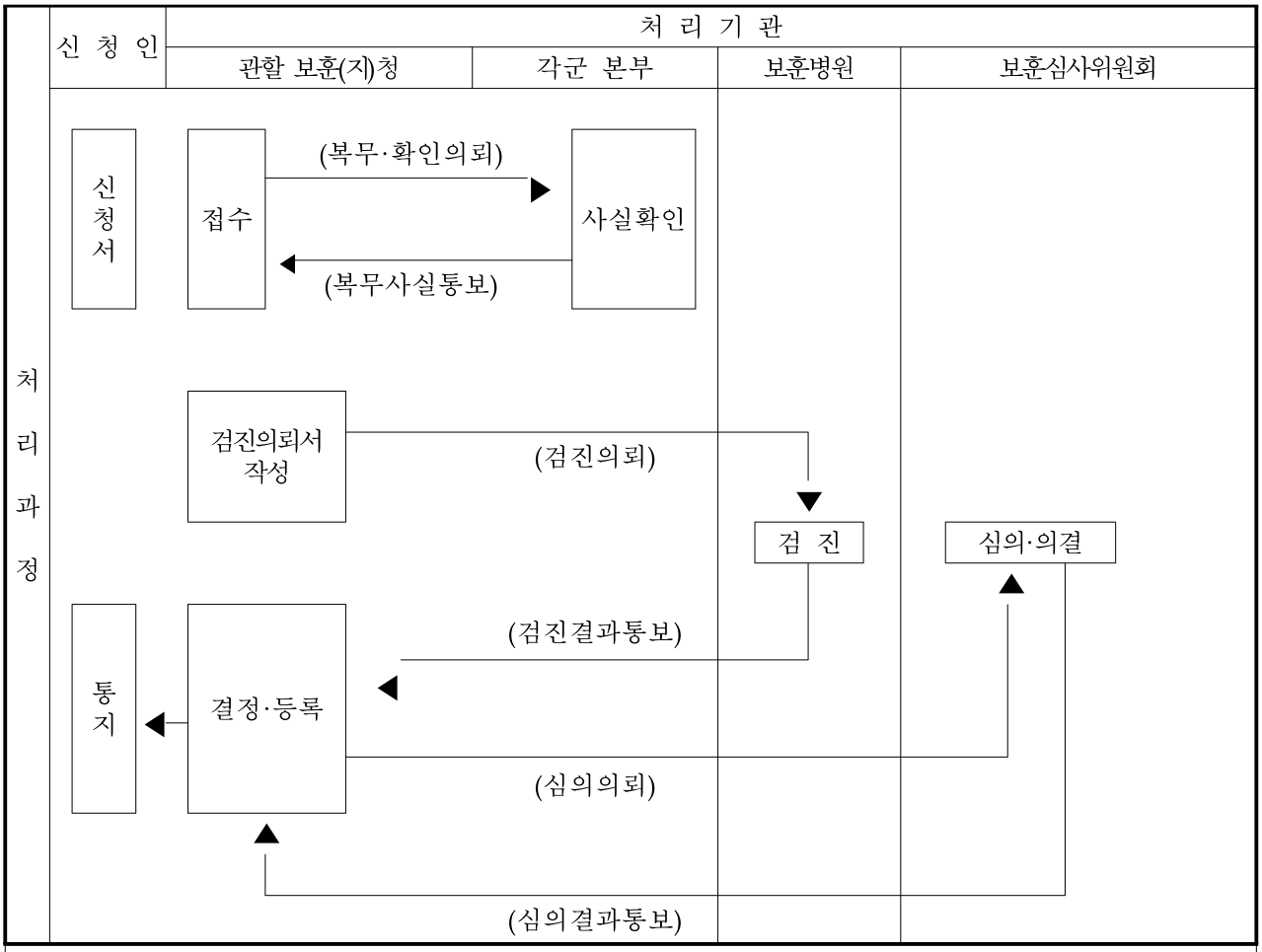

○ 보훈병원에서는 보훈(지)청에서 검진을 의뢰한 자에 대해 신청질병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

○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 검진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청구에 따라 검진비 내역 정산 후 국가보훈처에서 지급

사 업 명
(23) 고엽제 역학조사 (2155-36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일반회계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5	369
명칭	보훈의료복지	고엽제지원	고엽제 역학조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고엽제 역학조사	0.4	97	97	303	97	-	-

4. 사업목적

- 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간의 상관성을 구명하여 고엽제후유증 범위 재설정 및 합리적인 보상근거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대부분 미국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으나, 우리나라 사람만의 유전, 환경, 식이적 특성 등 복합적인 차이로 미국인과 달리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다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95년부터 우리나라 월남전 참전군인을 대상으로 5차에 걸친 역학조사 추진
- 1차('95~'96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실시, "버거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뇌경색증・건성습진・무혈성괴사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
- 2차('98~'01년) 연세대 의료원에서 실시, 인정질병 없음
- 3차('03~'06년) 연세대 의료원에서 실시,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 4차('09~'12년) 관동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 인정질병 없음
- 5차('13~'16년)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 "침샘암·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약 8억원('19년 97백만원)
- 사업기간 : '19.1.~ '21.12
- 사업규모 : 월남참전군인 및 2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전문연구기관
- 사업 수혜자 : 월남참전군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용역 계약 → 지급 신청 → 지급 결정 → 지급
・역학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역학조사 연구비 지급
・계약 종료 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사 업 명
(24)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2156-3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6	380
명칭	보훈의료복지	의료환경개선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종합재활체육시설 관리운영	1,923	2,213	2,213	2,757	1,959	△254	△11.5

4. 사업목적

- 보훈재활체육센터의 개원으로 체계적인 재활체육시설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우수 장애인 선수 육성 등을 위한 운영비 확보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고취시켜 국가유공상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7조(의학적 재활등)
-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6 (의학적 재활 등)

② 추진경위

- 2006. 7월 : 중앙보훈병원 건립시 철거될 대체시설로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 추진
- 2011. 5월 : 보훈재활체육센터 개원식 및 전국상이군경 체육대회
- 2013. 7월 : 종합운동장 및 양궁장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및 일반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의학적 재활 등)

7. 사업 집행절차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검토·교부·통지	→	보조금 사업수행 및 정산보고	→	보조 금액 확정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사 업 명
(25) 보훈병원재활센터확충 (2156-38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6	382
명칭	보훈의료복지	의료환경개선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1,727	12,778	12,778	22,203	18,832	6,054	47.4

4. 사업목적

- 전·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에게 진료와 연계한 양질의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의학적 재활 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7조(의학적 재활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학적 재활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8년
- 추진배경
  -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공약이행계획 보고('17.5)
    - * 보훈병원 확충 등을 통한 보훈의료서비스 질 개선(종합재활전문센터 신축)
  - ◆ 복지부 주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 창출 방안 수립('17.6)
    - *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의사직 11, 간호직 69, 보건직 117 등 197개)
  - ◆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과제 포함('17.8)
    - * 보훈복지 강화에 포함된 종합재활전문센터 건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660억원
  - * 4개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으로 광주,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만 총사업비 대상사업에 해당
  - • 광주: 225억원, 부산247억원, 대전 96억원, 대구 92억원
- 사업기간 : '18～'22년
- 사업규모 :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병 원 별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사업개요	연면적 8,380㎡ 지하1층, 지상7층 114병상	연면적 7,466㎡ 지하1층, 지상6층 80병상	연면적 3,500㎡ 2개층 40병상	연면적 3,306㎡ 지상2층
사업기간	'18~'20년	'18~'21년	'20~'21년	'21~'22년
사 업 비	22,541백만원	24,660백만원	9,625백만원	9,17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 교부신청> <국고보조> <사업시행 및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사 업 명
(26)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2156-38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6	383
명칭	보훈의료복지	의료환경개선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증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	1,792	1,792	4,299	4,299	2,507	139.8

4. 사업목적 · 내용

○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

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 경위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기본계획 수립('18. 3월)

○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 자체심사('18. 3월),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18. 5월)

○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 심의 가결('19.4월)

○ 치과병원 설계용역 계약('19.5월～'20.2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 ~ '22년(신규)
- 총사업비 : 41,216백만원(국고 50%, 보훈공단 50%)
- 사업규모 : 건물(지하4층~지상5층, 연면적 10,543㎡), 의료장비(유닛체어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조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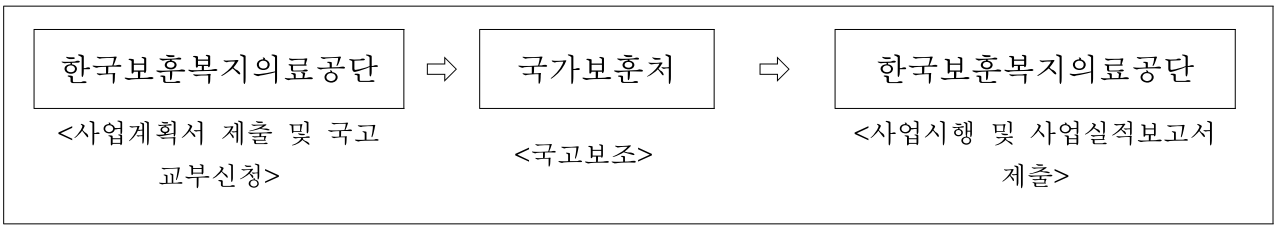

사 업 명
(27)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2156-38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6	385
명칭	보훈의료복지	의료환경개선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4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	-	-	1,558	1,350	1,350	순증

4. 사업목적 · 내용

○ '97년 개원 후 23년 경과로 시설이 노후화된 대전보훈병원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 경위

○ ‘97년 대전보훈병원 개원

-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시설 등 공간부족
- 총 385병상 중 6인실 병상 (228병상, 59%) 대다수로 입원환자 불편 초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3,012백만원 (국고 40%, 보훈공단 60%)
- 사업기간 : ‘20 ~ ’22년(신규)
-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5층, 연면적 14,523㎡(4,400평)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전보훈병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조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 교부신청> ⇨ 국가보훈처 <국고보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시행 및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사 업 명
(28)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2156-38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6	386
명칭	보훈의료복지	의료환경개선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인천보훈병원 응급실설치	-	-	-	2,564	2,564	2,564	순증

4. 사업목적 · 내용

○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및 진료공간 확장을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적기 진료와 쾌적한 환경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 경위

○ '18년 11월 인천보훈병원 개원(130병상, 15개진료과)

- 응급실 미 운영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 불가
- 외래환자 대비 대기 공간 부족(2층), 재활치료실 협소(3층)로 환자 불편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 ~ '21년(신규)
- 총사업비 : 6,118백만원(국고 100%)
- 사업규모 : 응급실 설치(1층, 854㎡), 외래 진료대기실 확충(2층, 355㎡), 물리치료실 확충(3층, 370㎡)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인천보훈병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조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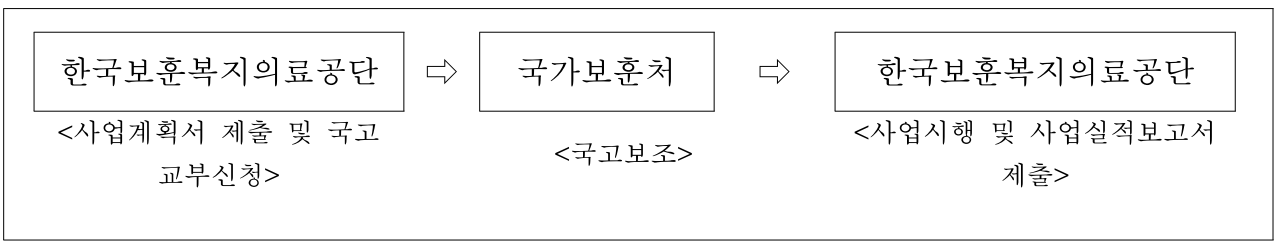

사 업 명
(29) 대구보훈병원 시설확충 (2156-38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6	387
명칭	보훈의료복지	의료환경개선	대구보훈병원 시설확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대구보훈병원 시설확충	-	-	-	2,190	2,190	2,190	순증

4. 사업목적 · 내용

○ 대구보훈병원 응급실 진입도로 확장공사, 심혈관센터 확충 및 건강검진실 리모델링을 통해 응급실 내원객에 대한 안전도모와 쾌적한 환경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 경위

○ '93년 2월 대구보훈병원 개원

○ '08년 11월 대구보훈병원 서관 리모델링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년(신규)
- 총사업비 : 2,190백만원(국고 100%)
- 사업규모 : 도로폭 5m확장 및 보행도로 추가 확보(약 70m), 심혈관센터 확충 (서관 2층 병동 350㎡), 건강검진실 리모델링(300㎡)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구보훈병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조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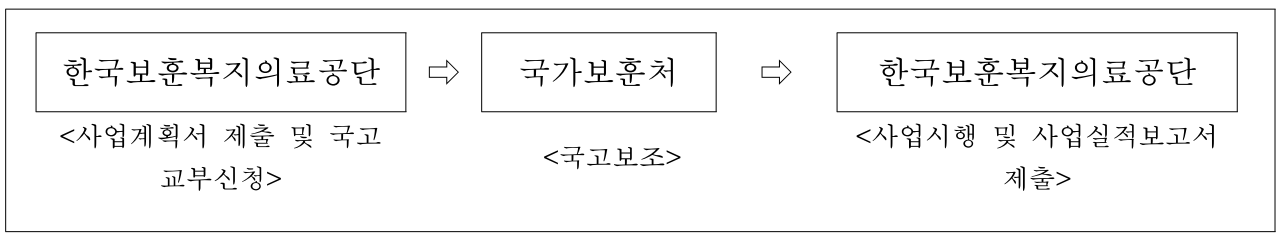

생활안정지원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사 업 명
(30)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수업료면제)(2241-33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41	330
명칭	생활안정지원	교육지원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수업료 면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수업료면제)	28,023	25,893	25,893	25,573	23,668	△2,225	△8.6

4.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5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② 추진경위

<사립대 국고보조>

- 1977년도「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대학진학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면제금액의 50%를 국고보조 실시
- 2002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신설하여 사립대학 국고보조 근거 마련

<수업료등 국비보전>

- 2006.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개정 2007. 1. 1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부담한 수업료를 국가가 보전 실시

<외국인학교 수업료등 국비지원>

- 2012년 보상체계개편으로 「경제자유구역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교육과정별 국내 동급학교 수준의 수업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지원
-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13년부터 지원대상 학교에서 제외('13년 정무위 예산 심의 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62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50% 사립대 국고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사립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
- 사업 수혜자 :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립대학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집행 체계 : 국가보훈처 → 지방보훈청 → 보훈지청→학교 또는 교육비 신청인

○ 사업추진 체계

〈수업료등 국비보전〉

지급신청	↔	심사	→	수업료등 지급
신청인→보훈(지)청장		보훈(지)청		보훈(지)청→신청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의2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제17조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제17조

〈외국인학교 재학자 수업료등 보조〉

보조금 신청	↔	면제대상 여부 심사	→	보조금 지급
신청인→ 보훈(지)청장		보훈(지)청장		보훈(지)청→신청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의3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2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2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보조〉

보조금 신청	↔	면제대상 여부 심사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
사립대→ 보훈(지)청장		보훈(지)청장		보훈(지)청→사립대		사립대→보훈(지)청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 령제42조제6항		교육지원업무처리 규정 제13조,제14조		교육지원업무처리 규정 제1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 업 명
(31)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등)(2241-4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41	453
명칭	생활안정지원	교육지원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학습보조비 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학습보조비 등)	1,628	1,528	1,528	1,568	1,528	-	-

4.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비 등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추진경위

- 1961년 「전몰군경유자녀 보호법」을 제정 1962년부터 전몰군경 유자녀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중·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및 사교육비 일부 지원

※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용어 변경(2009년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62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집행 체계 : 국가보훈처 → 지방보훈청 → 보훈지청

○ 사업추진체계

<학습보조비 지급>

취학자전산입력	↔	지급대상명단 및 자금 송부	→	학습보조비 지급	→	지급결과통보
보훈(지)청장		처본부→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처본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6조 및 시행령제43조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제6장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제6장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제6장

사 업 명
(32) 취업지원(2257-38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57	385
명칭	생활안정지원	취업지원	취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취업지원	2,337	2,436	2,436	2,960	2,960	524	21.5

4.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 : 제28조～제3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 : 제32조～제4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 : 제18조～제31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 : 제18조～제30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② 추진경위

- 1961년 이후 국가에서는 민간기업 등에 대해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실시
- 1997년 IMF이후 기업경영의 곤란으로 취업대기자 매년 증가
- 2007년도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가점비율 축소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단인 취업수강료지원제도를 2007년 도입·시범 운영
-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시 경상이자 재활교육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정하여 운영, 이는 2000년도 7급 국가유공상이자 신설 이후 30대 미만 상이군경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재활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
- 2011년 전문직업상담사제도를 도입하여 취업희망자별 체계적 직업·심리상담으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5개 지방보훈청 및 수도권 내 3개 보훈지청(서울남부, 서울북부, 경기남부)에 각 1명씩 배치, 총 8명 운영
- 2014년 7월부터 직업상담사 4명을 확대하여 취업대기자 500명 이상 기관(인천, 경기북부, 울산, 경남동부)에 1명씩 배치, 총 12명 운영
- 2013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종전 특별채용직렬인 기능직이 폐지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호, 운전, 시설관리 등 35개 직렬을 특별채용직렬로 신설하여 지원(2014.4.28. 예우법 시행령 개정)
- 2015년 1월 국가기관 취업희망자 적체 및 대기기간 장기화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의무채용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 2015년 12월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무기계약 및 기간제) 채용시에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점 부여할 수 있도록 예우법 시행령 개정
- 2017년 7월부터 직업상담사 2명을 확대하여 신설 기관(경기동부, 충남동부)에 1명씩 배치, 총 14명 운영
-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부터 직업상담사 10명을 추가확대하여 취업대기자 300명이상 기관(5개 지방청, 서울남부, 인천, 강원서부, 전북동부)에 배치, 총 24명

운영

- 2018년 12월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인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1년부터 단년도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2,960백만원('20년 예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취업지원 절차

-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신청인 →보훈지청	보훈(지)청 →기업체	보훈(지)청 →기업체	기업체 →보훈지청	보훈지청 →해당업체 →신청인	기업체
취업신청 ⇨	직종확보 ⇨	취업대상자 복수추천 (5배수내) ⇨	추천자중 적격자선정 통보 ⇨	선정된 자를 보훈특별고용통지 및 취업통지 ⇨	30일내 고용

- 국가기관등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추천

국가유공자등 추천 의뢰		국가유공자 추천		국가유공자 채용
<국가기관 등>	⇨	<국가보훈처>	⇨	<국가기관 등>
· 대상기관 : 일반직 채용률 15% 미만 기관 · 추천시기 : 채용시험 공고 절차 전 추천		· 추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 · 추천기한 : 추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결과통보 : 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

○ 취업수강료 지원 절차

신청인 →보훈지청	보훈(지)청 →신청인	신청인 →교육기관	신청인↰ ↳교육기관	신청인 →보훈(지)청	보훈(지)청 →신청인
수강료지원 신청 ⇨	수강대상 결정 ⇨	학원등록 및 수강 (전액납부) ⇨	수강완료 확인서발급 요청 / 확인서 발급 ⇨	수강료 청구 ⇨	수강료 지급

보훈선양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사 업 명
(33)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3144-33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4	333
명칭	보훈선양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27,717	30,012	30,012	44,374	24,610	△5,402	△18.0

4. 사업목적

- 독립기념관이 민족의 **국난 극복 및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즐겨 찾고,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
- 이를 위해 독립기념관 **전시·연구, 교육·문화사업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활성화사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독립기념관법 제1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 1987년(국고보조)
- 대통령 지시('05.3,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시) "독립기념관 이관 및 활성화" 추진
  * 2005.5.18.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소관부처 이관
- 국무총리 지시('05.3) : 업무보고 시 "독립기념관 활성화" 추진 지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87년 ~ 계속
- 사업규모 : 부지 334만㎡, 전시관 등 건물 85동(건물연면적 64,959㎡)
  개관(1987년) 이후 총 관람인원 : 52,521천명('18년 관람인원 : 1,632천명)
- 사업시행방법 : 보조(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독립기념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독립기념관	정액지원 (수지차 보전)	독립기념관 제13조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의결(독립기념관 이사회)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승인 요청(독립기념관)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검토 및 승인(국가보훈처)
○ 보조금 교부 신청(매분기) 및 사업추진(독립기념관)
○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국가보훈처)
○ 보조금 지원(국가보훈처)'
○ 사업집행 및 정산

사 업 명
(34) 보훈정신계승발전 (3145-4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5	401
명칭	보훈선양	보훈정신함양	보훈정신계승발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보훈정신계승발전	2,081	1,936	1,936	6,257	1,936	-	-

4. 사업목적

- 독립·호국·민주화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보훈정신을 함양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발전

>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으로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이념으로 한다.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25조(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② 추진경위

- 1984년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위주의 원호사업 추진
- 1985년부터 정신적 예우풍토 조성과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목표로 민족정기 선양사업 전개
- 1999년 보훈교육연구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기능을 위탁, 교육훈련지원비 보조
- 2000년부터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보훈문화상 시상
- 2001년 '보훈문화 확산의 해'를 계기로 민족정기 교육·문화 활동 활성화 사업과 나라사랑 국민정신함양 활동사업의 확대 추진
-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 광복60주년을 계기로 체험교육 및 온라인 홍보에 중점을 두고 대국민 홍보 강화
- 2006년 세부사업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으로 예산 편성
-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사건 계기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함양 교육 강화, 국가 정체성 확립 필요성 대두
- 2011년 나라사랑교육 전담부서로 나라사랑교육과 신설(6.7.)
-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시 나라사랑정신 함양 사업 강화 지시
- 2015년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캠페인」(공직자 등 대상별·세대별 특성에 맞는 나라사랑 교육)을 국정과제로 추진
- 2016년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 나라사랑 특성화 대학, 나라사랑 꿈나무 이동교실 신설, 운영
- 2017년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폐지, 강의위주에서 참여·체험위주로 교육과정 개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5~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학교, 민간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보훈대상자, 초·중·고·대학생, 교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보훈교육연구원	정액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 제43조
학교, 민간교육단체	정액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2항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 공개 모집 ⇨ 심사, 대상 확정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 결과보고회, 보조금 정산 등

○ 보훈콘텐츠 공모

기본계획 수립 ⇨ 보훈콘텐츠 공모 ⇨ 당선작 시상 ⇨ 당선작 발간

사 업 명
(35) 국내외사적지탐방 (3145 - 4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5	403
명칭	보훈선양	보훈정신함양	국내외사적지탐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국내외사적지탐방	731	839	839	1,315	839	-	-

4. 사업목적·내용

- 청소년, 대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적지 탐방을 통해 생생한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이해를 확산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발자취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통해 보훈 정신의 계승·발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시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지침(대통령훈령 제137호, ’05. 1. 11.)

② 추진경위

-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순방교육 실시
- 광복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4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국내외사적지탐방 기본계획 수립
  - 탐방 코스(국가, 지역) 및 탐방단 규모 확정
② 위탁사업자 선정
③ 국내외사적지탐방 참가자 선발(청소년, 대학생 및 교원 등)
④ 국내외사적지탐방 참가자 사전교육 실시
⑤ 국내외사적지탐방 실시

사 업 명
(36) 현충시설 건립 (3146-4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6	405
명칭	보훈선양	현충시설	현충시설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당초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현충시설 건립	7,710	15,311	15,311	45,170	22,759	7,448	48.6

4. 사업목적

- 현충시설 건립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보훈의식 함양
- 현충시설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체험 교육장으로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4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2조, 제14조

② 추진경위

- '95년 이전 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소액지원
- '96년 이후 세출예산에 반영 지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한 법체제 마련('02.1.26)
-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제정('02.3.30)
-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정('03.2.2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6년부터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또는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 및 기념사업회 등 민간 단체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	30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4조 제1호~제3호

7. 사업 집행절차

순서	업무 처리내용	적용법령 등
1	○ 현충시설 건립 사업계획서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74조의 4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2조 ①
2	○ 사업 규모의 적정 여부, 자금 확보방안, 실현가능성 등 검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74조의 4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1조~18조
3	○ 현충시설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 선정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4조
4	○ 지원예산 확정 통지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4조, 제15조
5	○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6조
6	○ 신청서류 심사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6조 ○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 보조금 지급	〃
8	○ 정산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7조

사 업 명
(37) 현충시설관리 (3146-4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6	406
명칭	보훈선양	현충시설	현충시설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현충시설관리	4,472	4,637	4,637	4,737	4,472	△165	△3.6

4. 사업목적

- 현충시설 개보수 및 안내판 설치
  · 현충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현충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진
- 현충시설 활성화
  ·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 찾는 보훈문화 확산 및 역사교육의 체험의 장으로 활용
- 해외 사적지 보존·관리
  · 국외에 산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및 참전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외동포의 자긍심 함양 및 교육장으로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현충시설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95년 이전 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소액지원 / '96년 이후 세출예산에 반영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법체제 마련('02.1.26)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02.3.30)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정('03.2.2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6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현충시설 개보수 및 활성화 사업 지원 등(4,47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또는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 및 기념사업회 등 민간 단체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	정액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4조 제4호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규모의 적정 여부, 자금 확보 방안, 실현가능성 등 검토·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지원예산 확정 통지
- 사업추진 및 보조금교부신청
- 신청서류 심사 및 보조금교부 결정
- 보조금 지급
- 개보수 및 활성화 등 사업 실시
- 정산 및 사업 평가

사 업 명
(38) 기념관관리운영 (3146-4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6	407
명칭	보훈선양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예산(A)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 기념관관리운영	5,804	5,251	5,251	7,090	6,618	1,367	26

4. 사업목적

- 기념관이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기여하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② 추진경위

< 백범김구기념관 >

- '00.6.26 기념관 기공식
- '02.10.11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에 기념관 관리위탁 체결 * 6차 약정('20.1.1)

- ′02.10.22 기념관 준공・개관 * 총사업비 167억(국고 160, 성금 7)
- 건립이후 2004년도에 관리 운영비를 신규 5억원 반영
- 2005년부터 필수 관리비 예산 지원

< 안중근의사기념관 >

- ‘09. 3. 26 공사 착공
- ‘10.10.26 기념관 준공・개관 * 총사업비 180억(국고 146, 성금 34)
- ‘10.10.26 (사)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념관 관리위탁 약정 체결 * 4차 약정(‘19.10.26)
- 2011년도부터 기념관 관리운영비 예산 지원

< 윤봉길의사기념관 >

- ‘88.12.1 준공·개관 * 총사업비 15억원(전액 국민성금)

  * 건립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89.3.3)

- ‘15.12.30 국가로 소유권 이관
- ‘15.12.30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에 기념관 관리위탁 체결 * 2차 약정(’19.1.1)
- 2016년도부터 기념관 관리운영비 예산 지원

< 유엔평화기념관 >

- ‘12. 9월 공사 착공
- ‘14.11.11. 준공・개관 * 총사업비 258억원(국고)
- ‘14.9.3 (사)국제평화기념사업회에 기념관 관리위탁 약정체결 * 2차 약정(’17.9.29)
- ‘14.11월부터 기념관 관리운영비 예산 지원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

- ′05. 7.29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 ′05.10.26 시행령 제정
- ′08.12.29 법인설립 허가(국가보훈처장) * ′08.12.31 법인설립 등기
- ′14. 8.25 기공식 및 ′17.10.27 : 개관
- ‘17. 9. 1 (재)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 기념관 관리위탁 체결

< 호국보훈기념관 >

- ′16. 3. 9 국가보훈처-순천시 간 MOU체결
- ′18. 3. 7 기공식 * 총 169억원(국고), 국가직접 건립 및 관리
- ′20. 하반기 개관(예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2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6개 기념관 운영

▪ 백범김구기념관 : 부지 18,354.6㎡(5,552평), 연면적 : 9,683㎡(2,929평) * 지하 1층, 지상 2층
▪ 안중근의사기념관 : 부지 5,772㎡(1,749평), 연면적 : 3,756㎡(1,138평) * 지하 2층, 지상 2층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 부지 6,586㎡(1,996평), 연면적 : 2,452㎡(743평) * 지하1층, 지상3층
▪ 유엔평화기념관 : 부지 6,810㎡(2,064평), 연면적 7,999㎡(2,424평) * 지상 5층
▪ 독도의용수비대 : 부지 24,302㎡(7,351평), 연면적 2,118㎡(640평) * 지상 2층
▪ 호국보훈기념관 : 부지 9,372㎡(2,840평), 연면적 4,700㎡(1,424평) * 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기념사업협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념사업협회	정액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정산보고서 접수 및 정산

사 업 명
(39)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지원 (3147-3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7	340
명칭	보훈선양	기념사업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	841	850	850	850	847	△3	△0.4

4. 사업목적

- 독도 수호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신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명예선양을 통해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을 제고하기 위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2005. 7.29.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법률 제7644호)
- 2005.10.26.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05호) 제정

② 추진경위

- 2008.12.29. 법인설립 허가(국가보훈처장)
- 2008.12.31. 법인설립 등기, 회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
- 2009. 2. 5. 기념사업회 개소
- 2011. 4.29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 2013. 3.29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 2014. 8.25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기공식
- 2017.10.27 독도의용수비대 준공식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9 ~
- 사업규모(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4리 94번지
  · 대지/건물 : 25,302㎡(울릉군 무상대부)/2,118㎡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 사업 수혜자 :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정액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대원/유족 예우지원금 지급,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 및 기념관 운영
○ 사업 완료 후 국고보조금 정산

사 업 명
(40) 보훈기념행사 (3147-4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7	411
명칭	보훈선양	기념사업	보훈기념행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보훈기념행사	2,850	3,865	3,865	6,607	5,479	1,614	41.8

4. 사업목적

- 보훈기념행사를 통해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통한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국경일에 관한 법률(3·1절, 8·15)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독립유공자 예우지침(대통령 훈령)

② 추진경위

- 2·28민주운동기념행사(2.28)

·1960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에서 기념행사 거행

·2018.2.6「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24호)에 의거 201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 거행

- 3·8민주의거 기념행사(3.8)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에서 기념행사 거행

·2018.11.2「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271호)에 의거, 2019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 거행

- 3·15의거기념행사(3.15)

·"3·15의거일" 마산시기념일 제정(1993.7.5)

·"3·15의거일" 경상남도기념일 제정(2003.12.12)

·2010. 3.12.「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4호)에 의거 정부기념일로 제정

·2011. 3.15. 정부주관(국가보훈처)으로 기념식 개최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4.11)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독립유공자협회에서 거행

·1989.12.30「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876호)에 의거 1990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 거행

·2018.11.2. 임시정부수립기념일 날짜변경(4월 13일→4월 11일)

- 4·19혁명 기념행사(4.19)

·1961년부터 1973년까지 서울특별시 주관 거행

·1973.3.30「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거 1974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 거행

-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5.18)

·1981년부터 1996년까지 5·18관련단체 및 유족 중심으로 기념식 거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369호, '97.5.9)에 의거 정부주관(행정

자치부)으로 거행

·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02.7.27)으로 2003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 거행

- 현충일 추념행사(6.6)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45호, '56.4.19)에 의거 6월6일을 현충일로 제정

· 국립묘지령(대통령령 제4510호, '70.1.9)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년 1회 현충식 거행

· 1956년부터 1982년까지 총무처에서 주관

· 1982.5.15「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824호)에 의거 1983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추념식 거행

-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11.3)

· 1953년 광주학생운동일인 11월 3일을 '학생의날'로 지정, 1973년 폐지

· 1984.9.22. '학생의날' 국가기념일 부활(주관 문교부, 현 교육부)

· 2006.2.9.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명칭 변경(주관 교육부)

· 2018.11.2「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271호)에 의거 국가보훈처, 교육부 공동주관, 201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 거행(계기행사는 교육부 주관)

-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11.17)

· 1962년부터 1969년까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거행하다 1970년부터 1996년까지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 거행

· 1997.5.9「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369호)에 의거 11월 17일을 정부기념일로 복원 제정하고 1997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 거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74년～계속
- 사업규모 (단위 : 억원)

사업명	'15	'16	'17	'18	'19
보훈기념행사	21	22	22	22	39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광복회 등 민간행사주관단체	정액	○ 보조율 법적근거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정부기념일 계기행사 계획 파악
② 정부기념행사 기본계획(안) 작성
③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기본계획 의견 조회
④ 정부기념행사 기본계획 확정
⑤ 정부기념행사 기본계획 차관회의 보고
⑥ 정부기념행사 세부추진계획 및 안내계획 수립
⑦ 정부기념식 주관·거행

사 업 명
(41) 호국보훈의달행사 (3147-4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7	412
명칭	보훈선양	기념사업	호국보훈의달행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호국보훈의 달 행사	1,414	1,411	1,411	1,411	1,398	△13	△0.9

4. 사업목적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자라나는 세대 등 온 국민에게 확산시키고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② 추진경위

- 호국보훈의 달은 1963년에 처음 설정되어 범 정부행사로 시행되어 왔으며, 1974년부터 6월 한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 각종 행사 추진

- '05년 광복 60년, 6·25 전쟁 55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예우분위기 확산 및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큰나무』 달기 운동 전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4년~계속
- 사업규모

사업명	'15	'16	'17	'18	'19
호국보훈의달행사	1,695	1,626	1,420	1,420	1,411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타 민간행사 주관단체	정액	○ 보조율 법적근거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호국보훈의 달 행사 기본계획(안) 작성
2.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의견 조회(기관별 협조사항)
3. 호국보훈의 달 행사 기본계획 확정
4. 국무(차관)회의 보고
5.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6. 호국보훈의 달 행사 결과 수합 및 종합평가

사 업 명
(42)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3147-4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7	413
명칭	보훈선양	기념사업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당초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독립운동관련 사업등지원	2,576	2,432	2,432	5,279	2,691	259	10.6

4. 사업목적

-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신성인하신 애국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국내·외 독립기념행사 추진 및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독립유공자예우지침(대통령훈령 제137호, '05.1.11)

② 추진경위

- '85년부터 정신적 예우 풍토 조성과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목표로 민족정기선양 사업 전개

- ‘90년부터 “독립운동사를 통한 민족정기선양” 부문과 “보훈이념의 확산을 통한 국가유공자 공훈선양사업” 중점 추진
- ‘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국내·외 독립기념행사 지원 확대
- ‘99년 3·1절 80주년을 계기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 최초 기획 및 지원
- ‘0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계기 기념사업 지원
- ‘12년 윤봉길 의사 상해 의거 80주년 계기 기념사업 지원
- ‘13년 김상옥 의사 의거·순국 81주년, 흥사단·광복단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 ‘15년 광복 70주년 계기사업 추진 및 대한광복회 설립 100주년 기업사업 등 지원
- ‘16년 최대 규모의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행사 추진, 외국인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초청으로 행사의 의미 제고 및 국민의 관심 집중
- ‘18년 안창호선생 순국 80주기, 조소앙선생 순국 60주기 등 특별주기 사업추진 및 항일여성독립운동가 특별 선양사업 추진으로 여성독립운동가의 공훈과 업적 재조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85년~(계속)
-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5	‘16	‘17	‘18	‘19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2,389	2,320	2,344	2,594	2,43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 관련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국가보훈대상자,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	정액	보조율 법적 근거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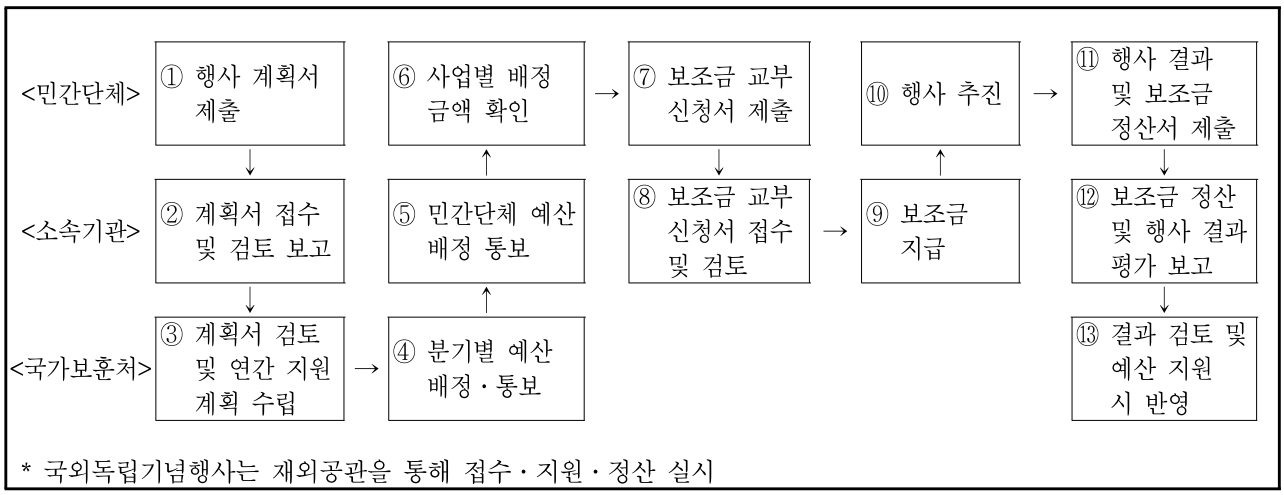

* 국외독립기념행사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지원·정산 실시

사 업 명
(43) 청산리·봉오동 전승 기념사업 (3147-4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7	418
명칭	보훈선양	기념사업	청산리·봉오동 전승 기념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청산리·봉오동 전승 기념사업	-	-	-	2,928	2,552	2,552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청산리전투 전승 기념사업) 독립전쟁사의 기념비적 전투로 기록되는 청산리전투 10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으로 국민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
- (봉오동전투 전승 기념사업) 독립전쟁사의 기념비적 전투로 기록되는 봉오동전투 10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으로 국민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독립유공자예우지침(대통령훈령 제137호, '05.1.11)

② 추진경위
- '85년부터 정신적 예우 풍토 조성과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목표로 민족정기선양 사업 전개
- '90년부터 "독립운동사를 통한 민족정기선양" 부문과 "보훈이념의 확산을 통한 국가유공자 공훈선양사업" 중점 추진
- '0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계기 기념사업 지원
- '12년 윤봉길 의사 상해 의거 80주년 계기 기념사업 지원
- '13년 흥사단·광복단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 '15년 광복 70주년 계기사업 추진 및 대한광복회 설립 100주년 기업사업 등 지원
- '19년 2·8독립선언 100주년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0년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회
- 사업 수혜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정액	보조율 법적 근거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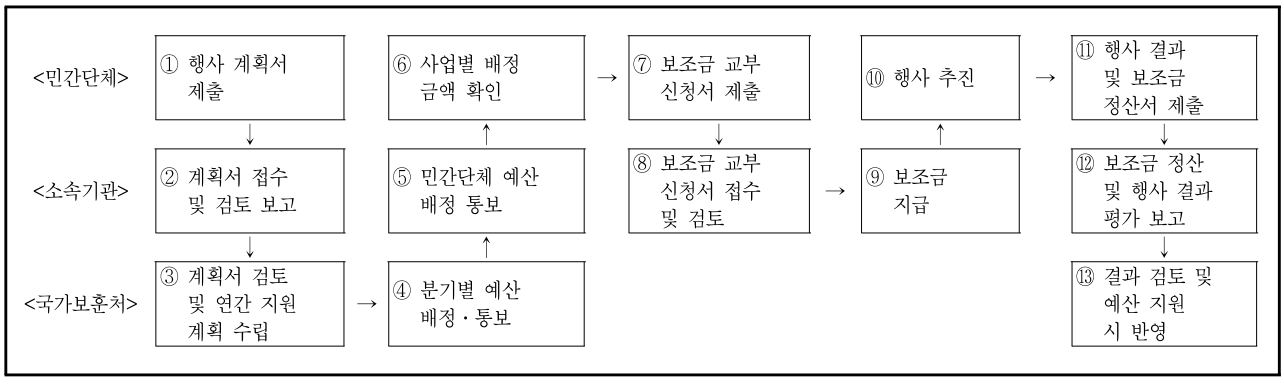

보훈예우및국립묘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사 업 명
(44) 영주귀국정착금(3248-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48	310
명칭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영주귀국정착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영주귀국정착금	427	615	615	565	427	△188	△30.6

4. 사업목적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국내 조기정착과 생활안정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정착금)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3, 정착금 지급구분표 】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7천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7천만원
	2. 정착금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4천5백만원
	나.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5천5백만원
	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7천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를 준용한다.

② 추진경위

○ ’89.1.18. 김동삼 선생 후손 영주귀국(최초)

○ ’92년 한·중 수교 후 독립유공자 및 후손 영주귀국 본격화

○ ’94.12.31. 「독립유공자법」 제정(’95.1.1. 시행)

- 영주귀국 정착금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중 1인

○ ’95.5.20. 재중국동포지급대상자 영주귀국 허가 지침(외무부 영재 29000-955)

○ ’05.3.31. 「독립유공자법」 개정(’05.6.1. 시행)

- 정착금 지급대상자 확대(유족 중 1인 → 유족 중 세대주)

-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 ’05.4.13.~5.10. 영주귀국자 생활실태 조사(153세대 대상)

○ ’07.5.23.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발족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 보훈처, 법무부, 국과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 중국 기록(당안) 및 족보, 만주독립운동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보훈심사위원장)

○ ’07.10.1.~11.15. 영주귀국자 생활실태 조사(212세대 대상)

○ ’07.12.26.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MOU 체결

- 국과수 유전자 검사를 통한 후손 여부 확인

○ ’08년 이후 독립유공자 후손 국내정착 교육(매년 1회)

○ ’10.5.23.~10.22. 영주귀국자 정착실태 조사(393세대 대상)

○ ’14.5.21. 「독립유공자법」 개정

- '05.6.1. 이전 영주 귀국한 유족 중 세대주에게 정착금 소급 지급

○ '16.11.~'17.4. 영주귀국유족 생활실태 조사(523세대 대상)

> **※ 영주귀국유족 생활실태 실태조사 결과**
> - **근로**실태 : 경제활동 참여 47.9%/(상용근로자 23.9%, 임시・일용근로자 65.8%)
> - **소득**실태 : 평균 연간소득 1,682만원
> - **주거**실태 : 자가비율 19.6%(평균 주택가 8,579만원)

○ '17.12.「독립유공자법」개정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무주택 세대주에 주택우선공급 가능(제24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세대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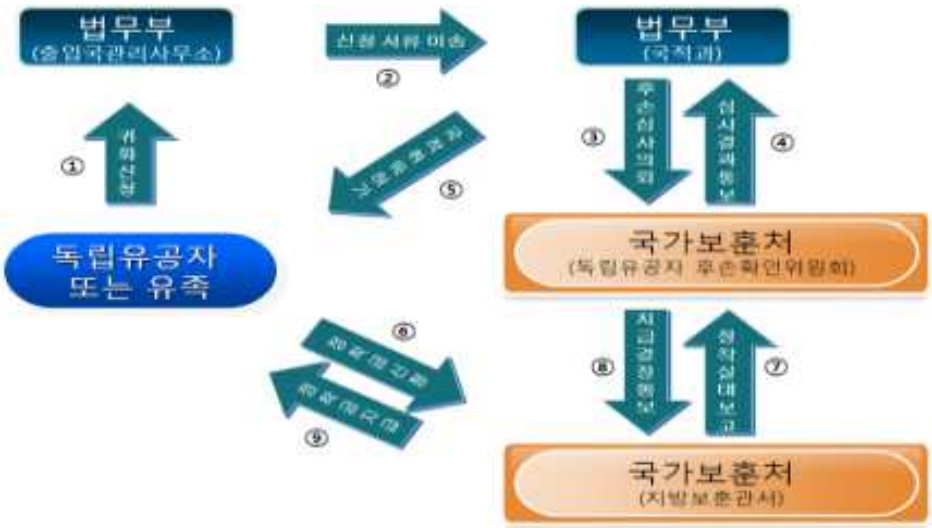

①, 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④ :「국적법시행령」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후손확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기능) 독립유공자 후손확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국적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국 등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할 경우 후손 해당 여부 의견

⑥~⑨「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다만,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세대를 구성하여 정착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 업 명
(45) 독립유공자발굴포상및홍보 (3248-34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48	345
명칭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예우등	독립유공자발굴포상및홍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최종안(B)		
독립유공자 발굴포상및홍보	1,537	2,099	2,099	2,129	2,395	296	14.1

4. 사업목적

- 근현대사 전공자로 구성된「전문사료발굴분석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부주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실시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의 신뢰성과 상징성 향상
- 국내외 독립운동관련 개인 공적입증자료의 수집·정리 및 분석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포상하고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
- 영주귀국자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및「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후손 심사의 신뢰도 제고
- 나라의 독립과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을 월별로 한분씩 선정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도 제고
- 국내외에서 수집한 독립운동사료를 분석, DB화하여 기록으로 보존하여 독립운동 참여자를 새롭게 발굴·포상 및 공적 입증 자료로 활용
- 독립운동관련 기록 정보의 검색·활용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임
- 국민들에게 애국선열의 공훈선양관련 자료 공개로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포상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0조(영예의 수여)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①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행한다.
  ③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 상훈법시행령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①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정부표창규정 제14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법은 (중략) 광복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 등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이하 생략)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

- 1949년 독립운동 유공 건국공로훈장 수여 개시
- 1962년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포상
- 1963년부터 1976년까지 총무처 주관으로 포상
- 1977년부터 국가보훈처로 이관
- 1995년 신청위주에서 정부주도의 발굴포상 실시
- 광복절계기 독립유공자 청와대 초청행사시 대통령 지시(2004. 8. 25)
  - "역사적 사실을 다 발굴하고 특별히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반드시 포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포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것"
- 연두업무 보고(2005. 2)
  - 정부차원의 독립유공자 대대적 발굴·포상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구성, 체계적인 사료수집 및 공적정리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 연두업무 보고(2006. 2)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 강화
  -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의 조사기능 등 보강 공적심사위원 지원, 사료정보화, 현장조사반으로 전문화
- 2006년 전문적, 심층적,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는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획기적 개편
  - 관련학회, 시민단체, 중앙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검증절차를 거쳐 공적심사 위원 대폭 교체(총 49명중 60%인 27명 교체)
  - 전문적·심층적인 심사를 위해 독립운동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 1분과 의병·3·1운동, 2분과 국내항일, 3분과 해외활동
- 2009년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개편
  - 비전문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전공학자로 교체
- 2012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개편
  - 심층적 심사를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운동분야별 각 분과위원회 운영을 유지

・제2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사회학・정치학・법학 등 인접학문 전문가를 위촉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심사 실시

- 2017년 행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친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를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
  ・ 제1심 각 분과(친일), 3분과(북한), 제2심(북한)
- 2018년 국정감사 시 가짜 독립유공자 조사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2019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위한 공적검증팀, 검증위원회 운영

〈 독립유공자 공적검증팀 및 검증위원회 운영 〉

- 2018.10.16.정무위 국정감사 시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지적
- 2019.1.21. 공적자료 검토 및 안건 작성 등 실무 연구원 채용
- 2019.1.29.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9.2.19.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 구성

〈 독립운동 사료수집 〉

- 1976년부터 독립운동관련 자료집을 발간하여 독립운동사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독립유공자 포상자료로 활용
- 2001년부터 해외 거주 유학생 또는 학자를 사료수집위원으로 위촉하여 사료수집 및 자문
- 1991년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1·2·3권)」의 간행을 시작으로 「해외독립운동사료집(총 39권)」까지 중요 해외수집사료를 자료집으로 발간
- 2015년「프랑스가 기억하는 한국의 독립운동」특별사진전 개최(광화문광장・독립기념관)
- 2017년 현충일 추념사 및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가 한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고 기리는게 국가가 해야 할 일임을 강조”

  - 2017년 연두업무보고 및 국무회의(‘17.8.8) 지시

  “독립유공자 발굴에 있어 국가 입증책임 강조‘

  - 2018년 학생항일운동 90주년 계기 독립운동 관련 징계자 학적부 수집 및 경찰 수사기록(1907~1956년) 및 형사 제1심 소송기록 등 사료 수집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국내정착 지원 〉

- ’94.12.31.「독립유공자법」제정(’95.1.1. 시행)
- ’95.5.20. 재중국동포 영주귀국 허가 지침(외무부 영재 29000-955)
- ’05.3.31.「독립유공자법」개정(’05.6.1. 시행)
  ・ 정착금 지급대상자 확대(유족 중 1인 → 세대주)

- ’07.5.23.「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발족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 보훈처, 법무부, 국과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 중국 기록(당안) 및 족보, 만주독립운동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보훈심사위원장)
- ’07.12.26.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MOU 체결
  · 국과수 유전자 검사를 통한 후손 여부 확인
- ’14.5.21.「독립유공자법」개정
  · ’05.6.1일 이전 영주 귀국한 유족 중 세대주(114세대) 대상 정착금 소급 지급
- ’17.12.30. 「독립유공자법」개정
  · 정착금 대상인 비수권 유족 세대주에게도 주택 우선공급

〈 이달의 보훈인물 선정 · 홍보 〉

- ’92년 이후 월별「이달의 보훈인물」선정 · 홍보
  · ’92~’14년까지 총 277명 선정
- ’92~’99년 홍보 소책자 발간(반기, 10,000부)
  · ’00년부터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재
- ’95년 이후 달력 제작 · 보급(20,000부)
- ’96년 이후 기획사진전 개최(독립기념관)
- ’97년 이후 후손 또는 기념사업회에 선정기념패 봉정
- ’99년 이후 기획사진전 개최(서대문형무소역사관)
- ’00.5.~’10.9. 순국선열유족회에서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주관
- ’01년부터 포스터 제작 · 배포(매월)
- ’03년 이후「이달의 독립운동가」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 ’04년「이달의 독립운동가」바탕화면 다운로드 기능 추가
- ’05.11.23. 네이버 카페 개설
  ※ 카페명 : 이달의 독립운동가(http://cafe.naver.com/bohunstar)
- ’10.10월 이후 광복회에서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주관
- ’10년 네이버캐스트에 독립운동가 공적내용 등재(NHN과 MOU 체결)
  ※ ‘네이버캐스트-인물과 역사-독립운동가’란
- ’13년도「이달의 6 · 25 전쟁영웅」사업비(1억 원) 반영
- ’13.1월 이달의 보훈스타 페이스북 개설(@bohunstars)
- ’15년 3·1운동 스페셜 영상물 및 스토리텔링 영상물 제작
  ※ 민관 홍보채널을 통해 바이럴(네이버, CJ헬로비전, NH농협방송, 재능교육, KTV, 정부청사 등)
- ’15.8월 문체부·한국영상대 협업, 무빙툰·웹툰 제작(10편)
- ’15.9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인지도 조사 첫 실시

- ’16.1월 이달의 보훈스타 인스타그램 개설(@ibohun)
- ’16.5월 다음백과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인물 홍보(다음kakao와 MOU 체결)
- 2017.12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기획전시관 확장이전 및 상설전시
- 2018년도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계기 2019년 인물 선정
  ※ 지난 28년간 기 선정된 327명 중 3.1운동 및 임정수립에 공로가 큰 인물을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재선정

〈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 ’04년～‘06년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DB구축
- 독립유공자 예우시책 강화(‘04. 2. 17, 대통령 지시)
-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청와대 초청행사시 대통령 지시(‘04. 8. 25)
- ’05, ’0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지적(정부주도의 발굴포상 강화)
- ‘07년부터 자체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DB구축
-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경축사(‘13. 8. 15)

“정부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결한 뜻을 기리고 유적과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

- 2015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지적
  · 공훈전자사료관 자료의 확대, 사용자가 보기 쉬운 디자인으로 개선
- 2017년 사료수집부터 독립운동 참여자, 공적심사, 훈장전수까지 통합관리하는 포상심사관리시스템으로 개선개발
- 2018년 자료 이미지 등록관리 기능 및 리포팅 기능 등 개발, 공훈전자사료관 사이트에 독립유공자 사진 수록 시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2,395백만원(’20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관서,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사업 수혜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광복회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3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제29~30조

7. 사업 집행 절차

○ 포상절차

○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 자료발굴·수집반 : 국내·외 독립운동사료 발굴·수집
- 자료분석·정리반 : 수집자료 분석·정리, D/B화
- 공적심사지원반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안건 작성, 심사지원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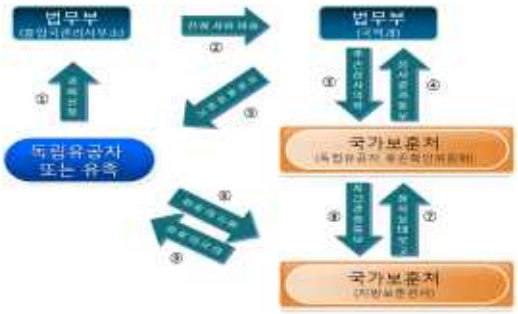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입찰의뢰	⇒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결과 조달청 통보	
국가보훈처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 (국가보훈처)		기술평가 점수	
사업추진 (성과물 접수)	⇐	사업자선정 계약	⇐	협상실시	⇐	협상순서결정	
국가보훈처		조달청		고득점순 (조달청)		기술평가 가격평가	

사 업 명
(46) 독립운동 등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 (3248-34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일반회계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48	346
명칭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독립운동 등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독립운동등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	216	192	192	611	170	△22	△11.5

4. 사업목적·내용

- 독립·호국·민주화 역사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독립운동사 연구 등을 촉진하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공훈을 선양하고, 국가발전의 정신적 자산으로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3조(공훈선양사업 추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 등의 시책)

② 추진경위
- 과거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 순국한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항일운동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각종 학술회의 지원
- 2004년부터 나라사랑정신 학술회의 등을 진행하여 호국·민주 분야로 사업 지원 분야 확대
- 2005년부터 독립정신 선양을 위한 독립운동사 등 문헌 편찬 지원
- 2012년부터 공모제로 전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 2015년 광복70년 계기 「한중국제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양국 학자의 연구 성과 공유 및 재외동포의 관심과 자긍심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170백만원(2020년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기념사업회, 민간학회 및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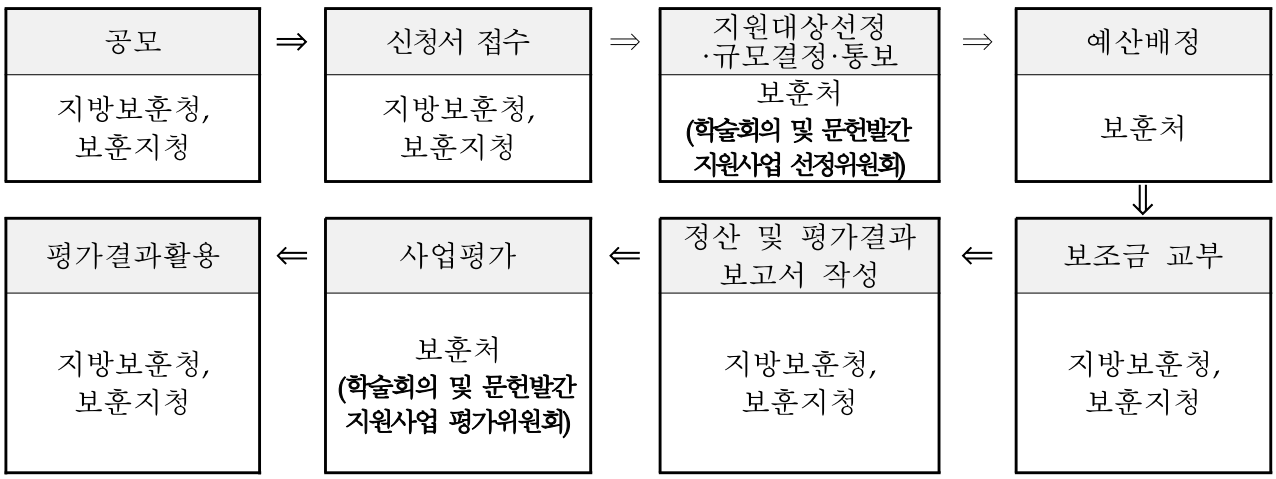

사 업 명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3248-4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48	415
명칭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843	9,096	9,096	10,582	8,575	△521	△5.7

4. 사업목적

- 국가유공자 사망 시 각종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 독립운동을 하시다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여, 독립유공자의 충의를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
-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에 부합하도록 명패의 디자인 및 품격을 격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제고 및 국민의 애국심 고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제1항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5호
사망 시 예우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영구용태극기 및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국가보훈처장은 명패의 제작·부착·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국외안장 선열 유해봉환 추진>

- 국외안장선열의 유해봉환 추진사업은 '46년도 민간에서 봉환위원회(위원장 박열)를 결성, 일본에서 순국하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의사의 유해 3위를 수습하여 효창원에 안장한 것이 시작, '75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계속 추진
-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의 유해봉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 표명('09년도)

· "금년은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에 맞추어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행사를 열 것 입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한책임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가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이 있는 한 조국을 위해 몸 바친 모든 분들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국가의 보훈은 영원할 것입니다." (삼일절 기념사)

· "만시지탄이지만 바로 오늘, 외국에 묻혀있던 애국선열 여섯 분의 유해를 꿈에도

그리셨을 이 나라 이 땅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선열들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해외 후손들을 초청해서 선조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엄숙하고도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것입니다."(임정수립 90주년 기념사)

- 안의사 유해발굴 관련하여 정부는 일본·중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찾겠다는 의지를 순국 100주년 즈음에 발표할 것(대통령지시 2010.3.22)

<영구용태극기·근조기 및 비석구입비>

- 1985년부터 영구용태극기 및 비석구입비를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한하여 지원하기 시작, 무공수훈자, 애국지사 및 4·19상이자, 기타 유공자 등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
- 2017년 9월부터 영구용태극기를 보훈·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장례단을 통해 인편으로증정
- 2018.6.1.일부터 처장명의근조기를 대통령명의 근조기로 격상하여 증정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2018.1.1.부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백만원이내 장례서비스 지원

<전국 산재합동묘소 관리>

-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분산 안장된 개인 및 합동묘소의 실태파악으로 향후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대두

<국가유공자 등 명패사업>

-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

- 국가유공자 사망 → 영구용태극기 및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근조기 회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2018 보훈업무시행지침
    대통령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대통령 훈령)

○ 비석구입비 지원(국가유공자)

- 묘비제작·설치 → 지원비 신청서 접수(지청) →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 2018 보훈업무시행지침

○ 국외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 국외현지묘소 실태조사 → 유족 등과 유해봉환 협의 → 유해봉환 대상 결정·추진
  → 국립묘지로 이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2018 보훈업무시행지침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매년 상조업체 조달계약으로 선정 → 국가유공자 사망 → 장례서비스 지원

○ 국가유공자 등 명패사업

- 명패제작·보급 → 명패부착 및 관리(지방자치단체) → 명패사후관리(지방보훈관서)

  * 국가보훈기본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사 업 명
(48)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3250 - 3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52
명칭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487	320	320	600	341	21	6.6

4. 사업목적

- 국립묘지를 애국심과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장(場)으로 발전·육성하기 위한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발굴 및 적극 지원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을 위해 신규 묘지 조성 등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전체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현충 선양 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2008년도
- 안장자 공훈선양 등 국립묘지의 상징성을 적극 활용, 참배객 등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열린 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성 제기
  ('06～'07 국정감사, '04 국무총리실 국립묘지발전위원회 등)
- 2006. 1.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8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250	350	333	580	32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유가족, 참배·견학 목적 방문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현충선양활동 계획 수립 시달 → ② 국립묘지별 현충선양활동 추진 계획 처 본부 보고 → ③ 학교, 지자체, 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 → ④ 현충선양활동 추진

사 업 명
(49) 국립대전현충원 (3250-3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53
명칭	국립묘지	국립묘지관리	국립대전현충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립대전현충원	16,476	22,283	22,283	35,969	25,377	3,094	13.9

4. 사업목적·내용

- 국립묘지 경내의 시설유지·보수 및 환경미화와 위생관리에 적정성을 기하여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
- 묘역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민간 전문용역업체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기 조성 묘역의 만장에 대비한 봉안당(충혼당)건립공사를 통하여 안장능력 확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005.7.29 법률 7649호)

② 추진경위

- 1979. 8.29 국립묘지관리소 대전분소 창설(대통령령 제 9581호)
- 1991. 3.28 국립묘지대전관리소 승격
- 1996. 6. 1 국립대전현충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2006. 1.30 국가보훈처로 소속 이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봉안당 건립공사(343억원)
  (설계비) 11억원 * '19년까지 기투자액 : 11억원
  (시설비) 312억원 * '19년까지 기투자액 : 156억원
  (감리비 등) 20억원 * '19년까지 기투자액 : 1억원
- 사업기간 : '17 ~ '21
- 사업규모 : 총 부지면적 12,350㎡(3,742평), 건축연면적 9,654.54㎡(2,926평)
  안장가능위수 : 49,000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국립대전현충원)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안장대상자 및 방문객 등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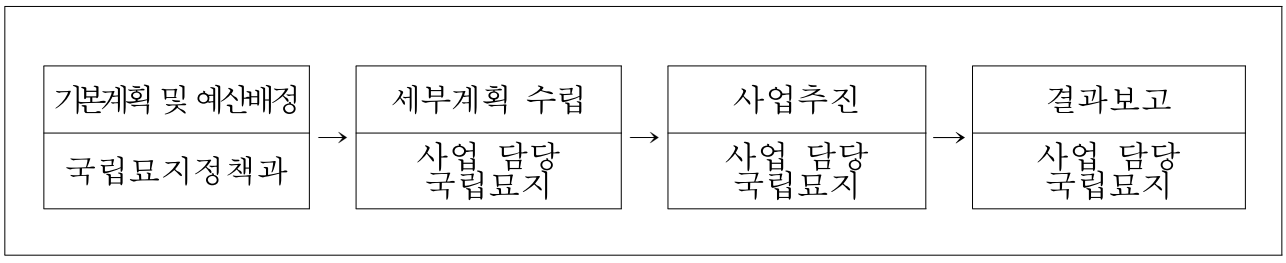

사 업 명
(50) 국립4·19묘지 (3250-3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54
명칭	국립묘지	국립묘지관리	국립4·19묘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립4·19묘지	627	921	921	2,402	577	△344	△37.4

4. 사업목적·내용

- 4·19희생영령에 대하여 최상의 추모 공간 조성(상징성)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최대의 기억과 교육의 공간 마련(역사성)
- 내방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최고의 휴식공간을 제공(문화성)
- 국립묘지운영을 위한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17조

- 국립묘지의 종류에 국립4·19민주묘지가 포함되며, 안장대상자는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 1995.4월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4·19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 국가보훈처에서 관리
- 1997.7월부터 공공부문 예산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추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5년 ~계속
- 사업규모 : 관리면적 96,837㎡, 건물5개동, 안장능력 586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및 방문객 등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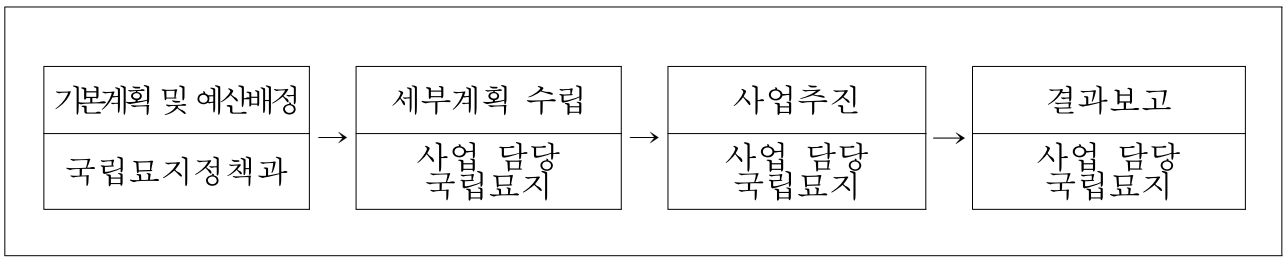

사 업 명
(51) 국립3·15묘지 (3250-35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55
명칭	국립묘지	국립묘지관리	국립3·15묘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립3.15묘지	395	395	395	404	1,199	804	203.5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02. 7. 27부터 국가보훈처에서 관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2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국립3·15민주묘지 1개소 ※ 총면적 : 128,005㎡, 안장능력 : 122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 사업 수혜자 : 3·15민주유공자 및 유족, 방문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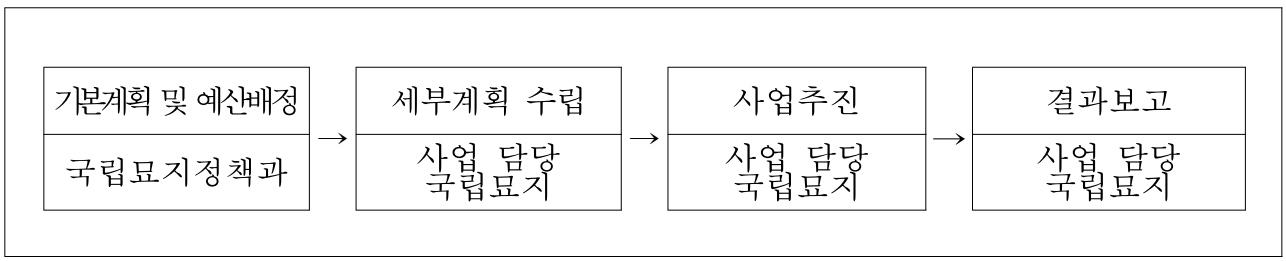

사 업 명
(52) 국립5·18묘지 (3250 - 3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56
명칭	국립묘지	국립묘지관리	국립5.18묘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립5.18묘지	2,120	1,233	1,233	4,437	1,245	12	1

4. 사업목적·내용

- 국립5·18민주묘지 위탁관리(시설환경, 조경유지관리 등)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써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
- 기본 안장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 5·18유가족에 대한 최상의 안장 서비스를 제공
- 경내 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 국립묘지를 국민 모두에게 열린 어울림의 공간으로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02. 7. 27부터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던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 국가보훈처에서 관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3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국립5·18민주묘지 1개소 ※ 총면적 : 166,734㎡, 안장능력 : 1,807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 사업 수혜자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방문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및 예산배정	→	세부계획 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국립묘지정책과		사업 담당 국립묘지		사업 담당 국립묘지		사업 담당 국립묘지

사 업 명
(53) 국립영천호국원 (3250-3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58
명칭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영천호국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립영천호국원	3,509	4,409	4,409	6,774	3,207	△1,202	△27.3

4. 사업목적·내용

- 국립영천호국원의 효율적 관리로 참전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 국립묘지의 품격에 맞는 시설환경 조성 및 관리시스템 운영 등 체계적 발전기반 구축
- 안장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 제고 및 국민 애국심 함양의 열린 공간으로 기능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7조

-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제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② 추진경위

- 2001.1.1. 영천호국용사묘지 개원, 재향군인회에서 위탁 관리
- 2006.1.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국립묘지로 승격
- 2007.1.1. 국가보훈처에서 관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관리면적 389,832㎡, 안장능력 51,805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영천호국원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및 방문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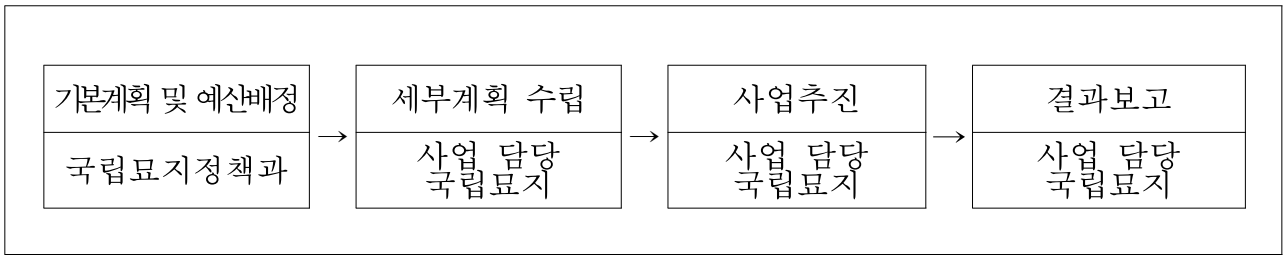

사 업 명
(54) 국립임실호국원 (3250-35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59
명칭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임실호국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립임실호국원	3,117	4,301	4,301	3,559	3,139	△1,162	△27

4. 사업목적

- 국립묘지의 품격에 맞는 시설환경 조성 및 관리시스템 운영 등 체계적 발전기반 구축
- 안장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 제고 및 국민 애국심 함양의 열린 공간으로 기능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7조

- 국립묘지의 종류에 국립호국원이 포함되며, 안장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으로 한다

-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 2002년 임실호국용사묘지 개원, 재향군인회에서 위탁관리
- 2006.1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립호국원으로 승격
- 2007.1월 국가보훈처 직접 관리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사업규모 : 관리면적 448,375.2㎡, 안장능력 35,296기, 현 안장기수 25,423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임실호국원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및 방문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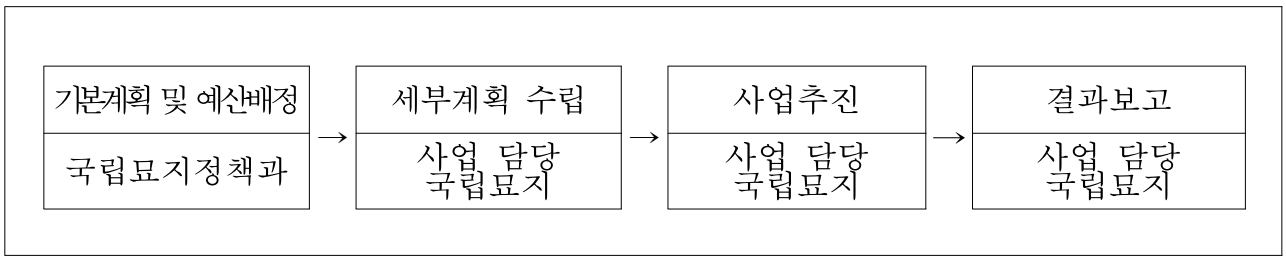

사 업 명
(55) 국립이천호국원 (3250-36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60
명칭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이천호국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립이천호국원	2,254	12,321	12,321	3,566	2,286	△10,035	△81.4

4. 사업목적

- 국립묘지의 품격에 맞는 시설환경 조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참배객 편의 도모
- 묘역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민간 전문용역업체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안장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 제고 및 국민 애국심 함양의 열린 공간으로 기능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7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8.05.01. 국립이천호국원 개원(안장능력 : 8,538기)
- ‘08.07.01. 국립이천호국원 조직 승인 후 직접 관리(공무원 10명)
- ‘12.08.31. 기준 안장시설규모 31,602기(안장21,704기, 잔여 9,898기)
- ‘13.07.31. 기준 안장시설규모 41,658기(안장26,564기, 잔여15,094기)
- ‘14.06.30. 기준 안장시설규모 50,002기(안장31,477기, 잔여18,525기)
- ‘15.06.30. 기준 안장시설규모 50,002기(안장38,623기, 잔여11,379기)
- ‘17.04.30. 만장
- ‘18년~ 국립이천호국원 확충 계획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관리면적 88,000평, 안장능력 50,002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이천호국원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및 방문객 등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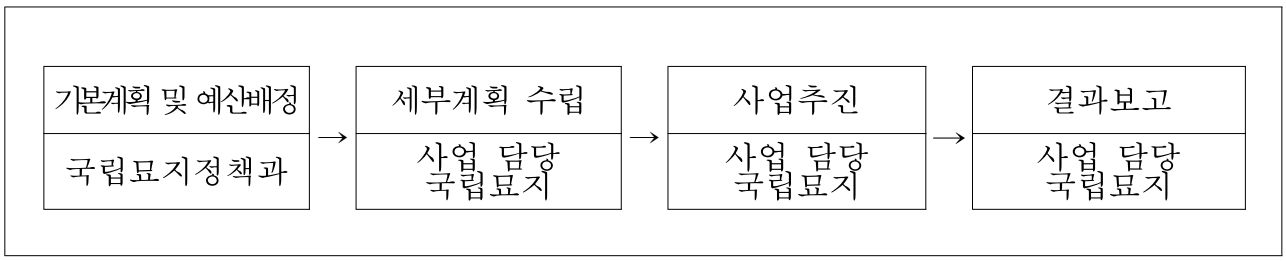

사 업 명
(56) 국립산청호국원 (3250-36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61
명칭	국립묘지	국립묘지관리	국립산청호국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국립산청호국원	2,552	2,566	2,566	2,996	2,321	△245	△9.5

4. 사업목적

-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품격 의전·안장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열린 호국공원으로 자리매김
- 시설 및 환경 개선과 묘역만장 대비 안장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에 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7조

-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제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② 추진경위

- '04. 2월 ~ '06. 3월 조성계획 수립, 부지매입, 기본설계 실시
- '07. 4월 호국원 조성사업 계획 제안서 제출
- '07. 5월 호국원 조성사업 계획 주민공람 공고 실시
- '08.12.03.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관보 고시(산림청)
- '09.05.27. 호국원 조성사업 산청군의회 의견청취 - 가결
- '09.06.29. 군계획위원회 1차 심의 - 결정유보
- '09.07.30. 군계획위원회 2차 심의 - 부결
- '09.08.06. 산청군수 군계획시설 불가결정 처분 통지
- '09.08.12. 불가결정 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경상남도)
- '09.09.2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인용 재결
- '09.11.26. 산청군관리계획 결정 및 경상남도 공보 고시
- '10.01.08.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10.11.02.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출
- '10.11.05. 주민 등 87명 이천호국원 견학
- '10.11.09.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10.11.19. 주민설명회 개최(단성면사무소)
- '10.12.24.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경상남도)
- '11.01.10.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산청군)
- '11.02.11. 주민협의회와 3차 협의(단성면사무소)
- '11.04.28 산청호국원 인가(산청군)
- '12.03.02. 시공사 선정 (주)도원이엔씨
- '12.03.21. 공사착공 ~ '14. 12. 31. 완료
- '15.04.02. 국립산청호국원 준공식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계속
- 사업규모 : 부지 561,000㎡ , 5만기 규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산청호국원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및 방문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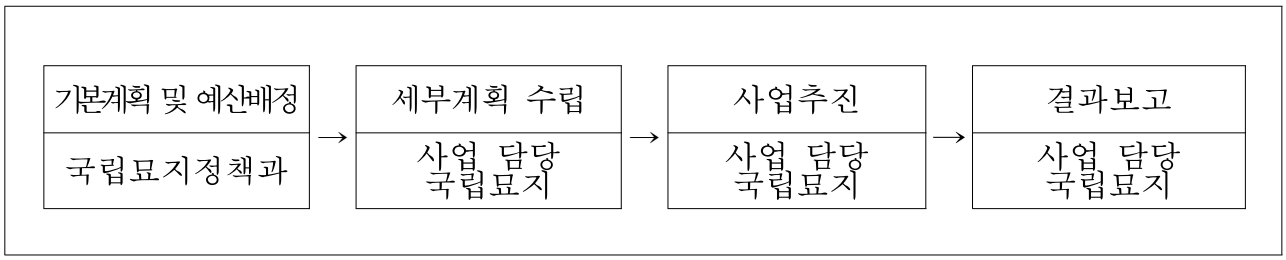

사 업 명
(57) 국립신암선열공원 (3250-3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62
명칭	국립묘지	국립묘지관리	국립신암선열공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국립신암선열공원	379	632	632	1,465	592	△40	△6.3

4. 사업목적

- 국립묘지의 품격에 맞는 시설환경 조성 및 관리시스템 운영 등 체계적 발전기반 구축
- 안장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 제고, 나아가 국립묘지를 찾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추진경위

- 1955년 : 남구 대명동 시립공동묘지 일대에 산재, 현 위치에 집단묘역 조성
- 1974년 : 경북에서 대구시로 관리권 이양
- 1977년 : 묘역정비
- 1982년 : 선열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1982. 2. 13)
- 1986년 : 신암선열공원 정비방침 및 실시설계(착공 1986. 5월)
- 1987년 : 묘역성역화사업으로 선열공원 조성(준공 1987. 3. 1)
- 2011년 : 재정비공사(조형물 설치, 단충사 정비, 공적비 설치 등)
- 2017년 : 재정비공사(잔디 교체, 휴게시설·보행로 개선 등/ 특별교부세 15억원)
- 2018년 : 국립묘지 승격(2018.5.1.),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이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사업규모 : 총 관리면적 28,970㎡, 건물(4개동, 603.67㎡), 묘역(10,023㎡), 안장 52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및 방문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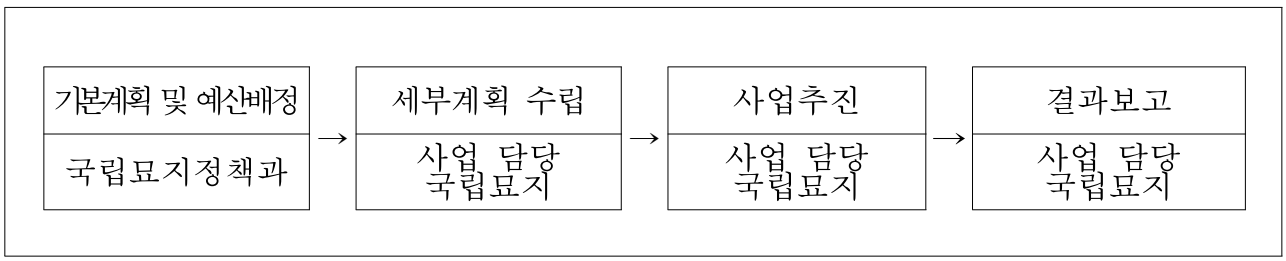

사 업 명
(58) 국립괴산호국원(3250-3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63
명칭	보훈예우및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괴산호국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국립괴산호국원	-	1,747	1,747	4,292	3,841	2,094	119.9

4. 사업목적

- 국립괴산호국원 개원('19.10월)에 따른 안장 실시 및 시설물 운영·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제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② 추진경위

- '12. 9월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국가보훈처-충청북도-괴산군)

- '12. 11월 ~ '16.11월 부지 매입 및 설계, 인·허가 완료
- '17. 4월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착공
- '19. 6월 국립괴산호국원 준공
- '19. 10월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사업규모 : 91만㎡, 2만기 규모의 안장시설 및 부대시설
  * 개원 후 연차적 확충 예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및 유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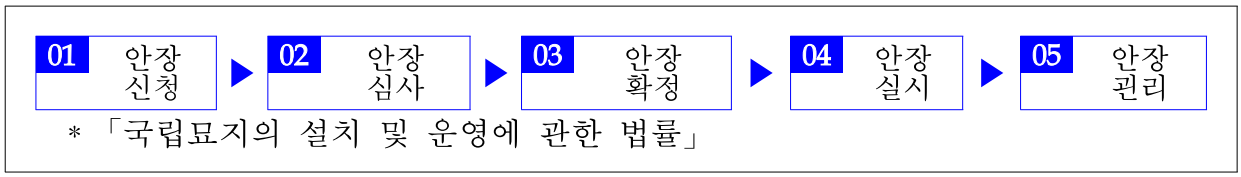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 업 명
(59) 국립묘지조성(3250-36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64
명칭	보훈예우및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국립묘지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국립묘지조성	17,444	11,728	11,728	26,986	19,162	7,434	63.4

4. 사업목적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를 조성하여 안장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② 추진경위

○ 제주국립묘지 조성

- ’07.12월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
- ’09. 3월 충혼묘지 확장 후 국립묘지 조성 요청(제주도)
- ’12. 9월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
- ’12.12월 설계 용역 등 계약
- ’13. 4월 문화재 표본조사 및 발굴(시굴) 용역계약
- ’14. 6～’16.5월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조건부 가결(‘16. 5월)
- ’16. 6～’17.7월 문화재 현상변경 가결 조건* 이행

  * 세계유산 전문가 및 문화재 관련 건축·조경 등 관계전문가 자문
- ’17. 2～4월 제주국립묘지 문화재 관련 세계유산전문가(IUCN) 자문 의뢰·회신
- ‘17. 9월 문화재현상변경 최종허가
- ’17.12월 중간설계 완료
- ‘18. 7월.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실시설계 재개(제주)
- ‘18. 10월 한국감정원 보상업무 위·수탁협약 체결(제주)
- ‘19. 1월 실시설계 완료
- ‘19. 7월 인허가 협의 완료,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 공사 입찰 공고
- ‘19. 11월 공사 착공 ※ ’19.11.28~‘21.11.16(720일) / 420억원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 ‘17. 5월 신규 국립묘지 조성 관련 의견 제출 협조(경기강원권 지자체)
- ’17. 5월 신규 국립묘지 조성 관련 의견 제출(연천, 양평)
- ’18. 5월 국립묘지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 ’18. 9월 경기강원권국립묘지 조성 유치 제안서 제출 안내(연천, 양평)
- ’18.10월 경기강원권국립묘지 조성 예비타당성 면제 요구서 제출
- ’18.10월 유치 제안서 제출(연천) 및 부지 적격성 평가 실시
- ’18.11월 경기강원권국립묘지 조성 부지 확정(연천) 및 통보
- ’19. 1월 국립연천현충원조성사업 총사업비 신규등록
- ’19. 6월 기본계획 구상 연구용역 착수
- ’19. 8월 국가보훈처-연천군간 양해각서 체결
- ’19.11월 사업부지 감정평가(토지보상) 완료 ※ 토지47필지/102억원

- ’19.12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③ 부처별 중점과제

-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④ 대통령 공약사항

- 제54회 현충일 대통령 추념식(2009.6.6.)에서 공약 : 정부는 두 곳의 호국원 마련해...

6. 주요내용

○ 제주국립묘지 조성

- 총사업비 : 51,741백만원　　* 민간대행수수료 별도: 1,422백만원
- 사업기간 : ‘12년～’21년
- 사업규모 : 27만㎡, 1만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법적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및 유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 총사업비 : 97,953백만원
- 사업기간 : ‘19년～’25년
- 사업규모 : 92만㎡,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및 유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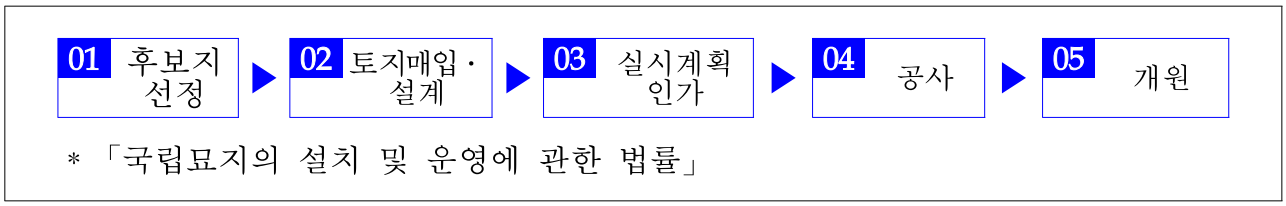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 업 명
(60) 특별주기 국립묘지 정비사업 (3250 - 36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0	366
명칭	국립묘지	국립묘지조성및관리	특별주기 국립묘지 정비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특별주기 국립묘지 정비사업	-	-	-	12,067	8,119	8,119	순증

4. 사업목적

- 2020년 6·25전쟁 70주년 등을 기념하고 노후화된 국립묘지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 강화 및 국가유공자 사후예우 품격을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9조, 제21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② 추진경위

- 국립대전현충원 : '06.01.30. 국방부 →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4·19민주묘지 : '95.04.18.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3·15민주묘지 : '02.07.22.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5·18민주묘지 : '02.07.27.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영천호국원 : '07.01.01. 재향군인회 →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임실호국원 : '07.01.01. 재향군인회 → 국가보훈처로 소속이관
- 국립이천호국원 : '08.05.01. 개원
- 국립산청호국원 : '15.04.02. 개원
- 국립신암선열공원 : '18.05.01. 개원
- 국립괴산호국원 : '19.10월 개원 예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8,119백만원
- 사업기간 : '20년(단년도)

  ※ 대전현충원 후문도로 확장('20~'22년) 사업 예외
- 사업규모 : 신규예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립묘지 참배·방문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및 예산배정	→	세부계획 수립	→	사업추진	→	결과보고
국립묘지정책과		사업 담당 국립묘지		사업 담당 국립묘지		사업 담당 국립묘지

제대군인지원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사 업 명
(61)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4160-39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0	390
명칭	제대군인지원	제대군인생활안정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14,863	15,345	15,345	22,604	15,178	△167	△1.1

4. 사업목적·내용

-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 도모
- 맞춤식 취·창업 및 직업능력교육 지원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회·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기간행물 발간 및 웹진 제작 등 홍보 강화로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제13조(직업교육훈련), 제14조(취업지원 등), 제17조(창업지원), 제18조의2(전직지원금), 제19조(교육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 : 2004년

  * 2016년부터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사업(1982년~)을 통합 운영

- 추진배경 :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마련

- 중점과제 : '07년 국가보훈처 5대 전략 추진과제에 포함('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3. 9.25. :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범국가적 시스템으로 접근

  · '04. 2. 3. : 정보과학군·기술군으로 군 구조 개편에 대비 제대군인 대책 강구

  · '05.11.29. : 범정부적 사회적응, 취업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

  · '08. 2.25. :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국정과제 Ⅴ-2-6)

  · '08. 3.29. : 군 제대예정자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방안을 검토

  · '13. 4. 1. : 각 부처가 협조하여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눈높이에 맞는 취업교육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

  · '13. 5.28. : 명예로운 보훈(국정과제 122번) : 제대군인 지원 조직을 확대하여 제대군인의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강화 '17년까지 일자리 5만 개 확보

  · '14. 2. 6 : 제대군인 일자리는 전형적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로, 관계부처와 보훈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공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할 것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

  *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사업은 1982년부터 계속사업

- 사업규모 : 15,178백만원

  · 제대군인지원센터(8개소) 운영 : 6,625백만원

  · 전직지원금 지급 : 3,314백만원

  - 장기복무자: 935백만원 / 중기복무자 : 2,379백만원

  ·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 3,093백만원

-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취업역량교육비 통합운영(2,062명 × 150만원)

· 제대군인 대학·전문기관 위탁교육 : 775백만원

· 사이버교육 : 554백만원

· 안내책자 발간 및 업무협의 등 : 44백만원

· 제대군인 지원정책 개발 및 홍보 등 : 467백만원

·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 286백만원

·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 2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사업,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 * 자녀는 수업료 보조만 해당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	9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재학중인 대학의 장	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재학중인 고등학교의 장	10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대한법률구조공단	10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수행주체	수행절차	비 고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국가보훈처	등록(제군센터, 보훈관서) →구직카드작성 및 상담(제군센터) →목표설정(제군센터) → 취·창업지원(제군센터) → 사후관리(제군센터)	상용임금 등
전직지원금 지급	국가보훈처	접수(제군센터, 보훈관서) →결정(제군센터) →지급(제군센터)	기타보전금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역량비,바우처 통합)	국가보훈처	접수(제군센터) →결정(제군센터) →지급(제군센터)	기타보전금

사업명	수행주체	수행절차	비 고
대학·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위탁운영 → 보조금지급(처본부 및 센터) → 사후정산	민간경상보조
사이버교육	위탁용역업체	민간위탁 (조달청등 경쟁 입찰)	일반용역비
제대군인 지원정책 개발 및 홍보 등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誌 및 웹진 제작 및 발간(조달계약)→용역비지급(처본부) 제대군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처본부, 지방청, 제군센터)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국가보훈처	신청 → 증명서발급(보훈관서) → 국고보조신청(학교장) → 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처)	민간경상보조
무료법률구조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자격요건 등 확인(제군센터, 보훈관서) → 결정·지급(국가보훈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경상보조

사 업 명
(62)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4161-39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국제협력관	-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1	395
명칭	제대군인지원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국제보훈교류협력	5,339	5,698	5,698	10,160	6,006	308	5.4

4. 사업목적·내용

-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준 UN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와 보은
- 참전국 정부와 참전용사로부터 최고의 찬사와 감동연출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
- 참전국 정부와의 지속적 교류협력으로 국익창출과 유사시 국제사회 지지와 성원확보
- 참전인연의 끈을 참전용사 후손에게까지 확대하여 미래 협력네트워크와 지지기반 구축
- 창군참전원로 가운데 군인연금 미수령 생계곤란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8조(국제 교류·협력의 강화)** 국가는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보훈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및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 교류·협력의 추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유엔UN군 참전의 날)** 국가는 유엔(UN)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기려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UN)군 참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한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 (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UN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 '75년 최초 실시, '80년부터 재향군인회 단독사업으로 전환
  - '93년부터 국가보훈처로 재향군인회 업무 이관, 우리처 관리
· '95년 이후 한국전 참전 행사에 국내 참전유공자 및 정부대표단 파견
· '01년부터 창군원로 12명에게 명예수당 지급

· ‘03년 6.25 50주년 기념사업으로 UN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최초 초청
· ‘09년 참전용사 후손(120명)을 초청, 청소년 평화캠프 행사 개최
· ‘11년부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으로 참전기록 수집·기록 유지
· ‘13년부터 UN참전국 저소득 참전용사 후손에게 학습장려금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국내 초청(700여명), 현지행사지원(15,0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호국문화진흥위원회 등
- 사업 수혜자 : UN참전용사, 유가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액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호국문화진흥위원회 한국전쟁기념재단	정액	-

7. 사업 집행절차

○ 재방한사업
- 사업계획 수립→조달입찰 및 대행사 선정→초청자 선발→초청사업 실시

○ 유엔평화캠프 등
- 사업계획 수립→조달입찰 및 대행사 선정→초청자 선발→초청사업 실시

○ 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
- 각 공관별 사업계획 수립·시달→공관별 사업계획 접수·검토→승인→공관별 지원 →위로감사 행사 →행사결과 보고 및 정산

사 업 명
(63) 6·25전쟁 70주년 사업 (4161-4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1	416
명칭	제대군인지원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6·25전쟁 70주년 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6·25전쟁 70주년 사업	-	400	400	20,079	14,500	14,100	3,525.0

4. 사업목적

-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기억하고 그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 통합과 한반도 평화정착 및 발전기반 구축에 기여
- 6·25전쟁 70주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국제사회의 참여를 위한 사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

② 추진경위

- ‘10. 6.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국가보훈처 주관)
- ‘17. 4. 국가를 위한 헌신, 국민이 보답(대통령 공약)
- ‘18. 5. 6·25전쟁 70주년 사업 범정부추진단 구성 협의(국무조정실)
- ‘19. 4. 6·25전쟁 70주년 TF 구성·운영
- ‘19. 7.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 국정과제 11번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11-4, 평화의 한반도 구현)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1. ~ 2021.6.
- 사업규모 :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및 21개 사업, 14,500백만원(‘20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사업별 추진	→	사업결과 보고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사 업 명
(64) 참전기념행사 (4161-4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1	420
명칭	제대군인지원	참전・제대군인명예선양	참전기념행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참전기념행사	2,303	2,417	2,417	3,639	2,417	-	-

4. 사업목적

- (정부주관 참전기념행사)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고, 국가수호 희생자 추모와 범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기념행사를 추진
- (6・25전쟁 지방행사) 각 지역별로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행사로 거행
- (6・25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6・25참전유공자의 희생을 일상생활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명비를 건립하여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 및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애국심 함양
- (6・25전쟁영웅 선정・홍보)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 낸 전쟁영웅들의 공훈과 뜻을 알리기 위한 발굴・홍보 사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각종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부처	행사내용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처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31	6·25전쟁일	6.25	국가보훈처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유엔(UN)군 참전의 날)

국가는 유엔(UN)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기려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UN)군 참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한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 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기념일·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3월 넷째 금요일)

- '16. 3.2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부기념일로 제정
  *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각각 거행하여 왔던 서해수호 관련 정부행사를 하나로 통합(개별 정부행사는 5회 거행 후 각 군으로 이관)
- '16. 3.25.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기념식 최초 거행

○ **6·25 행사**(6. 25.)

- '53. 7.27 정전 이후 국방부 주관 행사로 거행
- '73. 3.30 정부기념일 제정(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주관부처 변경
  * '84년까지(국방부), '85~'89(문화공보부), '90~'94(공보처), '94~(국가보훈처), '09년까지는 재향군인회 등 민간에서 주관
- '10. 6.25 6·25전쟁 60주년 행사부터 국가보훈처 주관 **정부행사 실시**
  * 관련 행사로 6·25중앙 및 지방행사, 참전유공자 위로연 거행

○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7. 27.)

- '13. 5.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원발의
- '13. 7.2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13. 7.27.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계기 참전국 등 23개국 정부대표단을 초청하여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국제적인 기념행사 개최

○ **해외파병용사 위로 격려**

- '14. 5.29. 월남전 참전 50주년 계기 해외파병용사의 날 지정 관련「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 '16. 5.2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17년 11월 해외파병용사 위로연 거행

○ **6·25참전유공자 선양**

- 6·25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선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별·학교별 명비건립 사업을 추진('16년부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정부 주관 참전기념행사 및 위로행사, 각 지역별 6·25전쟁 지방행사, 6·25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및 6·25전쟁영웅 선정홍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전사자유족 및 부상자, 참전유공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주관 참전기념행사

기본계획 수립	→	각 부처 의견 조회	→	국무(차관) 회의보고	→	세부계획수립, 행사추진	→	행사결과 보고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 6·25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관서 예산배정	→	세부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사업결과 보고
국가보훈처		지방 보훈관서		지방 보훈관서 (지자체, 학교 등)		지방 보훈관서

보훈행정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사 업 명
(65) 청사유지보수 (7166-42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6	426
명칭	보훈행정	청관사임차및시설개선	청사유지보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청사유지보수	952	1,027	1,027	1,638	1,042	15	1.5

4. 사업목적

- 각종 시설물 관련 법적 의무규정 등 준수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규정(LED조명기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내진보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시설)
- 노후 청・관사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로 민원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17.1.2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② 추진경위

- 에너지 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 설치 및 연도별 LED 보급률 목표 준수
  * '20년까지 LED 보급률 100%(20년까지 20,775개 교체 예정)
-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 추진
- 청·관사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 발생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2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99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보훈공무원, 청사 내방객(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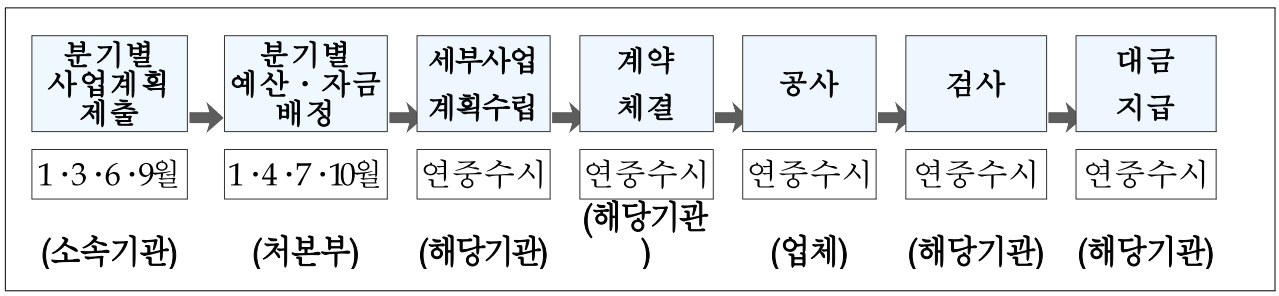

사 업 명
(66) 사무및민원환경개선 (7166-42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6	427
명칭	보훈행정	청관사임차및시설개선	사무및민원환경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사무및민원환경개선	585	746	746	591	501	△245	△32.8

4. 사업목적

- 노후 사무민원집기 교체를 통한 사무능률 제고 및 민원편의 제공
  * 2007년 이전 구입한 책상 등 내용연한이 경과한 노후 사무집기류 교체
- 37개 소속기관 방문 보훈가족들에게 공기청정기 렌탈을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4조(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 진단)

② 추진경위

- 사무능률 제고를 위한 노후 사무집기류 교체
- 중상이 국가유공자 및 고령 유족 등의 편의제공을 위한 노후 민원집기류 교체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501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보훈공무원, 청사 내방객(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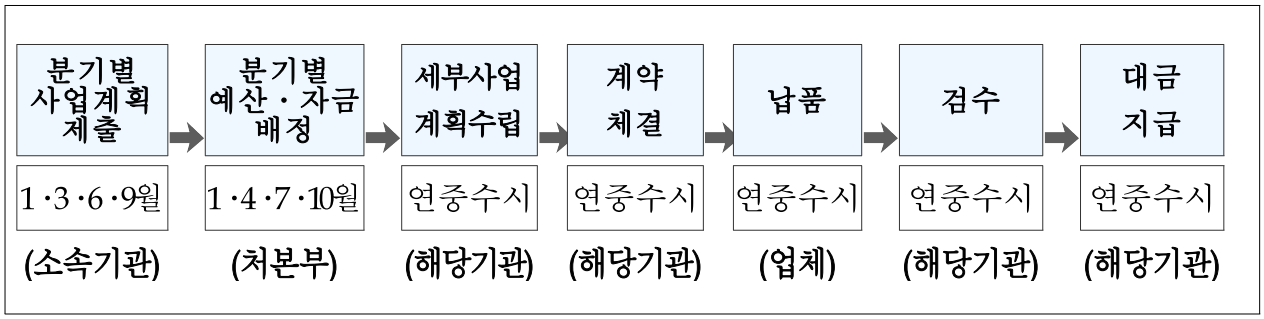

사 업 명
(67) 관사임차 (7166-42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6	428
명칭	보훈행정	청관사임차및시설개선	관사임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관사임차	885	894	894	913	700	△194	△21.7

4. 사업목적

- 37개 소속기관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인사이동에 따른 비연고지 근무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비연고지 근무자의 주거안정 도모

  * 장기간 연고지 근무에 따른 조직 침체 방지를 위해 「소속 공무원 전보지침('12.8.21.)」을 마련, 지방 소속기관 5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2~3년 단위 순환전보 및 본부 근무자 승진 후 지방기관 근무를 의무화

- 임차보증금 인상액 지원을 통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 직원용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보훈기금 복지시설 임차료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및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 관련 규정 발췌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총괄한다.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①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추진경위

- '96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99년부터 17개 지방기관 관사임차 예산(관사 임차료) 편성
- 소속기관이 전국에 산재(37개 기관), 정기적인 인사이동에 따른 비연고지 근무자 발생
- 자녀교육, 주택 임차비 부담 등에 따른 비연고지 기관 단신 근무자 및 장거리 통근자의 경제적 부담 및 신체적·정신적 애로 경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7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보훈공무원, 청사 내방객(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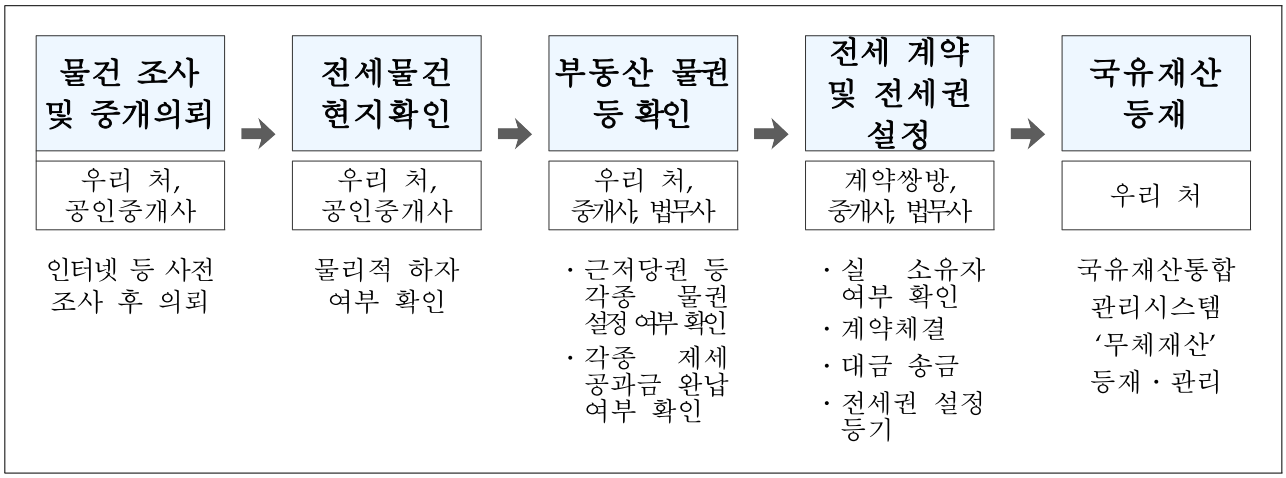
물건 조사 및 중개의뢰
우리 처, 공인중개사
인터넷 등 사전 조사 후 의뢰
전세물건 현지확인
우리 처, 공인중개사
물리적 하자 여부 확인
부동산 물권 등 확인
우리 처, 중개사, 법무사
· 근저당권 등 각종 물권 설정 여부 확인
· 각종 제세 공과금 완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 및 전세권 설정
계약쌍방, 중개사, 법무사
· 실 소유자 여부 확인
· 계약체결
· 대금 송금
· 전세권 설정 등기
국유재산 등재
우리 처
국유재산통합 관리시스템 '무체재산' 등재·관리

사 업 명
(68) 공공복합청사임차 (7166-42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6	429
명칭	보훈행정	청관사임차및시설개선	공공복합청사임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공공복합청사임차	792	767	767	776	776	9	1.2

4. 사업목적

-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 관리효율성 및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건립한 공공복합청사(나라키움대전센터)에 입주한 대전지방보훈청의 관리비 및 임차료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4226(2005.12.5) 국유지개발 사업계획 승인

② 추진경위

- 대전지방보훈청은 신축 후 30여년('77년 건축) 이상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화, 사무공간 절대부족으로 청사 신축(이전)이 필요
- 2009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 위탁개발방식(수탁자: 한국자산관리공사)으로 건립한 공공복합청사(나라키움 대전센터) 입주
- '17년 경기동부지청(정원 29명) 및 충남동부지청(정원 17명)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39년(유한계속사업)
- 사업규모 : 77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보훈공무원, 청사 내방객(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대전지방보훈청의 관리비 및 임차료 지원

사 업 명
(69) 청사임차(7166-43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6	430
명칭	보훈행정	청관사임차및시설개선	청사임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청사임차	895	976	976	1,136	976	-	-

4. 사업목적

- 임차청사 사용중인 경기동부 및 충남동부보훈지청의 '20년도 관리비와 임차료 지원
- 직제개정으로 신설된 본부 부서 전면 재배치를 위한 보훈심사위원회 외부 임차청사 이전에 따른 관리비와 임차료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 없음

② 추진경위

- '17. 2. 28. 직제 개정
- '17. 3. 6. 개청(임차청사)
  - · 경기동부보훈지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마북동)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용인 사옥 1층 임차
  - · 충남동부보훈지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원성동)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사옥 1·3층 임차
- '17. 10. 보훈심사위원회 임차청사 이전(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3,4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부터~'21년
- 사업규모 : 97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보훈공무원, 청사 내방객(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외부 임차청사 관리비와 임차료 지원

사 업 명
(70) 송무지원 (7167-32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7	329
명칭	보훈행정	일반행정	송무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송무지원	491	526	526	579	491	△35	△6.7

4. 사업목적

-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권익구제에 대한 관심증가 등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소송 대응 지원 강화를 통해 보훈행정의 신뢰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소송의 수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행정소송의 수행)
-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2779호)
- 변호사보수규정(법무부 훈령 제1171호)

② 추진경위

- '98. 3. 1. 행정소송법 개정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원칙적 폐지와 행정법원 설치로 소송제기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행정소송 급증
  * 소송건수: '95년(54건) → '99년(282건), '09년(2,351건) → '14년(2,447건)
- '02. 4. 고문변호사(4명)를 위촉하여 법률해석·소송관련 자문 등 소송전문성 강화
- '03. 5. 15. 서울지방보훈청 송무팀을 신설하여 소속기관 항소심 전담 등 소송수행 전문성 제고 및 소송대응력 강화
- '05. 12. 송무DB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훈관련 판례 등록,
- '07. 7. 의학자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공무관련성과 상이등급 판정 소송에 대한 전문성 및 대외적 신뢰성 제고
- '08. 송무혁신연구회(학습동아리) 개설로 송무관련 자료 및 송무 수행 노하우 공유
- '13. 5. 변호사(기간제)를 채용하여 소송수행 지원 및 전문성 강화
- '14. 4. 공익법무관 확대(1명→6명)로 소송수행 지원 강화
- '15.9. 직제 개정으로 지청 송무업무의 지방청 이관으로 소송수행의 집중도 및 전문성 강화
- '16.4. 변호사(임기제)를 채용하여 소송수행 지원 및 전문성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연간 3,071건 수행('18년말 기준 행정소송 1,369건, 행정심판 1,695건, 헌법소원 7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본부, 지방보훈청 및 지청, 현충원 등)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소송수행 단계

1. 소장 접수	▷ 소송사건 처리부 접수, 소송수행자 지정 (소장 부본 3일 이내 보고)
2. 답변서 작성	▷ 근거법령, 입증자료, 유사 판례 수집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3. 변론 참석	▷ 쟁점정리,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진술 ▷ 증인신문, 신체감정, 사실조회 등
4. 판결 선고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소 제기 ▷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법령]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소송업무 취급지침
②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③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송달료규칙

나. 소송비용 지급

1. 판결문 접수 (피고청)	▷ 패소비용 관련 판결문 접수 ▷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소송비용 배정 요청
2. 패소비용 배정 (국가보훈처)	▷ 패소비용과 예산액을 비교하여 배정의뢰 ▷ 지방청에 패소비용 예산 배정
3. 패소비용 지급 (피고청)	▷ 피고청에서 원고에게 패소비용 지급 통지 ▷ 예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계좌입금 지급 처리

[관련 법령]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13조
② 행정소송법 32조
③ 민사소송법 제98조

사 업 명
(71)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7167-4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7	421
명칭	보훈행정	일반행정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행정효율성증진및 능력개발	359	359	359	448	359	-	-

4. 사업목적

- 불합리한 행정절차 및 제도 개선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대국민 만족도 개선
- 직원 창의역량 개발을 통한 업무개선 촉진 및 핵심향상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계획 수립> 보훈행정서비스효율성 증진 및 창의역량개발교육 계획 수립(연초)
<중간 점검 및 운영> 진행상황 수시·정기 점검 및 교육 운영(연중)
<결과 보고 및 환류> 결과 보고 및 차년도 반영(연말)

사 업 명
(72) 보훈정책개발 (7167-42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7	425
명칭	보훈행정	일반행정	보훈정책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보훈정책개발	681	617	617	667	587	△30	△4.9

4. 사업목적·내용

- 범국가적 호국보훈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 중장기적 정책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보훈정책 연구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5조 (조사·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16조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29조 (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 등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1년부터 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보훈정책 간담회 실시
- '04년부터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보훈의식지수를 조사하고,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연구 용역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보훈정책개발연구 '04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외부 연구 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보훈가족 및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정책 연구 용역

- 정책연구과제 선정(심의)→예산 반영→연구자 선정(심의)→계약체결→연구진행 상황 점검(심의)→연구 결과(심의)→결과 활용 점검

사 업 명
(73)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7167-43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7	431
명칭	보훈행정	일반행정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306	326	326	490	396	70	21.5

4. 사업목적

- 병역법 개정('09.6.9)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됨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0년
- 추진배경
  - 2008년부터 2009년 까지 : 사회서비스분야(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력경비를 병무청에서 부담
  - 2010년부터 병역법 제31조5항에 의거 해당부처에서 인력경비 부담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0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39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가보훈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등 지원

사 업 명
(74) 보훈정책홍보 (7167-43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대변인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7	433
명칭	보훈행정	일반행정	보훈정책홍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보훈정책홍보	482	718	718	785	718	-	-

4. 사업목적 · 내용

- 보훈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고,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훈정책 홍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국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동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추진경위

- '05년 정책홍보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보훈정책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사업 추진
- '13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단위사업으로 독립,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집중 홍보
- '17년 보훈정책 홍보강화를 위해 대변인을 국장급 직위로 승격하고 대변인실 기능 확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보훈대상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홍보계획 수립 → 매체선정 → 홍보의뢰 → 홍보문안·도안 제작 → 홍보물 게재 → 홍보비 지급

사 업 명
(75) 이동보훈팀 운영 (7168-42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8	422
명칭	보훈행정	일반행정	이동보훈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이동보훈팀 운영	1,559	1,854	1,854	1,899	1,762	△92	△5

4. 사업목적

- (보비스요원임금) 이동보훈팀 운영을 위한 차량 운전원 임금
- (운영경비) 차량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경비
- (여비) 이동보훈팀 차량 운전원 및 담당공무원의 여비
- (자산취득비) 이동보훈팀 운영에 필수적인 노후화된 사무·정보화기기 구입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3항

② 추진경위

- 서울 등 5개 지방청 5개팀 시범 운영('04.5.~'05.2.)
- 전국 25개 기관 확대 운영 : 25개팀('05.3.) ⇒ 35개팀('06.2.)
  ※ '06.7.1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제주보훈지청 1개팀 포함
-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이동보훈팀과 노후복지서비스 통합 운영('07.1.)
- 이동보훈복지서비스 브랜드 BOVIS 발족 및 정부 10대 브랜드로 선정('07.8.)
- 섬기는 정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최일선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중요성 강조('08.3.29.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시)
- 전국 27개 기관 확대 운영(경기동부, 충남동부 신설) : 37개팀('17.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전국 지방보훈관서
- 사업 수혜자 : 보훈관서에서 원거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이동보훈팀 운영지역 : 전국 128개 지역

○ 이동보훈팀 운영장비
- 이동용 장비 : 이동 공용차량,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 업무용 장비 : 노트북(무선모뎀 및 VPN 장착), 복합기(프린트 등), 휴대전화기
- 홍보용 장비 : 카메라 등

○ 이동보훈팀 업무
- 지방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 현장민원 접수·상담 및 증명발급
- 노후복지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예우사업 추진
- 지역단위 국가보훈시책 홍보

○ 이동보훈팀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		집행실적 점검		사업평가·관리 및 결산
처본부	↔	보훈(지)청	→	처본부	→	처본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12.12.26. 훈령 제1014호)		이동보훈팀 운영 만족도 조사		소속기관 평가

사 업 명
(76) 보훈상담센터운영 (7168-42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8	423
명칭	보훈행정	보훈서비스지원	보훈상담센터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보훈상담센터운영	189	245	245	232	232	△13	△5.3

4. 사업목적·내용

- 권익위 「110콜센터」와 통합, 전국 대표전화(1577-0606)로 전화민원 상담 창구를 일원화·전문화하여 One-Call, One-Stop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 보훈처 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과정을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훈행정 신뢰도 및 민원만족도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2항제6호(대통령령 제29998호)

제8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5.4>
6.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 및 자료 관리

② 추진경위
- 참여정부 행정개혁로드맵 세부과제(정부혁신위 역점과제-6)로 추진
-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시('04. 4.14.) 보훈민원콜센터 설치
- 2004. 1.26. 보훈상담센터 설치 준비팀 구성
- 2004.10. 4. 전화민원 상담 실시
- 2006. 1.31. 보훈상담센터 정식 직제 반영(13명, 민원실 포함)
- 2006. 5. 1. 인터넷 상담 실시
- 2008. 3.11. 처 직제개정에 따른 감사담당관실의 "계"기능으로 흡수, 정원축소
- 2008. 7. 7. 인터넷 민원 사업국 소관 부서 처리
- 2009.12. 8. 국민권익위원회와 통합보훈상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0. 7. 1.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와 통합 전화상담 서비스 실시
- 2012. 8. 1.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보훈상담센터로 업무이관 처리
- 2015. 6. 1.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대표번호 외 110번 추가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7. 3. 3.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각 사업부서로 업무이관 처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244	438	249	275	245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보훈관련 상담 민원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화민원 상담(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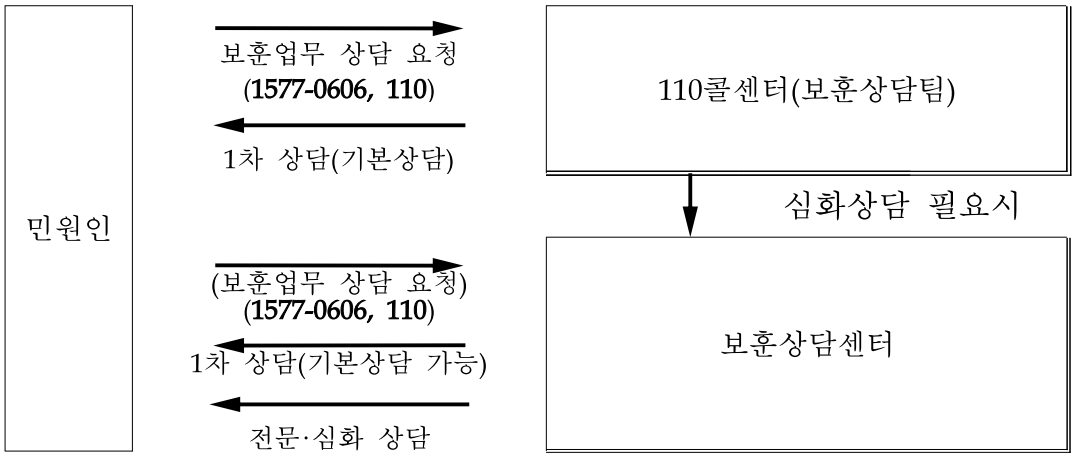

○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등 안내(인터넷보훈민원시스템)**

처장과의 대화	민원인 → 접수사항 안내 → 사업부서 전달 → 발송안내
UMS	- 보훈처 접수민원 안내 민원인 → 민원 접수 및 처리과정 단계별 안내 - 보훈제도 홍보, 계기행사, 특별이슈사항 안내 담당자 → 개별 · 단체 안내
FAQ	자주묻는 질문에 답변 및 자료 현행화 관리(사업부서 연계)

사 업 명
(77) 나라사랑신문발간 (7168-42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대변인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8	424
명칭	보훈행정	보훈서비스지원	나라사랑신문발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나라사랑신문발간	1,929	2,075	2,075	2,156	1,929	△146	△7.0

4. 사업목적 · 내용

- 국가유공자의 정책체감도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정보를 담은 신문을 매월 1회 발행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우편배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63.9. : 원호신문운영위원회을 발족하고 “원호신문” 창간
- ’04.11. : ’나라사랑신문‘으로 신문명 변경
- ’11.8. : 6・25참전유공자 (186천여 명)까지 발송대상 확대, 51만부 발행
- ’12.1. : 월남참전유공자 (138천여 명)까지 발송대상 확대, 65만부 발행
- ’13.9. : 단독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시작
- ’14.1. :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시작
- ’15.7. : 보조금사업에서 민간용역사업으로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3년 ~ 계속
- 사업규모 : 매월 58만부 발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월간 발간계획 수립 → 세부내용 협의 (기사내용, 지면할당 등) → 신문발간 (월1회) → 우편발송 → 반송자 정리 등 발송대상 갱신

사 업 명
(78) 정보화사업 (7169-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69	501
명칭	보훈행정	정보화	정보화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정보화사업	4,627	2,627	2,627	5,113	4,137	1,510	57.5

4. 사업목적

- (정보화기기 및 사무용 S/W) 노후 정보화기기의 교체 및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대비 PC 구매 실시로 업무 능률 향상 및 신속성 확보
- (공무원 정보화 위탁교육) 보훈공무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통한 업무 생산성 증진 및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정보시스템 등 보유장비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로 최적의 서비스 제공
- (정보보호/보안시스템 도입)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불법 접속 및 해킹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의 안전한 보호 및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국가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 처 전체를 대상으로 한 Control Tower 역할, 4차 산업혁명의 준비를 포함한 Trend 및 신기술의 조사·분석, 중·장기 Master Plan 수립 등 정보화 기획 추진
- (윈도우10 구매 및 설치) MS사의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2020.1.14. 예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윈도우10으로 교체 추진
- (소속기관 홈페이지 G-클라우드 전환) '05년 도입된 HW의 노후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애와 운영 소프트웨어 지원 중단으로 보안 및 해킹에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효율의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환경 구현을 위해 G-클라우드로 전환 및 기능개선(검색엔진 및 모바일뷰어 개발) 추진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행정정보 연계서버 AP 개발) '04~'09년 도입된 연계 서버의 노후화로 장비 및 서버 교를 계기로 AP개발과 표준화를 통해 행정정보연계 서비스 품질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 등 공무원 등의 책무),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제70조(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물품의 내용 연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법률 제10471호, '11.6.30)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법률 제11731호, ‘13.4.5)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01호)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7조(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운영), 제58조(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운영)
- 「국가정보보안지침」 제12조(정보보안 실태관리 평가), 제13조(정보보안 감사), 제33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제34조(인터넷PC 보안관리), 제40조(업무망 보안관리), 제41조(네트워크 장비 보안관리)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보안직무)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사이버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등)
- 「공무원교육훈련비 지급기준」 제3조(중안인사위원회 예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7년 국가보훈처 웹 사이트 구축 이후 연차적으로 25개 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7개소의 웹 사이트 통합·개편 추진
- ‘01.6월부터 공무원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한 정보화교육 시작
- ‘01.11월 보훈사업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 1차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ISP): ‘02～’05년(완료)
  · 2차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ISP): ‘07～’12년(완료)
  · 3차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ISP): ‘14～’18년(완료)
- ‘02년부터 전자정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보화기기 보급
- ‘02～’03년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
- ‘03～’06년 e-나라 시스템 서버 등 11개 정보시스템 구축
- ‘06년 S/W식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07～’09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계획에 따라 EA체계 구축 3단계 사업 추진
- ‘08년 국립묘지안장·신원확인시스템 구축
- ‘08년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08～’12년)」 6대 Agenda, 18개 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신규 보안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 및 정보보안 강화 추진
- ‘08～’11년 국가정보원 주관 중앙행정기관 보안실태 평가 결과, 취약분야로 분석된 항목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통보(‘09.1.16/ ’09.12.24/ ‘11.1.3.)
- ‘09.12월 행안부 제공 e-나라시스템의 폐지로 ’10년 보훈나라시스템 구축
- ‘10년부터 순차적(전국 권역별) 망 분리 사업 추진

- ‘10~’12년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등 처리를 위해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개선, e-통계 시스템 개편(‘11년, ’13년) 등 추진
- ‘13년 ’보상금 지급을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에게 한정토록 하며, 연장자인 손자녀를 우선토록 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헌법 불합치 결정‘(2011헌마724 ‘13.10.24)
- ‘14년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주민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부적정수급자 관리 등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생활조정수당 등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15년 보상대상 유족이 없거나 등록 전 사망한 6·25전쟁 등의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입법화에 따라 후속조치, ‘15.8.1. 새 우편번호(기초구역번호) 시행에 따른 시스템 변경
- ‘16년 정보보안 컨설팅을 추진하여 처의 정보보안 수준 제고와 정보보안 의식의 내재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정보보안 현황 및 수준 진단, 각 분야별 취약점 점검·분석, 정보보안 중·장기 계획 수립)
- ‘17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처 전체 통합적인 기간계 시스템으로의 전면 개편으로 업무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유관 시스템의 통합,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등을 시행하여 보훈업무 서비스를 고도화
- ‘16~’17년 국가정보원 주관 중앙행정기관 보안실태 평가 결과에 대하여 미흡 분야로 분석된 항목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수행
- ‘17년 정보보호/보안시스템 도입과 인터넷망·업무망의 분리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PC 등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중요 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다양한 침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 강화
- ‘18년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착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41.37억(‘20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민, 보훈대상자, 공무원

7. 사업 집행절차

- 절차도(사업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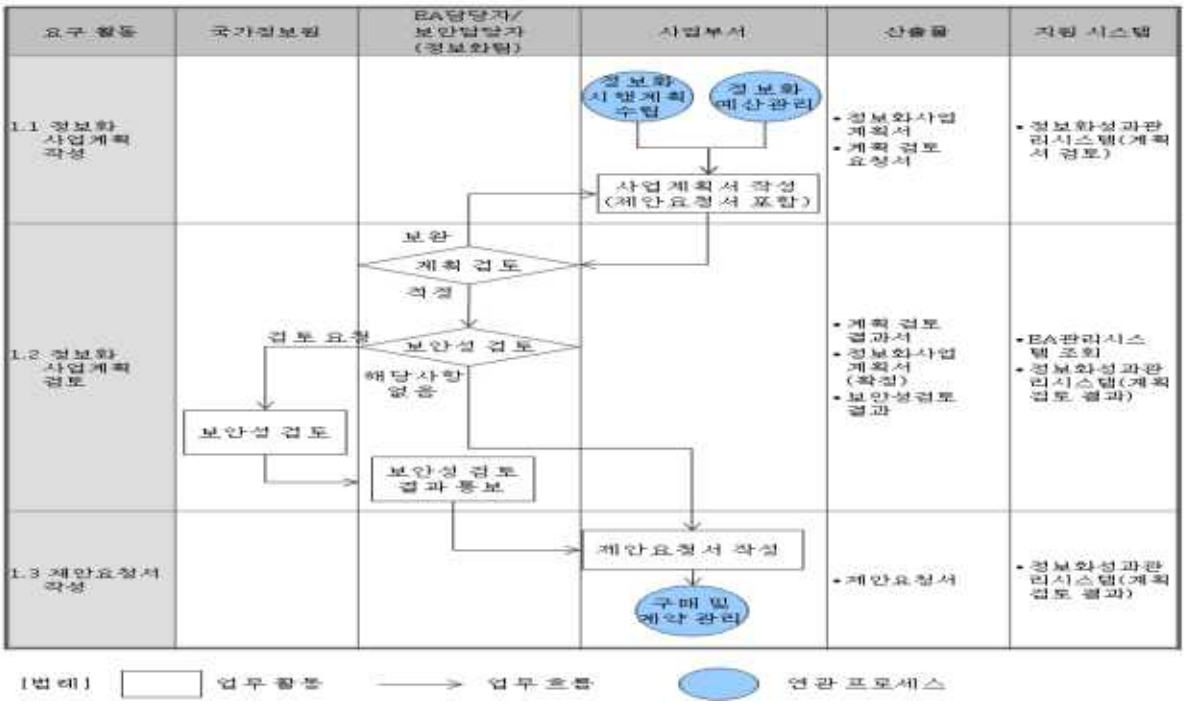

- 절차도(구매 및 계약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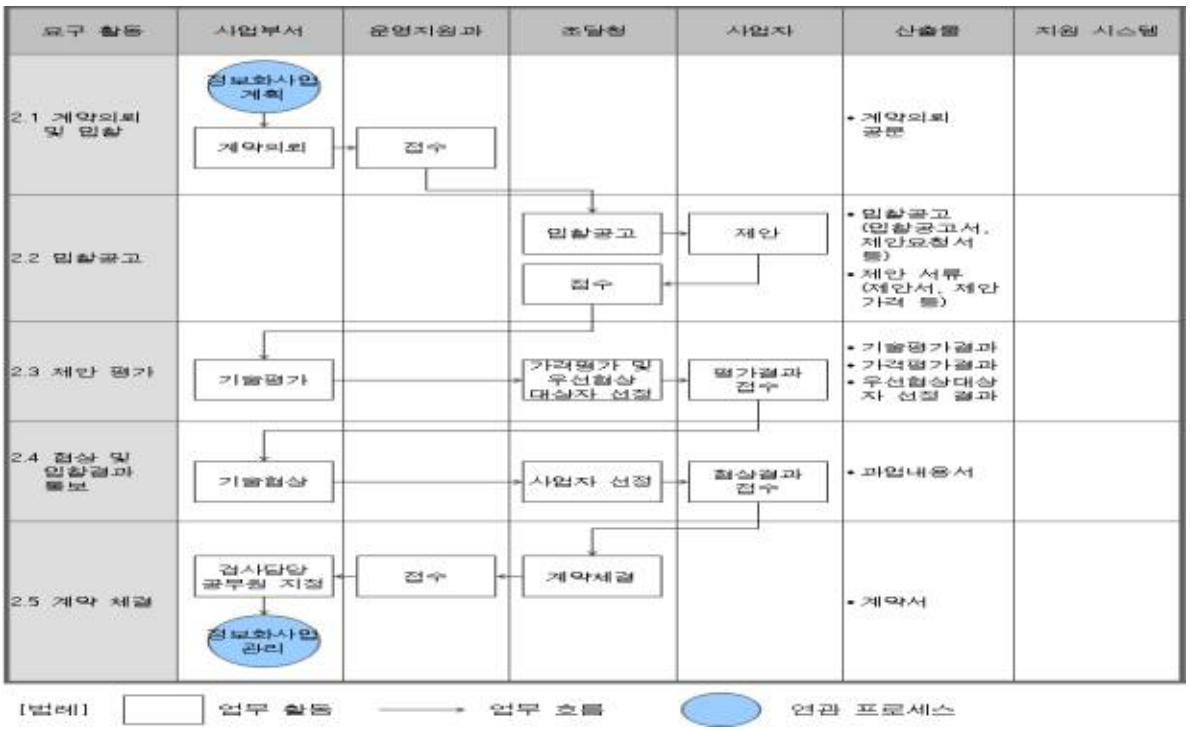

- 국가보훈처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정보화업무 활용가이드, 정보화업무처리지침 관련 규정에 의함
- 그 외 전자정부사업관리방안, 정부 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참고하여 진행

회계기금간거래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사 업 명
(7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전출 (8410-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10	880
명칭	회계기금간 거래	회계기금간 전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전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전출	54,686	76,203	76,203	84,271	76,689	486	0.6

4. 사업목적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애국심을 고취하고 독립정신 계승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항 제5호 :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기금의 수입・지출) 제1항 :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 1993년 11월 제165회 정기국회예산안 심사시 소관상임위에서 100억원을 기금에 출연하여 생존애국지사에 대해 최소한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하도록 지적
- 1995년부터 1996년에 걸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입금 45억원으로 생존 애국지사에게 특별예우금을 지급
- 이후, 특별예우금의 현실화 요구로 예우금이 점차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매년 세출전입금으로 충당

○ 손자녀 가계지원비

-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2005년 이후 보상금 수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계비 지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14년4월)으로 2015년 1월부터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가계지원비 지급인원 감소

○ (손)자녀 생활지원금

- 2018년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76,689백만원('20년)
- 사업시행방법 : 기금전출(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생존 애국지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가족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회계 ⇨ 기금전출(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II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세 입

기타재산수입
54-54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재산수입	24	28	28	28	28	-	-

1. 법적 근거

○ 보철용차량 지원지침 제5조(지원방법) ②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복지카드로 충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카드종류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LPG 충전소에 세금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세금인상 전 LPG 대금(본인부담금)은 사용자에게, 세금인상분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한다.
2. 직불(체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세금인상분을 제외한 LPG 대금을 연결계좌에서 이체 받은 후, LPG 대금 전액을 LPG 충전소에 지급하고, 세금인상분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한다.

○ 복지카드 업무 협약서 제21조(복지기금) ① “을”은 이 협약에 의하여 발급된 복지카드를 사용한 신용매출액의 0.1%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한다.

2. 세입 개요

○ LPG 세금인상분 보조금 지원을 위한 복지카드 신용매출액의 0.1%로 조성된 복지기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6	-	-		25	25	-	100		
’17	28	28	28	24	24	85.7	100		
’18	28	28	28	24	24	85.7	100		
’19	28	28	28						
’20(안)	28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5	33	33	33	33	-	-

1. 법적 근거

○ 보철용차량 지원지침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사용자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상이자에게 지급한 세금인상분 환수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LPG 세금인상분 보조금 부당사용자 과오급금 환수분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6	82	82		40	40	48.8	100		
'17	82	82		22	22	26.8	100		
'18	82	82		27	25	30.5	92.5		2
'19	33	33							
'20(안)	33		-	-	-	-	-	-	-

2. 세 출

사 업 명
(1)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2158-3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투자계정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8	380
명칭	보훈의료복지	LPG차량지원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LPG차량 세금인상분지원	21,054	20,831	20,831	19,789	19,789	△1,042	△5.0

4. 사업목적

-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LPG 차량에 대한 LPG 연료의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 등 복지생활 향상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사업의 범위 등)
- 보철용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146호)

② 추진경위

- 기간 : 2001.7.1. ~ 현재까지
- 석유가격구조개편으로 LPG 개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LPG를 연료로 하는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금인상분을 예산으로 보조('01년 당정협의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1.7월~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신한카드주식회사
- 사업 수혜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중·고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신한카드주식회사	100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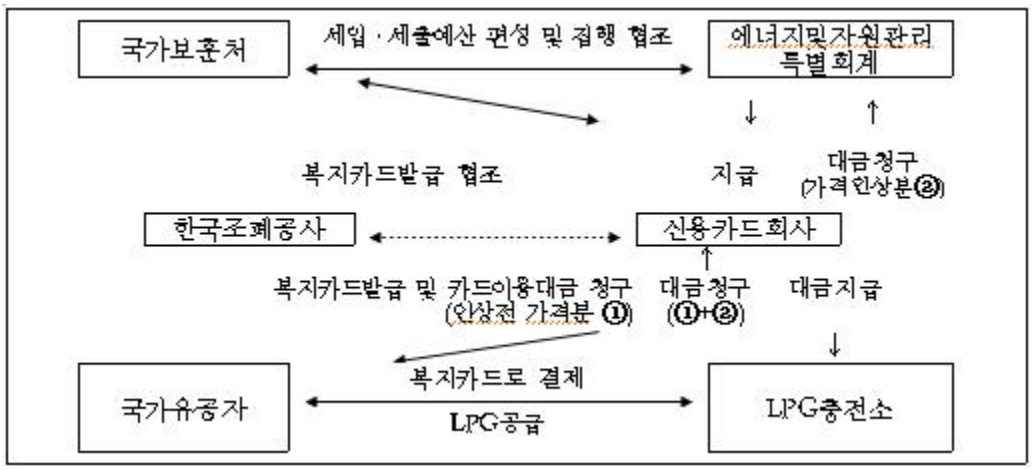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I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 업 명
(1) 제주보훈업무지원(7190-43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	제주특별 자치도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90	430
명칭	보훈행정	제주이관업무지원	제주보훈업무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제주보훈업무지원	1,904	2,018	2,018	2,139	2,083	65	3.2

4. 사업목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기관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보상금 지급관리, 보훈선양계승발전, 보훈기념행사,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등, 이동보훈팀운영 등 보훈사업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훈지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기관 이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2,08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보훈청)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직원 및 제주도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법적근거
제주보훈청	10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 사업 집행절차

○ 보조사업자(제주특별자치도) 보조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국가보훈처) → 국고보조금 교부(국가보훈처) → 사업수행(제주보훈청) → 정산결과 보고(제주보훈청)

VI
보훈기금

1. 수 입

건물대여료
51-512

< 보훈기금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건물대여료	31	43	43	27	44	1	2.3

1. 법적 근거

○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대부회수금・예탁금인출금・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증식사업수익금・배당금・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복지시설(아파트 9개 동) 대여료 : 44백만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39	39	39	39	39	100.0	100.0	-	-
'17	40	40	40	38	38	95	100.0	-	-
'18	42	42	42	31	31	73.8	100.0	-	-
'19	43	43	43	19	19	44.2	100.0	-	-
20(안)	44	-	-	-	-	-	-	-	-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 보훈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기타민간이자수입	2,797	2,748	2,748	2,297	2,624	△124	△4.5
▪ 국가유공자	2,280	2,252	2,252	1,871	2,085	△167	△7.4
▪ 참전·제대군인	436	431	431	355	433	2	0.5
▪ 5·18민주유공자	58	37	37	51	83	46	124.3
▪ 특수임무유공자	23	28	28	20	23	△5	△17.9

1. 법적 근거

○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대부금 회수금·예탁금 인출금·대여금 회수금, 3. 기부성금·기부재산 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 수입금·배당금, 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6. 차입금, 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그 이자를 수납

○ 대부이율 : 연 2~3%(제대군인은 연 3~4%)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3,178	3,178	3,178	7,113	3,625	114.1	51.0	3,452	35
'17	3,158	3,158	3,158	6,915	3,228	102.2	46.7	3,376	311
'18	3,059	3,059	3,059	6,512	2,797	91.4	43.0	3,383	332
'19	2,748	2,748	2,748	4,809	1,275	46.4	26.5	3,475	59
'20(안)	2,624								

기타재산수입
54-545

< 보훈기금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재산수입	1,050	135,373	135,373	2,757	120,757	△14,616	△10.8
▪ 국가유공자	1,050	133,833	133,833	1,254	119,254	△14,579	△10.9
▪ 참전・제대군인	-	1,307	1,307	1,270	1,270	△37	△2.8
▪ 5・18민주유공자	-	136	136	136	136	-	-
▪ 특수임무유공자	-	97	97	97	97	-	-

1. 법적 근거

○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대부회수금・예탁금인출금・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증식사업수익금・배당금・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 예탁이자수입 : 2,757백만원

○ 골프장 매각대금 : 118,000백만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167,971	167,971	167,971	34,120	34,120	20.3	100.0	-	-
'17	155,036	155,036	155,036	39,405	39,405	25.4	100.0	-	-
'18	159,719	159,719	159,719	1,050	1,050	0.7	100.0	-	-
'19	135,373	135,373	135,373	912	912	0.7	100.0		
'20(안)	120,757								

민간출연금
59-594

< 보훈기금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민간출연금	9,960	8,961	8,961	9,023	9,023	62	0.7

1. 법적 근거

○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대부회수금・예탁금인출금・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증식사업수익금・배당금・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향군기부성금 : 8,476백만원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산하업체의 수익금을 향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으로 수납(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
- 기부성금 규모 결정방식 : 향군 산하업체 수익금 범위내 책정

○ 보훈공단전입금 : 547백만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보훈기금의 장학금 및 호우회 건전활동 사업을 전액 지원

○ 보훈성금 : 일반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12,950	12,950	12,950	13,338	13,338	102.9	100.0	-	-
‘17	11,627	11,627	11,627	10,819	10,819	93.1	100.0	-	-
‘18	10,767	10,767	10,767	9,960	9,960	92.5	100.0	-	-
‘19	8,961	8,961	8,961	7,248	7,244	80.8	99.9	4	
‘20(안)	9,023	-	-	-	-	-	-	-	-

입장료수입
64-641

< 보훈기금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입장료수입	20,294	20,402	20,402	20,702	20,702	300	1.5

1. 법적 근거

○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대부회수금・예탁금인출금・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증식사업수익금・배당금・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88골프장 입장료수입 : 20,702백만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20,294	20,294	순증	100.0	-	-
'19	20,402	20,402	20,402	19,677	19,677	96.4	100.0	-	-
'20	20,702								

기타잡수입
69-691

< 보훈기금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잡수입	10,061	11,193	11,193	10,263	10,263	△930	△8.3

1. 법적 근거

○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대부회수금・예탁금인출금・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증식사업수익금・배당금・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88골프장 기타잡수입 : 10,263백만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10,061	10,061	순증	100.0	-	-
'19	11,193	11,193	11,193	9,305	9,305	83.1	100.0	-	-
'20(안)	10,263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 보훈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		2020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4,026	31,795	31,795	30,456	33,633	1,838	5.8
▪ 국가유공자	30,398	28,511	28,511	27,594	29,083	572	2.0
▪ 참전・제대군인	3,086	2,733	2,733	2,447	3,819	1,086	39.7
▪ 5・18민주유공자	387	362	362	316	316	△46	△12.7
▪ 특수임무유공자	155	189	189	99	415	226	119.6

1. 법적 근거

○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대부금 회수금・예탁금 인출금・대여금 회수금, 3. 기부성금・기부재산 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 수입금・배당금, 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6. 차입금, 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그 이자를 수납

○ 대부이율 : 연 2~3%(제대군인은 연 3~4%)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34,602	34,602	34,602	55,061	39,791	115.0	72.3	15,083	186
'17	38,162	38,162	38,162	51,034	36,021	94.4	70.6	14,307	706
'18	36,004	36,004	36,004	48,527	34,026	94.5	70.1	13,736	765
'19	31,795	31,795	31,795	30,721	16,759	52.7	54.6	13,699	263
'20(안)	33,633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851

< 보훈기금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한국은행예치금회수	298	350	350	350	350	-	-
▪ 국가유공자	291	150	150	150	150	-	-
▪ 참전・제대군인	6	100	100	100	100	-	-
▪ 5・18민주유공자	0	50	50	50	50	-	-
▪ 특수임무유공자	1	50	50	50	50	-	-

1. 법적 근거

○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대부회수금・예탁금인출금・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증식사업수익금・배당금・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보훈기금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연도말 집행잔액을 회수함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350	350	350	245	245	70.0	100.0	-	-
'17	350	350	350	218	218	62.3	100.0	-	-
'18	350	350	350	298	298	-	-	-	-
'19	350	350	350	-	-	-	-	-	-
'20(안)	350	-	-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 보훈기금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52,785	405,477	405,477	137,704	276,364	△129,113	△31.8
▪ 국가유공자	150,339	328,485	328,485	62,668	197,271	△131,214	△39.9
▪ 참전・제대군인	1,358	65,343	65,343	63,389	67,414	2,071	3.2
▪ 5・18민주유공자	728	6,809	6,809	6,823	6,823	14	0.2
▪ 특수임무유공자	360	4,840	4,840	4,824	4,856	16	0.3

1. 법적 근거

○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대부회수금・예탁금인출금・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증식사업수익금・배당금・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보훈기금 수입금 중 일부를 기금수익을 위하여 비통화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탁한 후 만기 도래되는 예탁금을 회수함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305,913	305,913	305,913	65,805	65,805	21.5	100.0	-	-
'17	303,196	303,196	303,196	46,693	46,693	15.4	100.0	-	-
'18	287,029	287,029	287,029	152,785	152,785	53.2	100.0	-	-
'19	405,477	405,477	405,477	70,472	70,472	17.4	100.0	-	-
'20(안)	276,364	-	-	-	-	-	-	-	-

기금전입금
91-913

< 보훈기금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금전입금	27,102	30,154	30,154	39,257	38,905	8,751	29.0

1. 법적 근거

○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대부회수금・예탁금인출금・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증식사업수익금・배당금・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⑤복권기금의 배분방법·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권기금으로부터 보훈기금으로 전입되는 재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11,228	11,228	11,228	11,226	11,226	99.9	100.0	-	-
'17	14,184	14,184	14,184	14,184	14,184	100.0	100.0	-	-
'18	27,102	27,102	27,102	27,102	27,102	100.0	100.0	-	-
'19	30,154	30,154	30,154	23,174	23,174	76.9	100.0		
'20(안)	38,905	-	-	-	-	-	-	-	-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 보훈기금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기금예탁원금회수	7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

1.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및 제6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제9조

2. 수입 개요

○ 보훈기금의 여유자금 중 공자기금(총괄계정)에 예탁한 원금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00.0	100.0	-	-
'17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0.0	100.0	-	-
'18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100.0	100.0	-	-
'19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00.0	100.0	-	-
'20(안)	150,000	-	-	-	-	-	-	-	-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 보훈기금 >

(단위 :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기금예탁이자수입	5,990	7,454	7,454	7,625	5,555	△1,899	△25.5

1. 법적 근거

○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대부회수금・예탁금인출금・대여금회수금・기부성금・기부재산처분대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차입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기금증식사업수익금・배당금・기금재산의 처분대금・임대료・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기금운용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3조 (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예수)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한다. 다만, 예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상환일에 지급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6월 9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9월 9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12월 9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다음 연도 3월 9일

2. 수입 개요

○ 보훈기금의 여유자금 중 공자기금(총괄계정)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8,802	8,802	8,802	4,457	4,457	50.6	100.0	-	-
'17	8,469	8,469	8,469	7,870	7,870	92.9	100.0	-	-
'18	6,858	6,858	6,858	5,990	5,990	87.3	100.0		
'19	7,454	7,454	7,454	5,243	4,146	55.6	70.1		
'20(안)	5,555								

2. 지 출

사 업 명
(1) 국가유공자등 위로격려(2160-43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60	430
명칭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 등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80% 이하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998	1,180	1,180	2,035	1,173	△7	△0.6

4. 사업목적·내용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군경에 대한 위문·포상을 통해 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자라나는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국가유공자 예우풍토 조성 및 나라사랑하는 마음 고취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재해복구 및 자활의지 고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9조 제2항
- 보훈기금법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훈령)

② 추진경위

- 1961년 국가보훈처(구 원호처) 창설 이래 원호병원 입원환자 위문을 시작으로 보훈의 달, 명절 등을 계기로 위문
- 1975년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에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인재양성을 위해 각 대학에 호우회를 결성 추진한 이래 해외연수 및 지도교수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해오다 현재는 40개 대학 호우회 활동 지원 및 호우회 활동 기여 모범 대학생에게 처장 표창 실시
- 1960년대 재해위로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특수사정 발생 시 각계각층에서 기탁한 원호성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을 시작하여, 1974년 원호대상자자활기금, 1981년 원호기금으로 지급하였고 1988년부터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재해위로금 지급을 제도화함
- 1968년 6월 국제신보사에서 부산경남지역의 ‘장한 아내상’ 시상을 시작으로, 1974년 한국일보사에서 국가보훈처가 후원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한국보훈대상’을 제정·시상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국내 14개 중앙 및 지방 신문사에서 매년 5~10명씩 모범유공자를 시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보훈의 달 위문, 보훈병원 및 보훈복지시설 등 위문, 호우회 지원 17개 대학, 재해위로금, 보훈대상 시상금, 군작전희생자위문금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807	862	878	934	1,18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군작전 군경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호우회	100%	보훈기금 제5조

7. 사업 집행절차

- 위문 및 포상 계획 수립 → 대상 등 선정 → 위문 및 포상행사
- 호우회 활동계획서 접수 → 검토 후 예산배정 → 보조금 신청서 접수 → 보조금 지급 → 정산
- 재해 접수 → 재해사실 확인 → 재해위로금 결정 → 위로금 지급

사 업 명
(2) 중상이자편의시설 공급(2160-43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60	439
명칭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중상이자편의시설 공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중상이자편의시설 공급	3,733	4,477	4,477	2,610	2,025	△2,452	△54.8

4. 사업목적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보행기능이 전폐되거나 현저한 기능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 편의시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2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② 추진경위

- '04년 이전에는 예산부족으로 고령자순으로 순차적 지급
- '04년부터 복권기금을 확보 대량 공급함으로써 '08년까지 적체 해소
- 복권기금 감소로 '08년부터 보훈기금에 반영하여 공급
- '09년부터 '04년 대량 공급한 휠체어 교체 지급 시작
- '13년부터 전동침대, 샤워형휠체어 신규공급
- '17년부터 노후 리프트버스 교체 시작('17년 491백만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중상이자편의시설 577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업 수혜자 : 1~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중상이자편의시설 공급

보훈관서	→	보장구센터 (중앙보훈병원)	→	보훈관서
대상자 지급안내, 접수 및 결정	(지급의뢰)	보철구 구입 (상품계약·납품)	(결과통보)	지급 및 결과 전산입력

사 업 명
(3)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2160-44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국가유공자 참전·제대군인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60	441
명칭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 등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40,159	46,292	46,292	59,580	49,012	2,737	5.9

4. 사업목적·내용

- (재가복지지원) 동 내역사업은 고령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에게 가정 내 보훈섬김이를 파견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임
- (노인생활지원용품) 동 내역사업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활동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것임
- (여가활동 지원) 동 내역사업은 고령 보훈대상자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서예, 노래교실 등 여가프로그램 및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국가유공자법률구조지원) 동 내역사업은 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 재판청구권 보장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송 관련 비용 및 각종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훈기금법 제1조(목적) 및 제5조(기금의 지출)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보훈재가복지서비스)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훈령)

② 추진경위

- ('05) 하반기 5개지방청 통해 시범운영, ('06) 4월부터 전국 확대시행
- ('07) 각 지방보훈관서에 보훈복지사 1명씩 배치, 본격 추진
- ('08) 각 지방보훈청 및 수원지청에 보훈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
- ('08)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의 실시
- ('09) 참전유공자 노후복지 지원계획 수립, 10월부터 참전유공자 노후복지지원
- ('15) 복권기금 확보,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중점지원 시행
- ('17) 지청 신설로 기존 25개에서 27개 지방관서로 확대시행
- ('18) 독립유공자손자녀 등 지원대상 확대
- ('19)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지원대상 확대
- 보훈복지인력 연차적 증원
  * 보훈복지사: 15명('07)→30명('08)→40명('10)→50명('13)→67명('15)→70명('17)→72명('18)
  * 보훈섬김이: 250명('07)→600명('08)→1,000명('09)→1,100명('13)→1,326명('15)→1,349명('18)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5~)
- 사업규모
  · 재가복지지원 : 연 12,517명(보훈복지사 72명, 보훈섬김이 1,349명)
  · 보훈대상자 지팡이, 기저귀 등 노인생활지원용품 지원

· 고령 국가유공자 여가활동 운영 지원

· 국가유공자 법률 구조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27개 지방보훈관서, 보훈단체 및 민간단체
- 사 업 수 혜 자

· (재가복지서비스) 만65세 이상의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 (노인생활지원용품) 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 애국지사, 상이1급, 가정간호서비스대상자 등

· (여가활동지원) 만60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률구조) 보훈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보훈단체, 민간단체 등	100%	-
법률구조공단	100%	-

7. 사업 집행절차

○ 재가복지지원지원

대상자 선정	→	Care Plan 작성	→	서비스 실시	→	평가·관리
보훈(지)청장		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보훈(지)청

○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

용품 신청	↔	대상자선정 및 수요파악	→	용품구매	→	용품 지급및 관리
수요자		보훈(지)청장		보훈(지)청↔ 납품업체		보훈(지)청

○ 고령 국가유공자 여가활동프로그램

기본계획수립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국고보조	→	사업 실시	→	결과보고 및 정산
보훈처 (지방보훈관서)		보훈처 (지방보훈관서)		보조사업자		보훈처 보조사업자

○ 국가유공자 법률구조 지원

구조 신청	→	법률 지원	→	정산 신청	→	국고보조금 지급
보훈대상자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국가보훈처

사 업 명
(4)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2160-47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60	472
명칭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운영	608	1,076	1,076	1,581	1,110	34	3.2

4. 사업목적

- 심리적 아픔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보훈병원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정서적 치유와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기본법 제19조 ②항(예우 및 지원의 실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료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② 추진경위

- ‘18. 1월 국가보훈처 연두 업무계획 보고
- ’18. 7월 보훈관서 심리재활상담사 배치 및 심리재활집중센터 설치, 운영

6.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대상자 발굴 → ② 상담 및 검사 → ③ 대상 분류 → ④ 심리재활 프로그램 선택 및 서비스 제공(타기관 연계) → ⑤ 상담 완료 ⑥ 사후 관리

사 업 명
(5) 보훈요양원 건립(2161-44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61	443
명칭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 등 복지시설운영	보훈요양원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보훈요양원 건립	12,577	13,128	13,128	25,114	23,659	10,531	80.2

4. 사업목적

-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 급증으로 가정에서 개호가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위한 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보훈요양원 건립

  * 권역별 균등한 보훈요양서비스 제공 및 요양수요 해소를 위해 강원권 및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및 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제2항

- 보훈기금법 제5조(기금의 지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② 추진경위

- '05.11월 국가유공자 노후복지사업 추진관련 건립 종합계획 수립
- '06. 2월 요양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 '06. 3월 보훈공단과 요양시설 건립 위탁약정 계약 체결
- '06.12월 수원·광주요양원 건축공사 착공
- '08. 2월 김해요양원 건축공사 착공
-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08. 7월 수원·광주요양원 개원
- '09. 8월 김해요양원 개원
- '10. 3월 대구요양원 착공
- '10.12월 대전요양원 착공
- '11.10월 대구요양원 개원
- '12.10월 대전요양원 개원
- '13. 5월 남양주요양원 착공
- '15. 2월 남양주요양원 개원
- '17. 1월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계획 수립 * '19.12월 기준 공사 진행 중
- '18. 1월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계획 수립 * '19.12월 기준 실시설계 진행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최초 722억원(강원권 366억원, 전북권 356억원)
- 사업기간 : (강원권) 2017년~2020년, (전북권) 2018년~2021년
- 사업규모 : (강원권) 부지면적 9,784.8㎡, 건축연면적 10,515㎡(지하1층~지상4층)
  (전북권) 부지면적 14,033㎡, 건축연면적 9,745㎡(지하1층~지상3층)
  * 입소규모 : 장기입소 200인, 주간보호 25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립위탁
- 사업 수혜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 보훈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	건립위탁 약정서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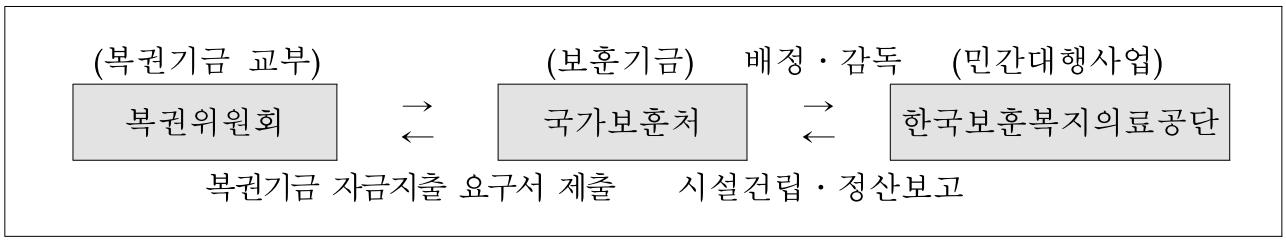

사 업 명
(6)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2161-44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61	444
명칭	보훈의료복지	국가유공자 등 복지시설운영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8,298	7,846	7,705	8,512	8,041	336	4.4

4. 사업목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게 요양시설 이용지원과 무의탁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의식주 제공 등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
- 국가유공자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한 보훈원 등 보훈복지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유지로 운영의 내실화 및 유가족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요양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훈령 제1,013호)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요양지원)
- 보훈기금법 제5조(기금의 지출) 및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사업)

<양로지원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양로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 보훈기금법 제5조(기금의 지출) 및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사업)

② 추진경위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 보훈병원 장기입원자 중 재가수발보호의 한계 및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퇴원을 기피
- '05. 2월 노후복지 수요조사결과 노인복지시설 이용수요 확인
- '10. 1월 재가요양시설 이용지원 확대(방문 요양・목욕・간호)
- '11. 1월 6.25참전유공자(의료급여자) 재가요양 급여지원 확대
- '12. 1월 6.25참전유공자(의료급여자) 시설요양 급여지원 확대
- '13. 1월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의료급여자)까지 지원 확대
- '14. 1월 월남참전유공자(의료급여자)까지 지원 확대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 '06. 2월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수립
- '08. 7월 수원·광주요양원 개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09. 8월 김해요양원 개원
- '11.10월 대구요양원 개원
- '12.10월 대전요양원 개원
- '15. 2월 남양주요양원 개원

<양로지원비>

- '63. 1월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양육양로보호 실시
- '97. 6월 보훈원 준공 개원

<보훈복지시설 개보수>

- '96. 6월 보훈복지타운 및 보훈휴양원 개원, 시설유지비 지원
- '97. 6월 보훈원 준공 개원, 시설유지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요양지원 3,000여명(민간요양 2,200여명, 보훈요양 800여명), 양로지원(보훈원) 205명 205명, 보훈복지시설 10개소(보훈원, 보훈복지타운, 보훈휴양원, 6개 보훈요양원, 보훈교육연구원) 시설개보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위탁운영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고령 무의탁 보훈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65조

7. 사업 집행절차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 사업추진의 총괄 및 감독 : 국가보훈처
○ 예산집행체계 : 국가보훈처 → 보훈지청
○ 사업추진체계

시설입소 신청 및 시설이용	→	시설이용 지원신청	→	지원자 결 정	→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 확인	→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본인(보호자) →요양시설		본인(보호자) →보훈관서		보훈관서		국가보훈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적 연계)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사업추진의 총괄 및 감독 : 국가보훈처
○예산집행체계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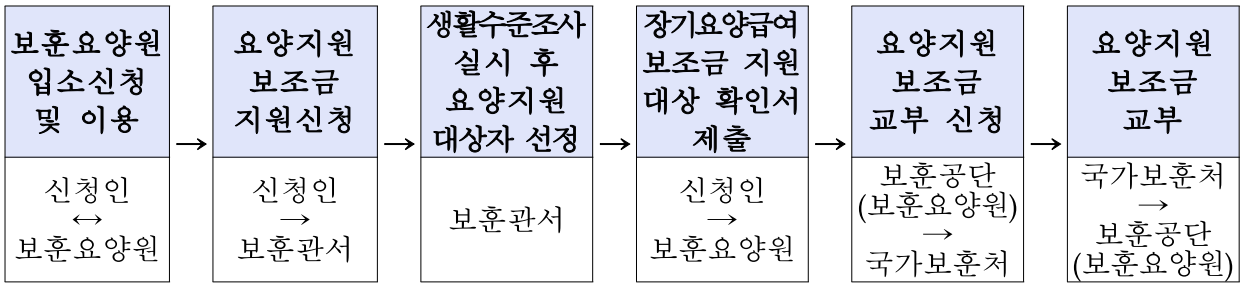

<양로지원비>

○ 사업추진의 총괄 및 감독 : 국가보훈처

○ 예산집행체계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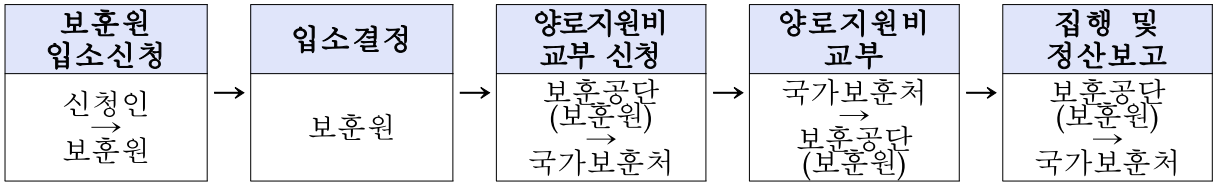

<보훈복지시설 개보수>

○ 사업추진의 총괄 및 감독 : 국가보훈처

○ 예산집행체계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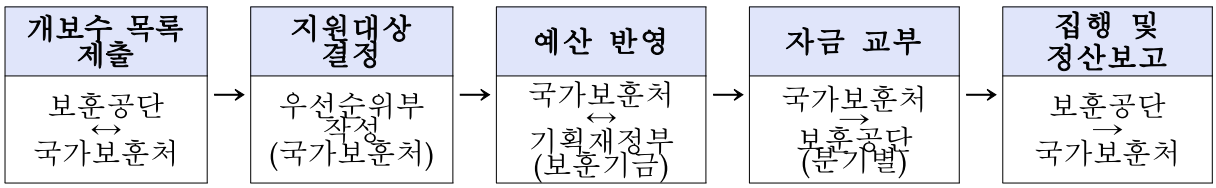

사 업 명
(7) 장학금 (2242-32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국가유공자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42	326
명칭	생활안정	장학지원	장학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보전금	447	503	503	497	497	△6	△1.2

4. 사업목적

- 수업료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과정,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보훈정책의 미비로 학령기에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부칙 <법률 제3419호, 1981.4.4.>

제7조 (원호단체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이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 **보훈기금법**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 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4.>

8. 국가유공자등의 장학금과 건전 활동을 위한 지원비

② 추진경위

- 1965. 6 재단법인「원호장학회」* 설립 최초기금 : 4천만원
  * 설립배경 : 교육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재학자녀의 공납금 보조 목적
- 1977년 대학 재학자녀 공납금 면제 혜택 부여(문교부령 개정)
- 1981년 한국보훈복지공단 설립시 원호장학회의 자산일체 등 권리·의무 승계
  * 장학기금 11억 8천만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성적우수자,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1996년 보훈시책 미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6·25전몰군경 자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의 대학재학 자녀에 대하여 보훈가족장학금 신설
- 2000년 법령에서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과정에 한하여 장학 지원

6.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65년~)
- 사업규모 : 624명 503백만원 (2019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배우자, 특수학교 재학자,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훈장학금>

장학금신청	↔	신청자 보고 (우선순위작성)	→	지방청별 장학금 교부	→	지급대상결정 및 지급
신청인→ 보훈(지)청장		보훈(지)청장→ 처본부		처본부→ 보훈(지)청		보훈(지)청→ 신청인

<보훈가족장학>

장학금지급계획 통보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송부 (우선순위작성)	→	지급대상결정 및 지급
처본부→ 전몰군경유족회		신청인→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 처본부		처본부→ 신청인

사 업 명
(8) 국가유공자등 대부(2259-387~38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59	387~389
명칭	보훈복지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 국가유공자대부 - 5.18민주유공자대부 - 특수임무유공자대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 국가유공자 등 대부	31,451	31,292	31,292	42,469	26,800	△4,492	△14.4
- 국가유공자	30,857	30,903	30,903	41,882	26,349	△4,554	△14.7
- 5·18민주유공자	348	247	247	368	283	36	14.6
- 특수임무유공자	246	142	142	176	168	26	18.3

4.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장기저리 대부지원

○ 보훈기금의 재원한계를 극복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부사업을 금융기관

에 위탁하고, 위탁은행 계약금리와 보훈대부 이율의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

· ‘07. 7월 국민은행 단독위탁, ’16.8월 농협은행 복수위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8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74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69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81조
- 「보훈기금법」 제5조 및 제18조

② 추진경위

- 1962년 농장구입대부 및 농장개간대부 실시
- 1965년 주택대부, 1967년 주택전세 및 용사촌 공동대부, 1969년 사업대부
- 1971년 아파트대부, 1982년 생활안정대부, 1998년 주택개량대부
- 2004년 국가유공자 대부에 준하여 5·18민주유공자 대부 실시
  * 대부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35억5천만원, ‘17년 상환완료)
- 2006년 국가유공자 대부에 준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대부 실시
  * 대부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34억5천만원, ‘17년 상환완료)
- 2007.7월 국민은행 대부업무 단독위탁(2016.8월 농협은행 복수위탁)
  * 신용관리대상자는 기존처럼 지방보훈관서에서 직접 지원
- 2012년 국가유공자 대부에 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대부 실시

6.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직접대부 ‘62년부터, 위탁대부 ’07년부터)
- 사업규모 : 융자금 4,606가구 22,027백만원, 이차보전금 4,541백만원, 채권위탁수수료 23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융자), 민간위탁(이차보전)
- 사업시행주체

· 직접대부 : 국가보훈처(26개 지방보훈관서 및 제주보훈청)

· 위탁대부 :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대부에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100	보훈기금법 제18조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대부 융자금 지급 >

대부 신청	→	지원요건 확인	→	담보조건 협의	→	대부금 지급
신청인→보훈관서		보훈관서		보훈관서↔신청인		보훈관서→신청인

< 위탁대부 지원, 이차보전금 청구 및 지급 >

구 분	수행기관	비 고
① 대부신청	신 청 인 → 위탁은행	수 시
② 대부지원대상 여부 조회	위탁은행 → 국가보훈처	"
③ 대부지원대상 여부 및 담보조건 통보	국가보훈처 → 위탁은행	"
④ 대부수속 및 대부금 지급	위탁은행 ↔ 신 청 인	"
⑤ 대부금지원 사항 통보	위탁은행 → 국가보훈처	매일 1회
⑥ 이차보전금 청구	위탁은행 → 국가보훈처	매월 10까지
⑦ 이차보전금 지급	국가보훈처 → 위탁은행	매월 15까지

사 업 명
(9) 골프장 위탁운영(2362-43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62	434
명칭	기금증식	기금수익사업	골프장 위탁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골프장 위탁운영	17,117	17,726	17,726	18,377	17,805	79	0.4

4. 사업목적·내용

- '80년대 이르러 국가유공자의 노령화, 복지욕구 증대 등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보훈기금 증식사업으로 88골프장 건설 운영

- '88년 36홀 규모로 개장한 88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보훈처가 자본금(20억원)을 100% 출자하여 '87.7월에 설립한 88관광개발(주)에 골프장운영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훈기금법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 골프장 관리운영 위탁약정서

② 추진경위

- 1985. 12. 16 : 골프장 사업승인(교통부)
- 1987. 7. 30 : 88관광개발(주) 설립
- 1988. 7. 8 : 골프장(36홀) 개장
- 2005. 11. 9 : 실외골프연습장(102타석) 개장
- 2006. 7. 1 : PAR3(9홀) 개장

6.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1988년 개장)
- 사업규모 :
  ・36홀 골프장 운영에 따른 종사인원 인건비 지원
  ・36홀 식당, 티하우스, 프로샵 등 재료비 및 운영경비 지원
  ・실외골프연습장 및 PAR3홀 연습장 재료비, 운영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위탁운영)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88관광개발(주)
- 사업 수혜자 : 국가유공자(유족)

  * 88골프장 운영수익금 전액 보훈기금으로 전입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재원 활용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88관광개발(주)	100	보훈기금법 제7조 및 위탁약정서

7. 사업 집행절차

- 88골프장 및 관련 시설내의 토지, 건물, 수목, 잔디, 및 기타 시설물 등 보훈기금 소유재산 일체를 관리하고 영업에 대한 필요한 업무를 88관광개발(주)에 위탁
- 국가보훈처는 88관광개발(주)가 위탁받은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

- 수수료 금액은 위탁대상 총수익의 1/3 범위내에서 회사의 운영 여건을 고려, 연도별로 정액을 정하되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및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회사 정기이사회 의결로 결정
- 88골프장 운영 수익금 전액은 당일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국고계좌에 납입
  * 국가보훈처 : 골프장 소유주 및 법인의 주주, 88관광개발(주) : 위탁관리업체

사 업 명
(10) 골프장 시설투자(2632-43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62	435
명칭	기금증식	기금수익사업	골프장 위탁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골프장 시설투자	1,102	1,184	1,184	2,457	1,521	337	28.5

4. 사업목적

-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88골프장 개·보수로 내장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와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수익 창출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훈기금법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 골프장 관리운영 위탁약정서

② 추진경위

- 1985. 12. 16 : 골프장 사업승인(교통부)
- 1987. 7. 30 : 88관광개발(주) 설립
- 1988. 7. 8 : 골프장(36홀) 개장
- 2005. 11. 9 : 실외골프연습장(102타석) 개장
- 2006. 7. 1 : PAR3(9홀) 개장

6.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1988년 개장)
- 사업규모 :
  · 36홀 골프장 코스 및 시설물 개·보수
  · 실외골프연습장 및 PAR3홀 코스 및 시설물 개·보수
  · 골프장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교체와 신규사업 자본 투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위탁운영)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88관광개발(주)	100	보훈기금법 제7조 및 위탁약정서

7. 사업 집행절차

- 88골프장 및 관련 시설내의 토지, 건물, 수목, 잔디, 및 기타 시설물 등 보훈기금 소유재산 일체를 관리하고 영업에 대한 필요한 업무를 88관광개발(주)에 위탁
- 88골프장 시설의 유지보수와 신규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본예산을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 필요한 자금을 월별로 교부하여 시설에 투자

* 국가보훈처 : 골프장 소유주 및 법인의 주주, 88관광개발(주) : 위탁관리업체

사 업 명
(11) 재향군인회 지원 (4163-43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참전·제대군인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3	436
명칭	제대군인지원	참전·제대군인지원	재향군인회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재향군인회 지원	9,183	8,376	8,376	8,376	8,376	-	-

4. 사업목적

- (재향군인회 지원) 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 등이 기부한 성금을 재원으로 회원의 권익 향상, 호국정신 함양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재향군인회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훈기금법 제1조 :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
- 보훈기금법 제5조 : 보훈기금은 <중략> 재향군인회사업비를 그 지출로 한다

-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 제2항제7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재향군인회사업비)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추진경위

- 제대군인지원업무의 일원화에 따라 ´92. 12. 2. 재향군인회 지도·감독업무가 국가보훈처로 이관되면서 보훈기금법을 개정하여 사업비를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재향군인회 본부 및 시·도회 등 3,505개 각급회 운영비
  · 회원(139만명) 복지, 국제협력, 사회봉사 활동, 산하 친목회(66개) 지원 등 사업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사업 수혜자 :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재향군인회 회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0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2) 참전유공자지원 (4163 - 43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참전·제대군인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3	439
명칭	제대군인지원	참전 · 제대군인지원	참전유공자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73.5%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참전유공자 지원	705	641	641	1,097	641	-	-

4. 사업목적·내용

- 참전기념행사 지원 및 명예선양사업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국민들의 호국정신 계승 · 발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의 설립)

①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침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 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둔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사업)

1.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이하여 제2자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애국정신의 계승 :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홍보하여 애국정신이 계승·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훈기금법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5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② 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 부터 제10호까지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참전국인지원에관한법률 제정('93.12.17.)으로 참전군인등지원기금을 설치·운영, '02. 3. 1.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보훈기금에 통합
- '95, '96년 각 50억원씩 정부출연으로 100억원 조성, '07년부터 세출예산 전출금 6억원 및 조성기금 이식금 등으로 장제비 보조, 영구용태극기 증정, 참전기념행사, 참전관련 학술회의, 참전유공자 호국순례, 참전수기 등 호국문예물 공모, 참전용사 명예졸업장 수여, 학도병 참전기념비 제막 등 참전유공자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한 참전기념사업 기금으로 운용
- '00년 6·25 및 월남전별로 통합법인 설립허가 및 참전단체 기념사업비 지원방침 수립
- '01년부터 참전단체 기념사업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및 민간단체 주관 참전기념행사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직접
- 사업시행주체 :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및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참전단체(6·25, 월남)등 민간단체	10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제12조의 2(보조금)

7. 사업 집행절차

① 사업계획서 제출(소속기관, 재향군인회 또는 참전단체 ⇋ 국가보훈처)
② 행사의 성격, 파급효과 등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국가보훈처)
③ 보조금 교부(국가보훈처 ⇋ 재향군인회 또는 참전단체)
④ 행사추진(참전관련 단체)
⑤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재향군인회 또는 참전단체 ⇒ 국가보훈처)

사 업 명
(13) 제대군인대부 (4164-43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참전·제대군인 지원자금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4	438
명칭	제대군인	제대군인 대부사업	제대군인대부(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제대군인대부	2,144	2,343	2,343	2,343	2,174	△169	△7.2

4. 사업목적·내용

- 10년이상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을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생활안정 도모
- 국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탁하고, 위탁은행 대부이율과 보훈처 대부이율의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
  ※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 등은 보훈관서에서 직접 대부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대부지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 보훈기금법 제5조(기금의 지출) 및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② 추진경위

- 1961년「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제정(농장구입, 주택구입, 신축대부 실시)
- 1969년 사업자금대부 실시
- 1974년 주택전세대부 실시
- 1981년「보훈기금법」제정 공포
- 1981년 생활안정대부 실시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을「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으로 개정
- 1984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대부 실시
- 1995년 학자금대부 실시
- 1997년「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예우법에서 제대군인 분리
- 2007년 국민은행에 대부업무 위탁하여 실시, 신용관리대상자는 기존처럼 보훈관서에서 직접 지원

  * 위탁은행과 보훈처의 대부이율의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
- 2016년 농협은행 대부업무 위탁 추가

6.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직접대부 '62년부터, 위탁대부 '07년부터)

○ 사업규모 : 융자금 426건 2,161백만원, 이차보전금 1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융자), 민간위탁(이차보전)

○ 사업시행주체

- 직접대부 : 국가보훈처(26개 지방보훈관서 및 제주보훈청)
- 위탁대부 : 국민은행, 농협은행

○ 사업 수혜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100	보훈기금법 제18조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대부 융자금 지급 >

대부 신청	→	지원요건 확인	→	담보조건 협의	→	대부금 지급
신청인→보훈관서		보훈관서		보훈관서↔신청인		보훈관서→신청인

< 위탁대부 지원, 이차보전금 청구 및 지급 >

구 분	수행기관	비 고
① 대부신청	신 청 인 → 위탁은행	수 시
② 대부지원대상 여부 조회	위탁은행 → 국가보훈처	〃
③ 대부지원대상 여부 및 담보조건 통보	국가보훈처 → 위탁은행	〃
④ 대부수속 및 대부금 지급	위탁은행 ↔ 신 청 인	〃
⑤ 대부금지원 사항 통보	위탁은행 → 국가보훈처	매일 1회
⑥ 이차보전금 청구	위탁은행 → 국가보훈처	매월 10까지
⑦ 이차보전금 지급	국가보훈처 → 위탁은행	매월 15까지

V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 수 입

1. 토지대여료
51 - 511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토지대여료	55	38	38	55	55	17	44.7

1. 법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기금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하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2. 수입 개요

○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재산 토지대여료 수입을 추산하여 반영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	-	-	52	52	-	100.0	-	-
'17	-	-	-	50	47	-	94.0	3	-
'18	40	40	40	55	55	137.5	100.0	-	-
'19	38	38	38	46	46	121.1	100.0	-	-
'20(안)	55	55							

2. 건물대여료

51 - 512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건물대여료	-	2,000	2,000	3,853	3,853	1,853	92.7

1. 법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기금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하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2. 수입 개요

○ '18년 광복회관 재건축에 따른 건물 임대료를 추산하여 반영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	-	-	-	-	-	-	-	-
'17	-	-	-	-	-	-	-	-	-
'18	1,000	1,000	1,000	-	-	-	-	-	-
'19	2,000	2,000	2,000	694	694	34.7	100.0	-	-
'20(안)	3,853	3,853							

3.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기타재산수입	2,672	1,428	1,428	1,573	1,573	145	10.2

1. 법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기금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하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2. 수입 개요

○ 비통화금융기관(연기금 투자풀) 예치금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1,480	1,480	1,480	1,800	1,763	119.1	97.9	37	-
'17	1,367	1,367	1,367	712	712	52.1	100.0	-	-
'18	1,495	1,495	1,495	2,672	2,672	178.7	100.0	-	-
'19	1,428	1,428	1,428	1,343	1,343	94.0	100.0	-	-
'20(안)	1,573	1,573							

※ 2010년 7월부터 연기금투자풀(비통화금융기관)에 여유자금 예치 중

4. 토지매각대

72 - 721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토지매각대	2,457	4,464	4,464	2,206	2,457	△2,007	△45.0

1. 법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기금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하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2. 수입 개요

○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재산을 동 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는 내용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06.12.30)에 의거 환수재산의 매각규모를 추산하여 반영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7,391	7,391	7,391	12,591	9,090	123.0	72.2	3,501	-
'17	4,765	4,765	4,765	8,794	8,756	183.8	99.6	38	-
'18	4,596	4,596	4,596	2,457	2,457	53.4	100.0	-	-
'19	4,464	4,464	4,464	1,669	1,669	37.4	100.0	-	
'20(안)	2,206	2,457							

5.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 - 851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은행예치금회수	3	123	123	123	123	-	-

1. 법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기금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하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2. 수입 개요

○ '19년도 운용자금 이월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343	343	343	6	6	1.7	100.0	-	-
'17	285	285	285	123	123	43.2	100.0	-	-
'18	123	123	123	3	3	2.4	100.0	-	-
'19	123	123	123	1	1	0.8	100.0	-	-
'20(안)	123	123							

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3,050	70,758	70,758	52,250	52,250	△18,508	△26.2

1. 법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기금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하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2. 수입 개요

○ 사업비 등 사용을 위해 연기금 투자풀 예치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55,919	55,919	55,919	10,800	10,800	19.3	100.0	-	-
'17	59,220	59,220	59,220	59,220	16,041	27.1	100.0	-	-
'18	62,690	62,690	62,690	83,050	83,050	132.5	100.0	-	-
'19	70,758	70,758	70,758	68,370	68,370	96.6	100.0	-	-
'20(안)	52,250	52,250							

※ 예치금회수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지분증권 등을 환매한 금액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금을 연기금 투자풀 예치금에서 전액 환매(회수)하지 않고 토지매각대금 등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에 필요한 금액만 회수

7. 일반회계 전입금

91 - 911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일반회계전입금	54,686	76,203	76,203	84,271	76,689	486	0.6

1. 법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제17조 (기금의 수입·지출) 기금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하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2. 수입 개요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 지급 재원(특별예우금, 생활지원금, 가계지원비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16	3,685	3,685	3,685	3,685	3,685	100.0	100.0	-	-
'17	-	-	-	-	-	-	-	-	-
'18	54,686	54,686	54,686	54,686	54,686	100.0	100.0	-	-
'19	76,203	76,203	76,203	76,203	76,203	100.0	100.0	-	-
'20(안)	76,689	76,689	-	-	-	-	-	-	-

2. 지 출

사 업 명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3141-4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1	401
명칭	보훈선양	독립유공자예우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76,833	79,009	79,009	86,978	79,396	387	0.5

4. 사업목적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공훈에 상응한 예우금 및 제수비 등을 지급하여 그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정신을 계승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금의 용도)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 1993년 11월 제165회 정기국회예산안 심사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0억원을 기금에 출연하여 생존애국지사에 대해 최소한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하도록 지적

- 이에 따라 1995년부터 1996년에 걸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입금 45억원이 전입되어 이를 재원으로 생존애국지사 본인에게 특별예우금을 지급

- 다만, 특별예우금의 현실화 요구로 예우금이 점차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매년 세출전입금으로 충당

○ 사망조위금

- 1975년부터 생존애국지사 및 유족 중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훈관서장이 유족을 조문하여 사망조위금 지급

○ (손)자녀 생활지원금

-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

○ 단순수훈유족 생계부조금

- '68년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부조금을 지급하였으나, '73년 기금법 개정으로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여 종전대로 생계부조금 계속 지급 ('80년 법개정, 보상금과 통합, 생계부조금 폐지)

  * **'73년 기금법 개정 전** :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3촌 이내(자부, 손부 증손부, 독립운동 지원 등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
  * **'73년 기금법 개정 후** : 독립유공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 중 1인

○ 손자녀 가계지원비

- 2005년부터 보상금 혜택이 없는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하여 가계비 지급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14. 4월)으로 2015년 1월부터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가계지원비 지급 인원 감소

○ 독립유공자 제수비

- 1988년부터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지급

○ 독립정신 계승활동 지원

- 1968년부터 독립운동단체의 기념행사 지원 등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 지원

○ 친일귀속재산 관리

- '09년부터 친일귀속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매각 추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정('05.12.29.)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7조 개정('08.3.28.)으로 '07~'10년 친일귀속재산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입(제1차~제42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79,396백만원(2020년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생존 애국지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가족

7. 사업 집행절차

손자녀가계지원비 등 신청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손자녀가계지원비 등 지급
신청인 → 보훈청		보훈청		보훈청 → 신청인

사 업 명
(2)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3141-4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순국선열애국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지사사업기금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1	402
명칭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예우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82	102	102	393	140	38	37.3

4. 사업목적

○ 독립유공자 공훈록 등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을 통해 올바른 독립운동사 정립과 독립유공자 공훈선양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금의 용도)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1970년 12월부터 1978년까지 독립운동사 10권, 독립운동사 자료집 17권을 발간
- 독립운동사 자료집은 당시의 각종 문헌과 판결문 등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만을 엄선하여 독립운동 활동사항을 운동계열별로 수록함으로써 학계의 귀중한 연구 자료 및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자료로 활용
-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을 수록한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1986년부터 편찬하여 현재 23권까지 간행, '19년도 24권 발행 중

○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지원

- 순국선열유족회의 『순국』지 발간 지원을 시작으로 독립운동관련 단체의 독립운동사 연구를 위한 편찬사업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140백만원(2020년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순국선열유족회 등 독립운동관련 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독립유공자공훈록」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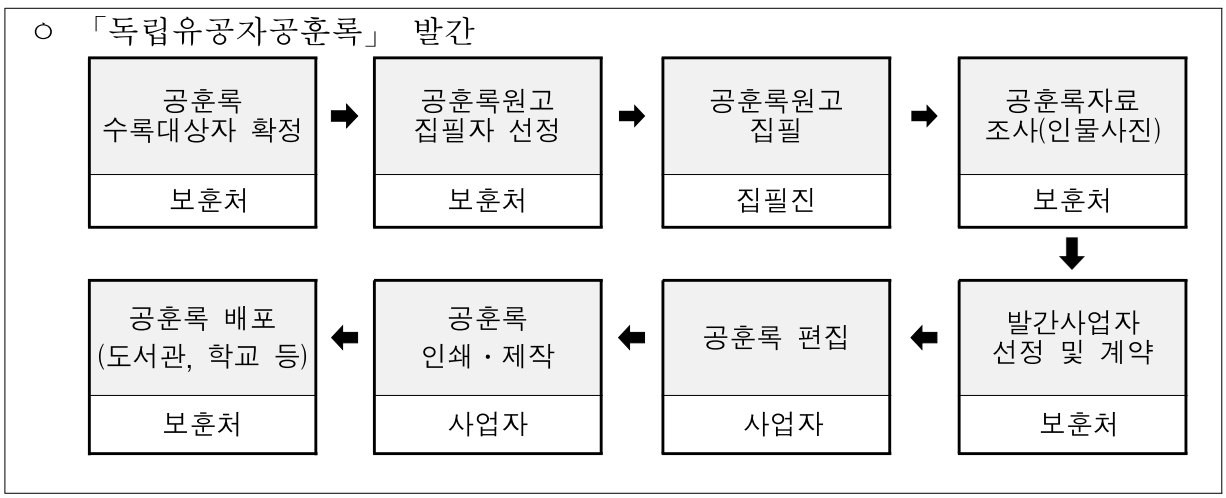

사 업 명
(3)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3141-4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1	403
명칭	보훈선양	독립유공자예우	독립유공자묘소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298	299	299	777	284	△15	△5.0

4. 사업목적

○ 국내외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및 국립묘지로의 이장 지원 등을 통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사후 예우를 내실화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금의 용도)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제1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
2. 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
3. 묘지 상석(床石)·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은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묘지의 상태,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추진경위

○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사업

-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사업은 민간단체(대종교 총본사, 연세대 동창회)에서 주관한 4기(중국 길림성 화룡현 소재 대종교 3종사묘, 용정시 소재 윤동주 묘소)를 시작으로 추진

- 1995년부터 우리 처에서 중국 용정 3·13반일의사능 13기와 카자흐스탄 끄질 오르다시에 소재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 등 총27기를 단장하였으며, 연간 5기 단장을 목표로 현지 유족 등과 단장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국내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서도 사망시 예우의 일환으로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는 한편, 연간 40여 기 수준으로 묘소 단장을 지원하고 있음

○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 1946년도 민간에서 봉환위원회(위원장 박열)를 구성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1975년부터 우리 처 주관으로 추진
- 이후 묘소조사 등을 실시하고 1993년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 안치된 임시정부 요인 5위 유해봉환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 매년 3~8인의 유해를 봉환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도모

○ 국내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 2018년부터 지방산재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 벌초비, 떼 입히기 등 산재묘소 유지·관리비를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284백만원(2020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국외묘소단장
단장대상자 선정 ⇨ 유족 및 관련자 등 협의 ⇨ 단장(제막)식 거행
② 국내묘소단장
유족 등 단장신청 ⇨ 단장대상자 선정 ⇨ 묘소 단장 후 단장비 지원
③ 국립묘지이장
국립묘지 이장 신청 ⇨ 안장심사 등 ⇨정해진 일자에 합동(개별) 안장
④ 국내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유족 등이 벌초, 떼입히기, 훼손봉분 보수 등 유지·보수 후 신청 ⇨ 확인 후 지원

사 업 명
(4) 광복회관 관리 (3141-4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순국선열애국 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1	407
명칭	보훈선양	독립유공자예우	광복회관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광복회관 관리	-	1,957	1,957	2,976	2,743	786	40.2

4. 사업목적

○ 광복회관 임대수입으로 순애기금의 자산증식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금의 용도)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국유재산인 광복회관이 준공('18.8월)됨에 따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
- 사업규모 : 2,743백만원(2020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사업수혜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건물관리

임대관리 등 건물관리위탁 계약 체결	⇒	건물종합관리	⇒	수입금 국고납입 및 위탁비용 정산
임대관리 협약 체결 시설관리 등 계약 체결		건물관리 진행		임대수입 등은 국고납입하며, 시설관리비용 등 정산 지급